



www.humanrights.go.kr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201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 장애인의 me too 운동, 그 현실과 개선방안 논의 -

일 시 : 2018. 4. 18.(수) 14:00 ~ 16:00

장 소 : 라온컨벤션 가람홀 1층

70 세계인권선언
주년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사람 법인 대전장애인인권포럼

안녕하십니까?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한병일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와 함께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대전장애인인권포럼과, 발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주신 단체 및 전문가 여러분의 관심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2007년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기회균등법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데 큰 기여를 했으며 장애인 차별 시정기구로서 여러 차별 영역에 대해 시정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metoo관련 부분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위원회는 조만간 ‘성차별시정팀’을 새로 신설하여 여성인권을 강화할 예정이며, 여성가족부에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점검추진단’을 운영하는데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사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성차별이나 성희롱 등에 대한 관심은 저조한 편이며 더 나아가 우리 사회에 metoo 운동으로 표면화 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토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장차법』이 어떻게 장애인 차별 문제를 시정했고, 그 한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리고 장애인에 있어 metoo운동은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문제점과 해결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의 많은 전문가님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희망합니다.



끝으로 오늘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18.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장 **한 병 일**

축 사

Congratulatory
address

장애인차별금지법 10년에 즈음하여...

오늘의 주제가 미투 운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봉건적 사회 속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별을 겪으면서 살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에서나 드라마 등에서 약한 자의 인권이 얼마나 억압되어 왔는지를 여러분들이나 저는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도 하루나 이틀이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메스컴을 통해서 지구촌 소식은 시시각각 청취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주제가 국가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주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상위권에 들어가는 경제대국이면서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문화민족입니다.

세계 속의 한국!

한국의 국가기관으로서 주관하는 토론회 인만큼 부끄러움 없는 결과를 도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4. 18.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대표 **안 승 서**

- 일 시 : 2018. 4. 18.(수) 14:00~16:00
- 장 소 : 라온컨벤션 가람홀 1층(대전광역시 유성구)
- 주 최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대전장애인인권포럼

시 간	내 용
13:00 ~ 14:00	○ 등록 및 접수
14:00 ~ 14:15 ('15)	○ 개회식 【사회 : 대전인권사무소 박춘기 교육협력팀장】 - 기념사('5) : 한병일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 축 사('5) : 이상민 국회의원 - 축 사('5) : 안승서 대표 (대전장애인인권포럼)
본 행사	【좌장 : 이민훈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14:15 ~ 15:30 ('75)	주제 : 장애인의 me too운동, 그 현실과 개선방안 논의 【발제1】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차법 관련 진정사건 분석 및 결과발표(20) 김은화 조사팀장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발제2】 묻혀있던 그들의 이야기(20) 신해 관장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발제3】 장애, 인권 그리고 'me too'(20) 천인수 소장 (대전광역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토 론】 장애인성폭력 현황과 실태(15) 이인원 소장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15:30 ~ 15:50 ('20)	【종합토론】 발제 · 토론자, 참여자('20)
15:50 ~ 16:00	○ 폐회('10) : 대전인권사무소

-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차법 관련 진정사건 분석 및 결과발표
 김은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조사팀장)4...
- [발제 2] 묻혀있던 그들의 이야기 - 충청북도 內 장애인의 ‘me too’ 실제 사례 분석
 신해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7 6
- [발제 3] 장애, 인권 그리고 ‘me too’
 천인수 (대전광역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7 9
- [토론] 장애인성폭력 현황과 실태
 이인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111
-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22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

발제 1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차법 관련 진정사건 분석 및 결과발표

김은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조사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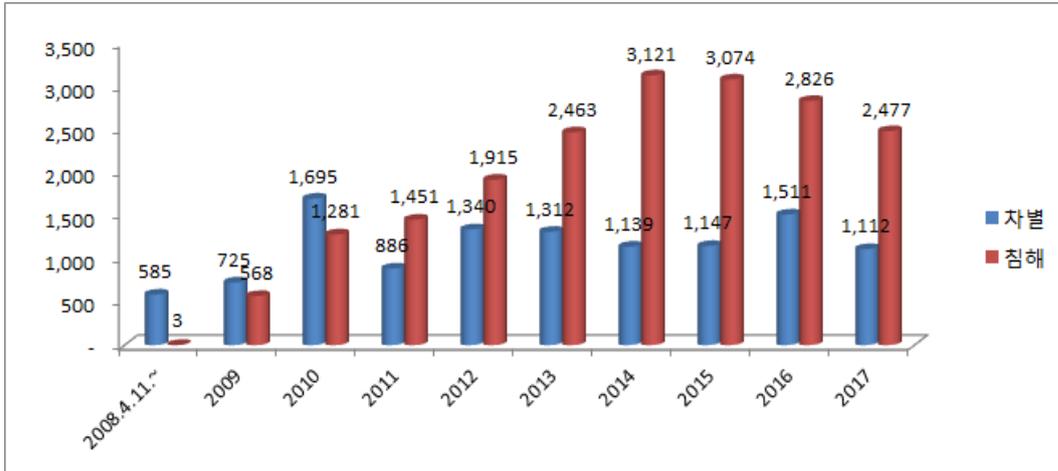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차법 관련 진정사건 분석 및 결과발표

김은화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조사팀장)

I. 진정사건 접수 : 정신의료기관 사건과 장애차별 사건 접수 현황

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연도	진정건수	장애분야		비고
		차별	침해 (정신보건시설)	
계	30,631	11,452	19,179	
2008.4.11.~	588	585	3	
2009	1,293	725	568	
2010	2,976	1,695	1,281	
2011	2,337	886	1,451	
2012	3,255	1,340	1,915	
2013	3,775	1,312	2,463	
2014	4,260	1,139	3,121	
2015	4,221	1,147	3,074	
2016	4,337	1,511	2,826	
2017	3,589	1,112	2,477	



[그림 1] 장애분야 사건 접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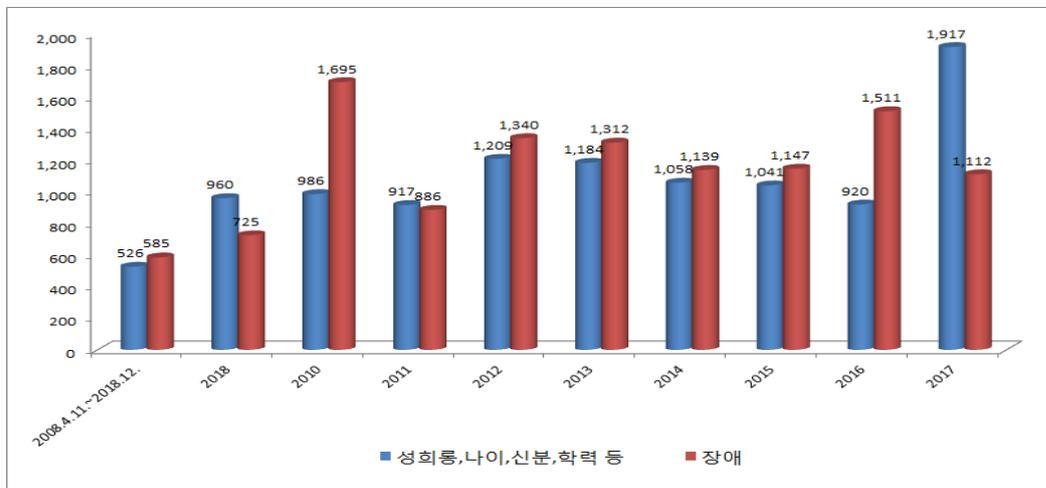
II. 진정사건 접수 :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

가.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7.12.)

(단위: 건, %)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7. 12.	진정건수	26,439	14,334	12,105
		비율(%)	100.0	54.2	45.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7. 12.	진정건수	22,170	10,718	11,452
		비율(%)	100.0	48.3	51.7
	2008. 4. 11.~ 2008. 12.	진정건수	1,111	526	585
		비율(%)	100.0	47.3	52.7
	2009. 1.~ 2009. 12.	진정건수	1,685	960	725
		비율(%)	100.0	57.0	43.0

구 분			차 별 사 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2010. 1.~ 2010. 12.	진정건수	2,681	986	1,695	
	비율(%)	100.0	36.8	63.2	
2011. 1.~ 2011. 12.	진정건수	1,803	917	886	
	비율(%)	100.0	50.9	49.1	
2012. 1.~ 2012. 12.	진정건수	2,549	1,209	1,340	
	비율(%)	100.0	47.4	52.6	
2013. 1.~ 2013. 12.	진정건수	2,496	1,184	1,312	
	비율(%)	100.0	47.4	52.6	
2014. 1.~ 2014. 12.	진정건수	2,197	1,058	1,139	
	비율(%)	100.0	48.2	51.8	
2015. 1.~ 2015. 12.	진정건수	2,188	1,041	1,147	
	비율(%)	100.0	47.6	52.4	
2016. 1.~ 2016. 12.	진정건수	2,431	920	1,511	
	비율(%)	100.0	37.8	62.2	
2017. 1.~ 2017. 12.	진정건수	3,029	1,917	1,112	
	비율(%)	100.0	63.3	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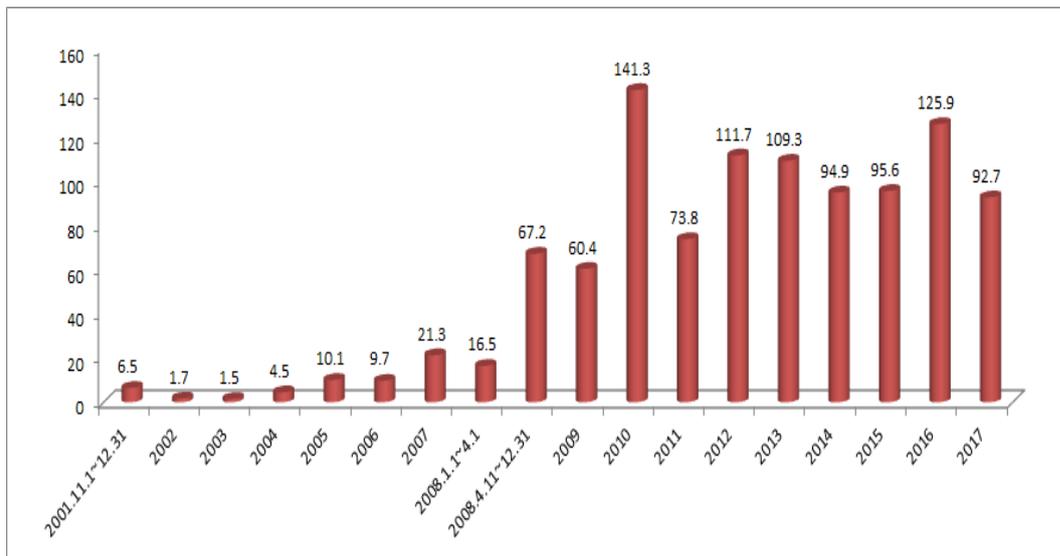


[그림 2]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

나. 연도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7.12.)

(단위: 건)

연도 (년) 구분	총	장차법 이전	2001 (11~ 12월)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1.1~ 4.10)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후										
											시행 이후	2008 (4.11 ~ 12월)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장애 진정 건수	12,105	653	13	20	18	54	121	116	256	55	11, 452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112
월 평균	62.4	8.4	6.5	1.7	1.5	4.5	10.1	9.7	21.3	16.5	98.1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6	125.9	9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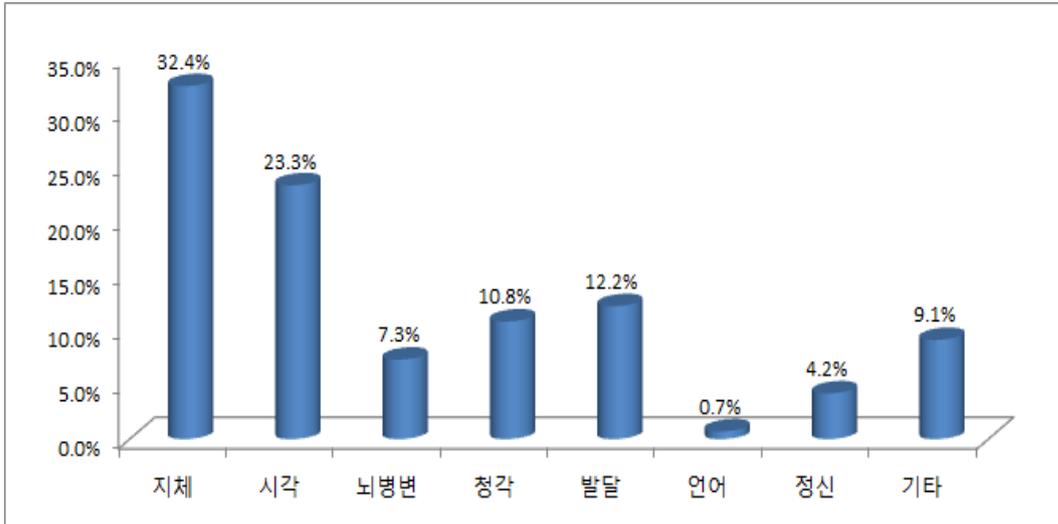
[그림 3] 연도별 월평균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1.11.~2017.12.)

다.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분		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발달	언어	정신	기타
전체	계	11,452	3,714	2,666	838	1,235	1,394	85	476	1,044
	비율	100.0	32.4	23.3	7.3	10.8	12.2	0.7	4.2	9.1
2008	건수	585	72	85	35	45	29	1	15	303
	비율	100.0	12.3	14.5	6.0	7.7	5.0	0.2	2.6	51.8
2009	건수	725	288	91	69	46	70	11	44	106
	비율	100.0	39.7	12.6	9.5	6.3	9.7	1.5	6.1	14.6
2010	건수	1,695	508	427	136	275	181	8	73	87
	비율	100.0	30.0	25.2	8.0	16.2	10.7	0.5	4.3	5.1
2011	건수	886	297	142	57	72	214	8	48	48
	비율	100.0	33.5	16.0	6.4	8.1	24.1	0.9	5.4	5.4
2012	건수	1,340	492	193	87	142	231	13	47	135
	비율	100.0	36.7	14.4	6.5	10.6	17.2	1.0	3.5	10.1
2013	건수	1,312	380	299	71	251	115	7	50	139
	비율	100.0	29.0	22.8	5.4	19.1	8.8	0.5	3.8	10.6
2014	건수	1,139	402	290	92	112	104	13	55	71
	비율	100.0	35.3	25.5	8.1	9.8	9.1	1.1	4.8	6.2
2015	건수	1,147	334	440	93	101	101	5	30	43
	비율	100.0	29.1	38.4	8.1	8.8	8.8	0.4	2.6	3.8
2016	건수	1,511	628	329	101	93	247	7	62	44
	비율	100.0	41.6	21.8	6.7	6.2	16.4	0.5	4.1	2.9
2017	건수	1,112	313	370	97	98	102	12	52	68
	비율	100.0	28.2	33.3	8.7	8.8	9.2	1.1	4.7	6.1
등록 장애인 구성비 ¹⁾	인원(명)	2,511,051	1,267,174	252,794	250,456	271,843	218,136	19,409	100,069	131,170
	비율	100.0	50.5	10.1	10.0	10.8	8.7	0.8	4.0	5.2

1) 등록 장애인 구성비: 2016. 12. 기준(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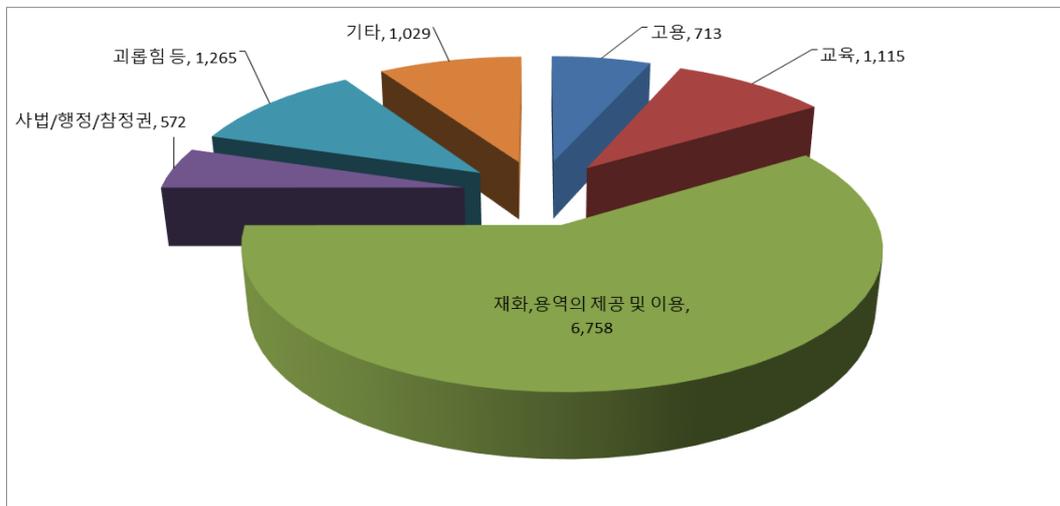
[그림 4] 장애유형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 2017.12.31.)

라.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 2017.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 통신 의사 소통				문화 예술 체육
전체	접수	11,452	713	1,115	6,758	1,780	721	1,400	808	1,729	320	572	1,265	1,029
	비율	100.0	6.2	9.7	59.0	15.5	6.3	12.2	7.1	15.1	2.8	5.0	11.1	9.0
2008 (4~12)	접수	585	41	61	347	37	49	78	128	35	20	55	42	39
	비율	100.0	7.0	10.4	59.3	6.3	8.4	13.3	21.9	6.0	3.4	9.4	7.2	6.7
2009	접수	725	69	49	412	153	91	93	49	13	13	42	105	48
	비율	100.0	9.5	6.8	56.8	21.1	12.6	12.8	6.8	1.8	1.8	5.8	14.5	6.6
2010	접수	1,695	82	55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176	74
	비율	100.0	4.8	3.2	74.9	17.5	3.8	15.5	6.1	29.9	2.1	2.3	10.4	4.4

구 분		합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등	기타	
					소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 수단	정보통신 의사소통				문화 예술 체육
2011	접수	886	64	62	487	179	70	67	67	45	59	80	105	88
	비율	100.0	7.2	7.0	55.0	20.2	7.9	7.6	7.6	5.1	6.7	9.0	11.9	9.9
2012	접수	1,340	82	96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111	150
	비율	100.0	6.1	7.2	60.3	14.0	11.4	18.8	3.0	3.1	9.9	6.9	8.3	11.2
2013	접수	1,312	75	45	706	154	55	128	49	307	13	71	303	112
	비율	100.0	5.7	3.4	53.8	11.7	4.2	9.8	3.7	23.4	1.0	5.4	23.1	8.5
2014	접수	1,139	94	66	677	180	62	142	108	166	19	61	123	118
	비율	100.0	8.3	5.8	59.4	15.8	5.4	12.5	9.5	14.6	1.7	5.4	10.8	10.4
2015	접수	1,147	69	55	733	129	82	125	99	286	12	38	121	131
	비율	100.0	6.0	4.8	63.9	11.2	7.2	10.9	8.6	24.9	1.1	3.3	10.6	11.4
2016	접수	1,511	56	536	643	251	48	117	58	161	8	62	88	126
	비율	100.0	3.7	35.5	42.6	16.6	3.2	7.7	3.8	10.7	0.5	4.1	5.8	8.3
2017	접수	1,112	81	90	676	213	46	135	107	168	7	31	91	143
	비율	100.0	7.3	8.1	60.8	19.1	4.1	12.1	9.6	15.1	0.6	2.8	8.2	12.9



[그림 5]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 ~ 2017.12.31.)

마.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전후 차별영역별 월평균 진정사건 증감 추이

(단위: 건)

구분		2001.11.25. ~ 2008.4.10.	2008. 4.11. ~ 2008.12.31.	2009. 1. 1. ~ 2009.12.31.	2010. 1. 1. ~ 2010.12.31.	2011. 1. 1. ~ 2011.12.31.	2012. 1. 1. ~ 2012.12.31.	2013. 1. 1. ~ 2013.12.31.	2014. 1. 1. ~ 2014.12.31.	2015. 1. 1. ~ 2015.12.31.	2016. 1. 1. ~ 2016.12.31.	2017. 1. 1. ~ 2017.12.31.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11년 (2008. 4. ~ 2017. 12.)
합계	전체 건수	653	585	725	1,695	886	1,340	1,312	1,139	1,147	1,511	1,112	11,452
	월평균	8.4	67.2	60.4	141.3	73.8	111.7	109.3	94.9	95.6	125.9	92.7	98.1
고용	전체 건수	153	41	69	82	64	82	75	94	69	56	81	713
	월평균	2	4.7	5.8	6.8	5.3	6.8	6.3	7.8	5.8	4.7	6.8	6.1
교육	전체 건수	122	61	49	55	62	96	45	66	55	536	90	1,115
	월평균	1.6	7.0	4.1	4.6	5.2	8	3.8	5.5	4.6	44.7	7.5	9.6
재화·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전체 건수	207	347	412	1,269	487	808	706	677	733	643	676	6,758
	월평균	2.7	39.9	34.3	105.8	40.6	67.3	58.8	56.4	61.1	53.6	56.3	57.9
사법· 행정 /참정권	전체 건수	-	55	42	39	80	93	71	61	38	62	31	572
	월평균	-	6.3	3.5	3.3	6.7	7.8	5.9	5.1	3.2	5.2	2.6	4.9
괴롭힘, 기타	전체 건수	171	81	153	250	193	261	415	241	252	214	234	2,294
	월평균	2.2	9.3	12.8	20.8	16.1	21.8	34.6	20.1	21	17.8	19.5	19.7

※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전에는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과 ‘사법·행정 및 참정권’ 영역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기간 동안(2001.11.25.~2008.4.10.)의 사건 접수 건수를 모두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영역에 포함함.

바. 장애유형별 차별영역 진정사건 접수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사건유형	총합계	지체	시각	뇌병변	청각	지적· 자폐	언어	정신	기타	
소계	11,452	3,714	2,666	838	1,235	1,394	85	476	1,044	
고용	713	260	73	58	111	55	15	42	99	
교육	1,115	439	85	58	92	353	6	14	68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이용	재화·용역 일반	1,780	578	398	207	140	251	13	65	128
	보험·금융	721	157	144	72	131	106	8	57	46
	시설물 접근	1,400	960	196	113	16	16	2	5	92
	이동 및 교통수단	808	399	172	70	26	40	5	2	94
	정보접근·의사소통	1,729	39	1,188	17	343	27	6	2	107
	문화·예술·체육	320	66	27	17	62	119	-	7	22
사법·행정	405	79	86	21	46	76	5	49	43	
참정권	167	59	32	7	3	8	-	3	55	
괴롭힘 등	1,265	331	74	120	214	254	13	151	108	
기타	1,029	347	191	78	51	89	12	79	182	

Ⅲ. 진정사건 접수 : 장애 차별 영역별 세부 유형

가. 고용 영역(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고용 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해고	교육	기타	
합 계	합계	713	262	96	72	16	31	159	7	70
	비율	100.0	36.8	13.5	10.1	2.2	4.4	22.3	1.0	9.8
	공공	240	128	10	34	12	9	20	4	23
	민간	473	134	86	38	4	22	139	3	47
2008	합계	41	19	5	6	1	0	8	1	1
	비율	100.0	46.3	12.2	14.6	2.4	0.0	19.5	2.4	2.4
	공공	18	11	1	2	1	0	1	1	1
	민간	23	8	4	4	0	0	7	0	0
2009	합계	69	30	12	6	2	1	16	1	1
	비율	100.0	43.5	17.4	8.7	2.9	1.5	23.2	1.5	1.5
	공공	20	11	0	5	1	0	2	0	1
	민간	49	19	12	1	1	1	14	1	0
2010	합계	82	27	12	13	3	3	15	0	9
	비율	100.0	32.9	14.6	15.9	3.7	3.7	18.3	0.0	11.0
	공공	30	11	0	8	3	1	4	0	3
	민간	52	16	12	5	0	2	11	0	6
2011	합계	64	23	10	4	1	0	17	1	8
	비율	100.0	35.9	15.6	6.3	1.6	0.0	26.6	1.6	12.5
	공공	14	8	0	0	0	0	2	1	3
	민간	50	15	10	4	1	0	15	0	5
2012	합계	82	33	10	5	1	5	20	0	8
	비율	100.0	40.2	12.2	6.1	1.2	6.1	24.4	0.0	9.8
	공공	34	18	4	2	1	2	4	0	3
	민간	48	15	6	3	0	3	16	0	5

구 분	고용 영역									
	합계	모집 채용	임금 복리 후생	배치	승진	직무 관련	퇴직· 해고	교육	기타	
2013	합계	75	28	10	6	1	1	17	0	12
	비율	100.0	37.3	13.3	8.0	1.3	1.3	22.7	0.0	16.0
	공공	29	15	1	4	1	0	2	0	6
	민간	46	13	9	2	0	1	15	0	6
2014	합계	94	38	11	11	3	5	22	0	4
	비율	100.0	40.4	11.7	11.7	3.2	5.3	23.4	0.0	4.3
	공공	24	16	1	4	2	0	1	0	0
	민간	70	22	10	7	1	5	21	0	4
2015	합계	69	20	8	3	1	9	14	0	14
	비율	100.0	29.0	11.6	4.4	1.5	13.0	20.3	0.0	20.3
	공공	18	11	0	2	1	2	0	0	2
	민간	51	9	8	1	0	7	14	0	12
2016	합계	56	27	5	5	2	2	12	0	3
	비율	100.0	48.2	8.9	8.9	3.6	3.6	21.4	0	5.4
	공공	24	16	0	2	1	1	2	0	2
	민간	32	11	5	3	1	1	10	0	1
2017	합계	81	17	13	13	1	5	18	4	10
	비율	100.0	21.0	16.1	16.1	1.2	6.2	22.2	4.9	12.3
	공공	29	11	3	5	1	3	2	2	2
	민간	52	6	10	8	0	2	16	2	8

나. 교육 영역(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합 계	합계	1,115	91	61	205	134	88	42	494
	비율	100.0	8.2	5.5	18.4	12.0	7.9	3.8	44.3
	공공	937	50	35	156	121	85	31	459
	민간	178	41	26	49	13	3	11	35
2008	합계	61	9	14	14	7	6	3	8
	비율	100.0	14.8	23.0	23.0	11.5	9.8	4.9	13.1
	공공	34	6	7	5	5	5	1	5
	민간	27	3	7	9	2	1	2	3
2009	합계	49	16	2	8	13	1	3	6
	비율	100.0	32.7	4.1	16.3	26.5	2.0	6.1	12.2
	공공	28	7	2	4	8	1	2	4
	민간	21	9	0	4	5	0	1	2
2010	합계	55	4	10	12	6	4	7	12
	비율	100.0	7.3	18.2	21.8	10.9	7.3	12.7	21.8
	공공	35	0	1	6	5	4	7	12
	민간	20	4	9	6	1	0	0	0
2011	합계	62	10	6	7	1	3	0	35
	비율	100.0	16.1	9.7	11.3	1.6	4.8	0.0	56.5
	공공	43	6	5	1	0	3	0	28
	민간	19	4	1	6	1	0	0	7
2012	합계	96	9	2	13	3	51	2	16
	비율	100.0	9.4	2.1	13.5	3.1	53.1	2.1	16.7
	공공	79	3	1	9	2	51	2	11
	민간	17	6	1	4	1	0	0	5

구 분	교육영역								
	합계	전·입학 거부제한	시설물 접근 및 이용	수업· 시험평가 편의미제공	수업 등 교내활동 배제	특수학급 설치	괴롭힘	기타	
2013	합계	45	9	7	6	3	7	2	11
	비율	100.0	20.0	15.6	13.3	6.7	15.6	4.4	24.4
	공공	30	2	6	6	3	5	2	6
	민간	15	7	1	0	0	2	0	5
2014	합계	66	6	10	17	2	10	8	13
	비율	100.0	9.1	15.2	25.8	3.0	15.2	12.1	19.7
	공공	44	3	6	8	1	10	5	11
	민간	22	3	4	9	1	0	3	2
2015	합계	55	5	1	15	4	3	7	20
	비율	100.0	9.1	1.8	27.3	7.3	5.5	12.7	36.4
	공공	41	2	0	7	4	3	7	18
	민간	14	3	1	8	0	0	0	2
2016	합계	536	4	6	81	88	1	4	352
	비율	100.0	0.8	1.1	15.1	16.4	0.2	0.8	65.7
	공공	526	3	5	80	87	1	0	350
	민간	10	1	1	1	1	0	4	2
2017	합계	90	19	3	32	7	2	6	21
	비율	100.0	21.1	3.3	35.6	7.8	2.2	6.7	23.3
	공공	77	18	2	30	6	2	5	14
	민간	13	1	1	2	1	0	1	7

다. 재화·용역 및 사법·행정 서비스 영역(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합계	합계	6,758	1,780	721	1400	808	1,729	320	572
	비율	100.0	26.3	10.7	20.7	12.0	25.6	4.7	100.0
	공공	2,674	733	67	596	474	558	206	540
	민간	4,084	1007	654	804	334	1171	114	32
2008	합계	347	37	49	78	128	35	20	55
	비율	100.0	10.7	14.1	22.5	36.9	10.1	5.8	100.0
	공공	140	9	5	26	83	9	8	54
	민간	207	28	44	52	45	26	12	1
2009	합계	412	153	91	93	49	13	13	42
	비율	100.0	37.1	22.1	22.6	11.9	3.2	3.2	100.0
	공공	154	66	7	33	36	4	8	41
	민간	258	87	84	60	13	9	5	1
2010	합계	1,269	296	65	263	103	506	36	39
	비율	100.0	23.3	5.1	20.7	8.1	39.9	2.8	100.0
	공공	752	211	6	181	71	269	24	35
	민간	507	85	59	82	32	237	12	4
2011	합계	487	179	70	67	67	45	59	80
	비율	100.0	36.8	14.4	13.8	13.8	9.2	12.1	100.0
	공공	212	80	4	23	34	26	45	79
	민간	275	99	66	44	33	19	14	1
2012	합계	808	188	153	252	40	42	133	93
	비율	100.0	23.2	18.9	31.2	5.0	5.2	16.5	100.0
	공공	353	83	9	119	27	15	100	90
	민간	455	105	144	133	13	27	33	3
2013	합계	706	154	55	128	49	307	13	71
	비율	100.0	21.8	7.8	18.1	6.9	43.5	1.8	100.0
	공공	175	52	7	39	28	45	4	68
	민간	531	102	48	89	21	262	9	3

구 분	재화·용역								사법·행정 /참정권
	합계	재화·용역 일반	보험· 금융	시설물 접근	이동 및 교통수단	정보접근 의사소통	문화·예술 ·체육		
2014	합계	677	180	62	142	108	166	19	61
	비율	100.0	26.6	9.2	21.0	16.0	24.5	2.8	100.0
	공공	224	67	8	49	43	48	9	48
	민간	453	113	54	93	65	118	10	13
2015	합계	733	129	82	125	99	286	12	38
	비율	100.0	17.6	11.2	17.1	13.5	39.0	1.6	100.0
	공공	188	38	8	38	35	65	4	36
	민간	545	91	74	87	64	221	8	2
2016	합계	643	251	48	117	58	161	8	62
	비율	100.0	39.0	7.5	18.3	9.0	25.0	1.2	100.0
	공공	208	87	9	45	39	27	1	60
	민간	435	164	39	72	19	134	7	2
2017	합계	676	213	46	135	107	168	7	31
	비율	100.0	31.5	6.8	20.0	15.8	24.9	1.0	100.0
	공공	258	80	4	43	78	50	3	29
	민간	418	133	42	92	29	118	4	2

라. 괴롭힘 등 영역(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계	합계	1,265	26	32	28	209	144	728	98
	비율	100.0	2.1	2.5	2.2	16.5	11.4	57.6	7.7
	공공	182	7	3	4	35	5	108	20
	민간	1083	19	29	24	174	139	620	78
2008	합계	42	0	0	3	5	7	26	1
	비율	100.0	0.0	0.0	7.1	11.9	16.7	61.9	2.4
	공공	2	0	0	0	0	1	0	1
	민간	40	0	0	3	5	6	26	0
2009	합계	105	1	4	6	19	16	53	6
	비율	100.0	1.0	3.8	5.7	18.1	15.2	50.5	5.7
	공공	18	1	0	0	4	0	12	1
	민간	87	0	4	6	15	16	41	5
2010	합계	176	3	10	2	40	23	77	21
	비율	100.0	1.7	5.7	1.1	22.7	13.1	43.8	11.9
	공공	32	1	1	0	6	1	16	7
	민간	144	2	9	2	34	22	61	14
2011	합계	105	4	4	0	22	16	50	9
	비율	100.0	3.8	3.8	0.0	21.0	15.2	47.6	8.6
	공공	19	0	1	0	4	1	12	1
	민간	86	4	3	0	18	15	38	8
2012	합계	111	4	4	1	22	18	50	12
	비율	100.0	3.6	3.6	0.9	19.8	16.2	45.1	10.8
	공공	17	1	0	0	2	0	13	1
	민간	94	3	4	1	20	18	37	11
2013	합계	303	5	2	5	24	19	233	15
	비율	100.0	1.7	0.7	1.7	7.9	6.3	76.9	5.0
	공공	16	1	0	2	1	0	10	2
	민간	287	4	2	3	23	19	22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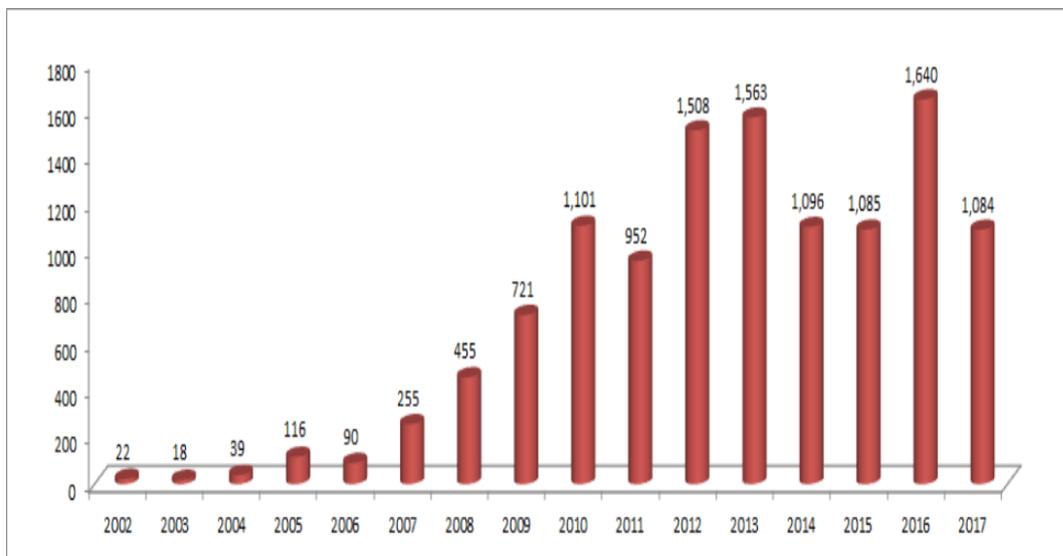
구 분		장애인 등에 대한 괴롭힘 등							
		합계	따돌림	유기방치	성폭행	폭행 학대	금전적 착취	장애인 모욕비하	기타
2014	합계	123	2	3	6	17	20	67	8
	비율	100.0	1.6	2.4	4.9	13.8	16.3	54.5	6.5
	공공	18	2	0	2	4	2	8	0
	민간	105	0	3	4	13	18	59	8
2015	합계	121	2	3	1	23	10	72	10
	비율	100.0	1.7	2.5	0.8	19.0	8.3	59.5	8.3
	공공	22	0	0	0	3	0	17	2
	민간	99	2	3	1	20	10	55	8
2016	합계	88	1	0	3	20	3	50	11
	비율	100.0	1.1	0	3.4	22.7	3.4	56.8	12.5
	공공	19	0	0	0	5	0	10	4
	민간	69	1	0	3	15	3	40	7
2017	합계	91	4	2	1	17	12	50	5
	비율	100.0	4.4	2.2	1.1	18.7	13.2	55.0	5.5
	공공	19	1	1	0	6	0	10	1
	민간	72	3	1	1	11	12	40	4

IV. 진정사건 처리 :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

가.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7.12.31.)

(단위: 건)

합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1,745	22	18	39	116	90	255	455	721	1,101	952	1,508	1,563	1,096	1,085	1,640	1,084



[그림 6]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1.11.25.~2017.12.31.)

나. 장애차별 진정사건 세부처리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합계	11,163	5,059	2,429	452	5	376	1,596	2,630	6,039 (4,514)	16	49
구성비 (%)	100.0	100.0	100.0	18.6	0.2	15.5	65.7				
			48.0					52.0			
			45.3							54.1	0.2
2008년	413	191	104	22	-	12	70	87	221 (139)	1	-
구성비 (%)	100.0	100.0	100.0	100.0	22.2	-	11.5				
			54.5					45.5			
										46.2	53.5
2009년	721	358	165	10	-	47	108	193	353 (238)	4	6
구성비 (%)	100.0	100.0	100.0	6.1		28.5	65.5				
			46.1					53.9			
			49.7							49.0	0.6
2010년	1,101	417	242	28	1	56	157	175	663 (369)	6	15
구성비 (%)	100.0	100.0	100.0	11.6	0.4	23.1	64.9				
			58.0					42.0			
			37.9							60.2	0.5
2011년	952	566	307	124	-	32	151	259	381 (228)	1	4
구성비 (%)	100.0	100.0	100.0	40.4	-	10.4	49.2				
			54.2					45.8			
			59.5							40.0	0.1
2012년	1,508	890	376	116	-	20	240	514	616 (495)	1	1
구성비 (%)	100.0	100.0	100.0	30.9	-	5.3	63.8				
			42.2					57.8			
			59.0							40.8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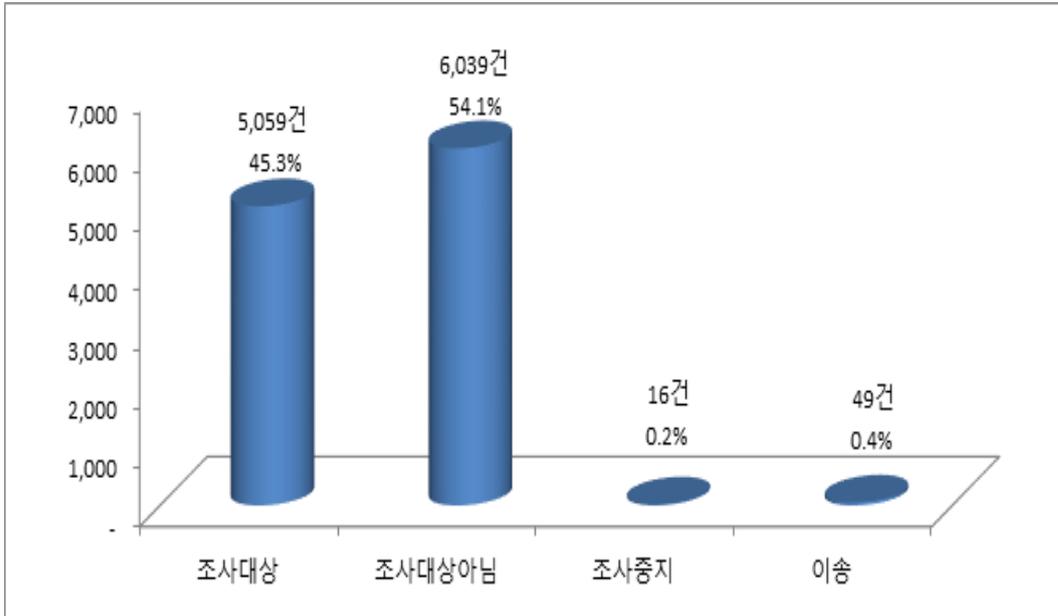
처리건수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합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소계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2013년	1,563	807	436	29	-	79	328	371	755 (459)	-	1
구성비 (%)	100.0	100.0	100.0	6.7	-	18.1	75.2				
			54.0					46.0			
		51.6						48.3	-	0.1	
2014년	1,096	528	200	17	1	61	121	328	560 (452)	3	5
구성비 (%)	100.0	100.0	100.0	8.5	0.5	30.5	60.5				
			37.9					62.1			
		48.2						51.1	0.3	0.5	
2015년	1,085	416	164	17	-	19	128	252	663 (561)	-	6
구성비 (%)	100.0	100.0	100.0	10.4	-	11.6	78.0				
			39.4					60.0			
		38.3						61.1	-	0.6	
2016년	1,640	434	209	19	3	29	158	225	1,199 (1,048)	-	7
구성비 (%)	100.0	100.0	100.0	9.1	1.4	13.9	75.6				
			48.2					51.8			
		26.5						73.1	-	0.4	
2017년	1,084	452	226	70	-	21	135	226	628 (525)	-	4
구성비 (%)	100.0	100.0	100.0	31.0	-	9.3	59.7				
			50.0					50.0			
		41.7						57.9	-	0.4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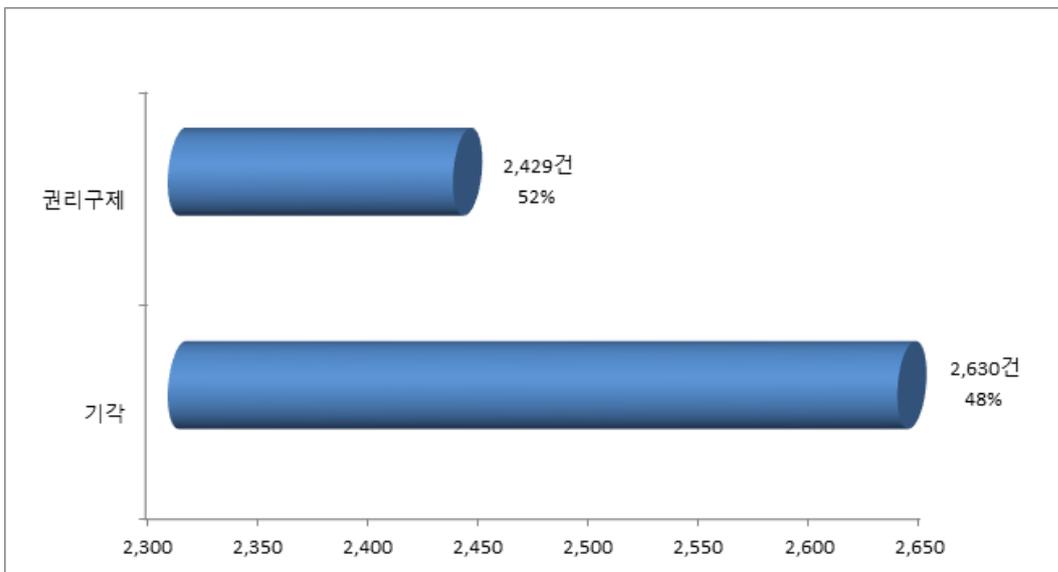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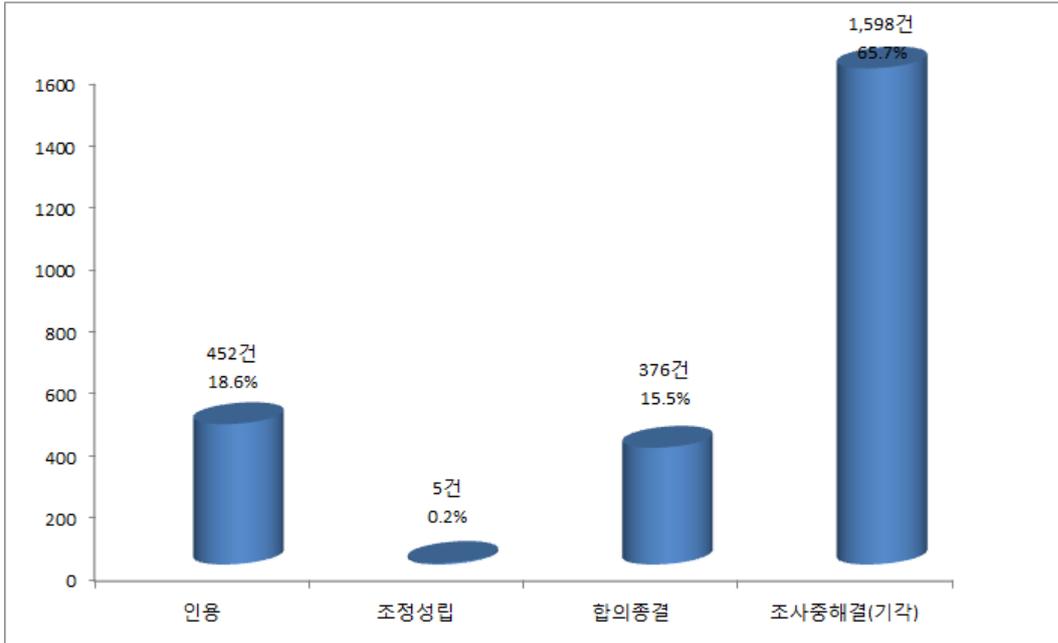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그림 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사건의 조사대상 여부



[그림 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조사대상 사건 중 권리구제대상 현황



[그림 9]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권리구제 대상사건 처리 결과

다. 차별영역별 장애차별 진정사건 처리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

구 분	합계	조사대상							각하**** (취하)	조사 중지	이송
		소계	권리구제 대상				권리구제 비대상 기각 (차별아님, 사실아님)				
			인용 (권고)	조정 성립*	합의 종결**	조사중 해결*** (기각)					
합계	건수	11,163	5,059	452	5	376	1,596	2,630	6,039 (4,514)	16	49
	비율(%)	100.0	100.0	48.0				52.0			
				45.3				54.1	0.2	0.4	
고용	건수	828	287	22	-	51	30	184	533 (426)	3	5
	비율(%)	100.0	100.0	28.9				64.1			
				34.7				64.3	0.4	0.6	
교육	건수	3,464	235	19	-	32	99	85	3,228 (2,451)	-	1
	비율(%)	100.0	100.0	63.8				36.2			
				6.8				93.1	-	0.1	
재화·용역	건수	4,288	3,794	339	4	210	1,346	1,895	476 (433)	9	9
	비율(%)	100.0	100.0	50.1				49.9			
				88.5				11.1	0.2	0.2	
사법·행정 /참정권/ 괴롭힘 등	건수	2,583	743	72	1	83	121	466	1,802 (1,204)	4	34
	비율(%)	100.0	100.0	37.3				62.7			
				28.8				69.7	0.2	1.3	

- * 조정성립: 장애차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성립이 되어 종결된 것임.
- ** 합의종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당사자가 상호 합의서를 작성하여 사건이 종결된 것임.
- *** 조사중 해결: 진정사건 조사 중에 권리구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 없어 기각 처리한 경우.
- **** 각하: 진정 내용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진정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진정한 경우,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 등 임.

라. 장애차별사건 시정권고 현황(2008.4.11.~2017.12.31.)

(단위: 건)

구 분	계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사법행정 참정권/괴롭힘 등
권고 사건 수	452	22	19	339	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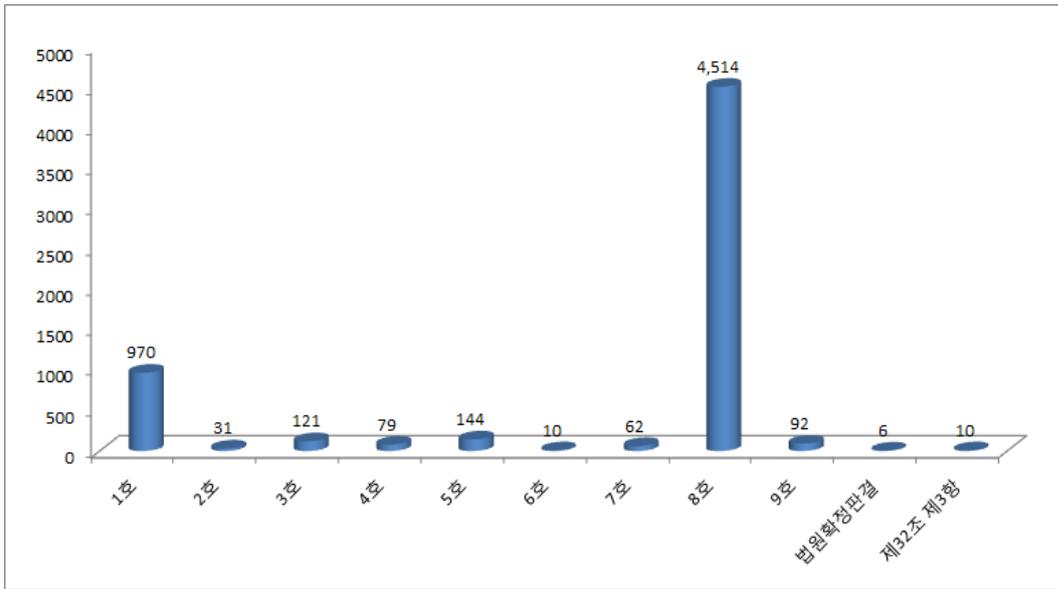
V.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현황

가.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 (2008.04.11.~2017.12.31.)

(단위: 건, %)

처리건수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법원확정판결/헌법재판소결정에 반함	제32조 제3항*****	
합계	6,039	970	31	121	79	144	10	62	4,514	92	6	10
구성비(%)	100.0	16.1	0.5	2.0	1.3	2.4	0.2	1.0	74.7	1.5	0.1	0.2
2008년	221	54	1	6	11	2	1	2	139	5	-	-
구성비(%)	100.0	24.4	0.5	2.7	4.9	0.9	0.5	0.9	62.9	2.3	-	-
2009년	353	56	-	9	5	14	1	10	238	19	1	-
구성비(%)	100.0	15.9	-	2.5	1.4	3.9	0.3	2.8	67.5	5.4	0.3	-
2010년	663	227	2	10	19	16	-	6	369	13	1	-
구성비(%)	100.0	34.2	0.3	1.5	2.9	2.4	-	0.9	55.7	1.9	0.2	-
2011년	381	94	3	7	4	17	1	7	228	17	3	-
구성비(%)	100.0	24.7	0.8	1.8	1.0	4.5	0.3	1.8	59.8	4.5	0.8	-
2012년	616	62	3	14	9	16	4	9	495	3	-	1
구성비(%)	100.0	10.0	0.4	2.3	1.5	2.6	0.6	1.5	80.4	0.5	-	0.2
2013년	755	215	5	37	2	20	-	6	459	9	1	1
구성비(%)	100.0	28.5	0.7	4.9	0.3	2.6	-	0.8	60.8	1.2	0.1	0.1
2014년	560	52	3	8	11	17	1	2	452	10	-	4
구성비(%)	100.0	9.3	0.5	1.4	1.9	3.0	0.2	0.4	80.8	1.8	-	0.7
2015년	663	49	1	8	7	14	1	12	561	8	-	2
구성비(%)	100.0	7.4	0.2	1.2	1.1	2.1	0.2	1.8	84.6	1.2	-	0.3
2016년	1,199	101	12	11	4	16	-	3	1,048	3	-	1
구성비(%)	100.0	8.4	1.0	0.9	0.3	1.2	-	0.3	87.5	0.3	-	0.1
2017년	628	60	1	11	7	12	1	5	525	5	-	1
구성비(%)	100.0	9.6	0.2	1.8	1.1	1.9	0.2	0.8	83.6	0.8	-	0.2

- * 1호 각하: 조사대상 아님
- ** 2호 각하: 거짓/이유없음
- *** 3호 각하: 조사를 원하지 않음
- **** 4호 각하: 1년 이상 경과
- ***** 5호 각하: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종결
- ***** 6호 각하: 익명/가명제출
- ***** 7호 각하: 적절하지 않음
- ***** 8호 각하: 진정취하/이중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경우 1,224건
- ***** 9호 각하: 기각건의 동일사실 재진정
- ***** 제32조 제3항: 조사중각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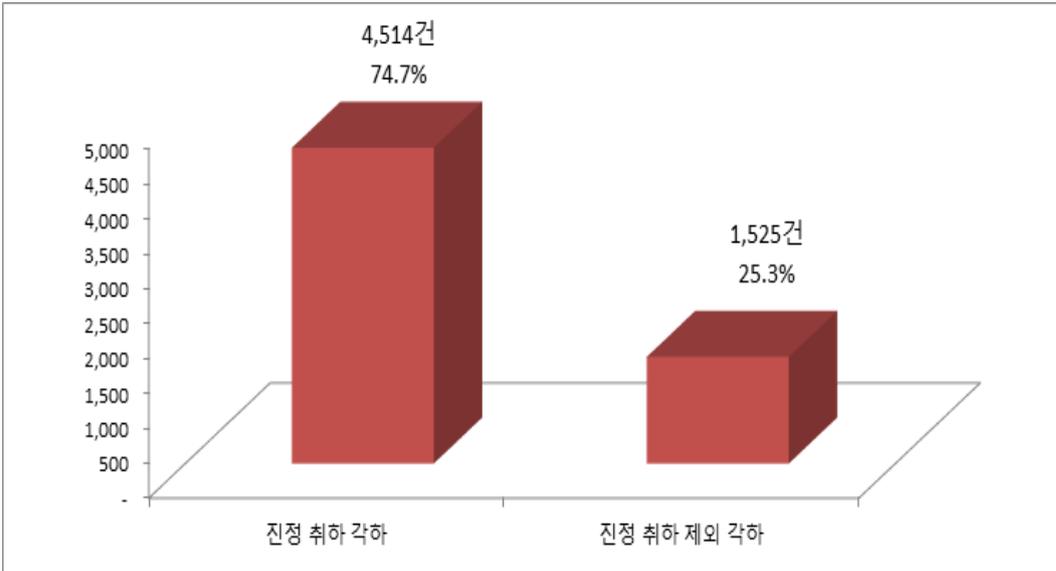


[그림 10] 장애 진정사건 각하 유형별 처리 현황(2008.4.11. ~ 2017.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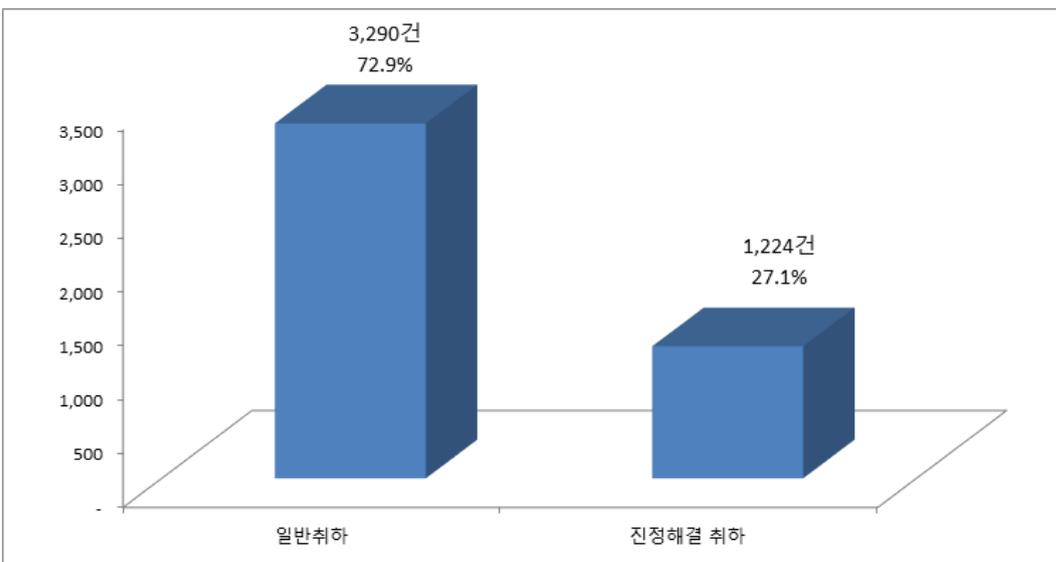
나. 각하사건 중 진정인이 진정이 해결되어 취하한 현황 (2008.04.11.~2017.12.31.)

(단위: 건, %)

각하 처리건수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경우(8호)		
	6,039	4,514	
취하 구분		일반취하	진정해결 취하
사건수		3,290	1,224
취하사건중 해결 %		72.9%	27.1%



[그림 11] 각하 사건 중 당사자 진정취하 비율(2008.4.11. ~ 2017.12.31.)



[그림 12] 당사자 진정취하 사건 중 진정해결 비율(2008.4.11. ~ 2017.12.31.)

붙임1 : 장애 관련 직권조사 처리 현황

연번	사건번호	사건명
1	10-직권-0001300	○○농아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	11-직권-0000200	○○학교 교사의 시각장애여학생 안마강요 등에 대한 직권조사
3	11-직권-0000700	선주의 지적장애인 괴롭힘(금전착취 등)에 대한 직권조사
4	11-직권-0001500	지적장애아동 괴롭힘 등에 대한 직권조사
5	11-직권-00017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차별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6	11-직권-0002300	사회복지법인 ○○의 장애인 폭력행위 등에 대한 직권조사
7	12-직권-0000700	중증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8	12-직권-0000800	○○특수학교에 대한 직권조사
9	12-직권-0000900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적 착취 및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10	12-직권-0001000	중증장애인요양시설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1	12-직권-0001100	입양된 지적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2	12-직권-0001400	장애인 생활시설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3	12-직권-0001700	장애인체육선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4	13-직권-0000400	무연고 지적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5	13-직권-0000500	장애인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6	13-직권-0000600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침해 등에 대한 직권조사
17	13-직권-0002400	사회복지법인 ○○내 시설 등에서의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18	14-직권-0000100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 강박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19	14-직권-0001100	장애인 거주시설의 폭행 및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20	14-직권-0001700	고속·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1	14-직권-0001900	지적 장애인 시설 거주자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2	15-직권-0001300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3	15-직권-0000900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직권조사
24	15-직권-0001500	지적장애인 시설 내 강제노동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5	15-직권-0001800	장애인거주시설 내 폭행 및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6	16-직권-0001700	다수인보호시설 종사자에 의한 폭행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27	16-직권-0002400	보호사의 환자 폭행에 대한 직권조사
28	17-직권-0000400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내 폭행 등 인권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29	17-직권-0001300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폭행 및 학대 등 인권침해 직권조사

붙임2.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 관련 사업 및 정책 권고·의견표명 (2008년~2017년)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기념 토론회 개최 (2009~2017)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성과 및 한계를 점검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와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법의 실효적 이행을 도모하는 계기 마련
2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2009~2017)	장애인당사자 중심의 현장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명시된 차별영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피모니터링기관에 송부하여 즉각적인 개선 유도 및 정책과제 발굴
3	정당한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2009~2012)	고용, 교육, 재화 및 용역의 이용, 사법·행정절차, 인적서비스 등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편의제공 판단기준 연구
4	시각장애인 안마사 자격 독점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의견표명 (2008)	헌법재판소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사 자격 독점권 부여제도는 현존하는 차별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잠정적이고, 위급하고,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안마사업에 대한 시각장애인 독점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표명
5	정신장애인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보고서 발간 및 정책권고 (2009)	정신보건시설 입·퇴원 과정에서의 적정절차 마련, 정신보건시설 내 권리 보장 및 치료환경 개선,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장애인 치료,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편견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 발간 및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6	시각장애인 참정권 차별개선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표명 (2010)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을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책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점자형 선거공보의 제작을 의무화하는 등 시각장애인이 선거공보를 통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의견 표명
7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및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활동보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중증장애인 개념 명시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도 활동보조서비스 신청자격을 부여할 것,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인정시간을 확대하고 장애등급 심사 비용을 국가가 일부 또는 전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의견 표명
8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박은수의원)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행과 관련된 모니터링을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센터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과태료 규정은 그 부과 주체 및 절차가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
9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에 대한 의견표명 (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가보고서의 기술 내용이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부합하도록 장애인의 법적능력, 자립생활지원, 접근성 제고, 고용과 노동, 교육 등에 통계자료를 추가하고, 협약 이행의 문제점과 장애요소 등을 추가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0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1)	시설물 건축에 대한 건축절차와, 편의증진법과 건축 간의 관계 검토를 통하여 현행 제도 및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등을 제고하고자,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보완점 등을 마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1	은행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서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책권고 (2011)	은행 시설물, 금융자동화기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 절차에서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및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금융위원회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전국은행연합회장 및 10개 은행장에게 권고
12	중장기 장애인 인권증진 계획 수립 및 권고 (2012)	장애인 관련 주요 정부정책 및 법령 분석, 장애인 인권증진 및 차별시정을 위한 분야별 정책 의제 발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새로운 인권적 요구에 부합하는 중장기 사업계획 및 연차별 행동 계획을 마련하여 국무총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3	장애차별 보험 가이드라인 작성 및 권고 (2012)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보험가입 차별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험차별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 및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권고
14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에 대한 권고 (2013)	후견심판절차에서 사건 본인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사건 본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의사소통 전문가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키며, 후견사무의 감독을 위해 가사조사관 등 필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가사소송규칙」에 후견인의 활동보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할 것 등을 대법원장,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15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권고 (2013)	장애인의 개별적 욕구 및 환경에 기반한 정책 및 제도의 개선이 범정부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하고,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반한 서비스 전달 체계 구축, 장애인보조기구 서비스 활성화 및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내실화, 장애인연금 대상자 확대 및 급여수준 현실화, 「장애인건강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화 및 지역사회 복귀 지원과, 장애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법」 등에 의거하여 장애를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 건설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전세주택제공사업 도입하고, 장애인의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보조금고용제도를 도입할 것 등을 국무총리,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권고
16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권 증진을 위한 「도로법」 개정 권고 (2013)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가 도로 점용허가 대상임을 명확하게 하여 법령 해석상 논란이 없도록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을 개정하고, ‘소규모 상가 앞 경사로’ 설치에 장애인의 시설 접근권 증진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도로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17	법무사 자격시험 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개선권고 (2013)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은 약시인 시각장애인과는 달리 전맹인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런 편의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에 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에게 전맹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18	근로지원 서비스 제공 시 공무원인 중증장애인 배제에 대한 정책권고 (2013)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상위 법령에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제도 등 편의제공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안정행정부장관에게 권고
19	정신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 (2013)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결과, “비자의 입원환자에 대한 입원절차 및 계속입원심사를 일원화, 입원연장 3회 이상시 광역정신건강증진심판위원회에서 심사 진행,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환자에 대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강화, 공적기관에 의한 이송 의무화 및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격리, 강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정신건강증진시설 출입 및 환자 면담에 관한 사항을 의무조항”으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표명
20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내부 안전장치 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 권고(2014)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휠체어 유형 등을 고려한 특별교통수단 내부의 안전장치(휠체어 고정장치 및 휠체어 사용 탑승자용 안전벨트 등)의 구조·재질·안전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과 △특별교통수단 운행권자가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해 안전사고 관련 사례교육, 안전장치 착용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제반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고
21	시각장애인 제1종 운전면허 취득제한 관련 정책 개선 권고(2014)	최소 시력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제1종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관련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경찰청장에게 권고
22	장애인관람석 설치기준의 장애인 관람편리성 제고 권고(2014)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의 [별표1] 의 “20. 장애인등의이용이가능한관람석또는열람석”의 가항을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다른 관람석 또는 열람석과 동등한 수준으로 시야가 확보될 수 있는 곳에, 동행한사람과 나란히 앉을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하며,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고
23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대법원 2012두20991)에 대한 의견제출(2014)	대법원에 계류 중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사건(2012두20991)”에 대한 재판이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의견 제출 대법원 2012두20991사건(서울고등법원 2012누6836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을 심리함에 있어 ‘의족 등 보조기구에 의지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 근로자의 의족이 업무 중 파손되었을 경우, 의족은 생물학적 신체가 아니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부상이라고 할 수 없어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줄 것을 요청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4	언론매체의 장애비하표현에 대한 개선 의견표명(2014)	방송,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서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는 용어나 관용구가 사용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주의를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25	장애인 인권 상황 실태조사 실시 (2009~2017)	<p>공공기관 웹 접근성 실태조사(2009), 대학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2009), 장애인차별금지법 단계적 이행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2010), 장애인권리협약 국내이행 실태조사(2010), 장애인 인권증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유형별 실태조사(2011), 장애유형별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2011),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인적 편의제공에 관한 연구(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영역분류를 기준으로 한 외국판례 연구(2011), 시설거주인 거주 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2012), 지역사회정착을 위한 장애인정책 현황 및 문제점 실태조사(2012), 장애유형별 자립생활 현황과 지원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2012), 한국과 일본의 자립생활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한국적 자립생활 정착방안 연구(2012), 자립생활 기반구축을 위한 외국사례 및 정책 연구를 통한 선진모델 구축(2012), 정신장애인 차별·편견해소를 위한 실태조사(2012),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연구(2013), 장애인노동권 보장을 위한 전달체계 및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2013), 공공조달을 통한 보편적 설계제품의 확산 연구(2013),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증진 및 개선을 위한 연구(2014), 장애인주거지원제도 실태 및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2014), 특수학급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실태 및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2014), 중증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개선방안 연구(2014), 거주시설 종사자 의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4), 시설거주 장애인 선거권 실태조사(2014)</p> <p>중증장애인 노동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장애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5), 정신병원 격리·강박 피해 실태조사(2015),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인권상황 실태조사(2015)</p> <p>일정기준미만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성 실태조사(2016), 장애인 평생교육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6),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비교연구(2016), 감염인 의료차별 실태조사(2016)</p> <p>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2017),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차별 실태조사(2017), 정신보건시설의 정신장애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2017), 중증정신장애인 시설생활인에 대한 실태조사(2017)</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26	각종 토론회 및 국제심포지엄 등 개최 (2009~2017)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웹 접근성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 교육권 보장 방안 토론회(2009), 장애인권리협약 한·일 국제심포지엄(2009), 아·태지역의 장애인권리협약 실효적 이행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0), 장애인권리협약 정보접근권 관련 국제심포지엄(2011), 정신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토론회 및 편견해소 캠페인(2009~2012), 발달장애인의 인권증진을 위한 국제인권세미나(2013),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한 성년후견제 국제컨퍼런스(2013),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보고서 공청회(2013),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4), 의사결정능력장애인의 민사·가사재판 참여권 및 선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학술대회(2014), 장애인 건강권 증진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정책토론회(2014),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201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한 토론회(2015), 시청각장애인 모바일 정보접근권 토론회 (2015), 장애인 권리옹호계 확립을 위한 현황과 과제 토론회(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제고를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2016),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국제심포지엄(2016), 정신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2016), 탈시설 세부이행 계획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장애여성 차별 시정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201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지역순회 토론회(2017),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국제심포지엄(2017),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2017)
27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발달장애인법과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8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 인권침해 방지 및 권리옹호에 관한 법률 수정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조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함.
29	고속·시외버스 이용에 있어 장애인차별 관련 정책권고 (201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30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의 교육기회보장을 위한 정책권고 (2015)	교육부장관에게 학령기에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시설거주 과연령 장애인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과 교육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평생교육시설과 과정을 확충할 것을 권고함
31	통합교육환경에서의 장애인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 (2015)	일반학교에서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및 차별에 대한 대책으로 17개 시도교육감에게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 장애인 전문가참여 등 6개 과제, 교육부장관에게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모니터단 활동강화 등 6개 과제,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특수교육교원 증원과 법정 정원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2	「장애인 시설 건립 반대」에 대한 의견표명(2015)	장애인직업센터 설립 반대 위원회가 지역 내 장애인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서울특별시장과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장애인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의견으로 표명함
33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 개선 정책권고(20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양팔이 절단된 장애인을 「장애등급판정기준」상의 ‘보행상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대상자에 포함할 것을 권고
34	항공기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한 정책권고(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토교통부장관, 휠체어 승강설비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없는 공항에는 대체할 휠체어 승강설비와 필요한 인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각 항공사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항공기 탑승 시 진단서,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2. 인천국제공항공사, 여객탑승교와 항공기가 연결되는 부분의 높낮이 차를 제거 3. 한국공항공사 사장, 여객탑승교를 설치할 수 없는 공항에 이를 대체 휠체어 승강설비를 갖추기 바람 4.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및 한국공항공사 사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장애인 이동에 관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5. 각 국적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관련 업무 담당 인권교육 실시, 휠체어 승강설비를 대여하며, 공항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인적 서비스를 제공,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항공기 이용 관련 정보를 접근·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 항공사에 사전에 요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항공사 면책서약서 등을 요구하지 말고, 상반신 고정용 안전벨트와 기내휠체어를 비치하기 바람
35	정신병원의 격리 강박으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정신의료기관에서의 환자의 격리 및 강박 조치에 있어서 아래의 요소를 포함한 법령 강화. 격리·강박의 목적과 원칙/정신건강의학과전문이에 의한 지시/격리·강박 명부 작성과 비치 의무화/격리·강박과 관련된 구체적 조건과 절차(해제조건, 시간제한, 연장에 대한 절차, 이유 등의 고지, 관찰 등) 2. 화학적 강박을 포함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약물투여 실태조사 실시 3.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와 표준화된 격리실과 강박도구 활용 및 정착을 위한 노력 4.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 추진 5. 의료진 및 직원을 대상으로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강화 6. 보호사의 역할과 자격을 규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6	선박 이용에 있어 장애인 차별개선 정책권고 및 의견표명(2016)	1.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정명령권을 적극 행사하여 여객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부잔교(浮棧橋)와 차도선(車渡船)의 차량진출입 갑판 등의 바다표면 재질 및 설치물에 대한 규정을 마련, 지도·감독 실시하, 장애인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마련, 여객선 설계·구조·검사·운영 등의 과정에 걸쳐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설치가 고려될 수 있도록 여객선 설계자, 제조자, 소유자, 운영자, 검사담당자, 해사안전감독관 등을 대상으로 장애유형별 편의제공에 대해 교육, 2. 국토교통부장관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의 여객선 승하선, 항만시설이용 등에 있어 필요한 인적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 3. 한국해운조합회장은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향후 여객선을 건조, 개조, 수리, 용도 변경 등을 할 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 인적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를 강화하기 바람 4. 국민안전처장관은, 가. 향후 새롭게 건조될 유선(遊船) 및 도선(渡船)에 대해 선박의 규모, 승선정원, 항해 예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선박 탑승편의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나. 유선 및 도선에 시각장애인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는 등의 장애인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선 및 도선 사업자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하기 바람 다. 향후 새롭게 설치될 유선장 및 도선장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 장애인의 접근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37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제도개선 정책권고(2016)	1. 활동지원서비스의 목적을 실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기본급여 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추가급여량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기 바람 2.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바람 3.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단가를 다른 유사 서비스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여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기 바람
38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내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6)	보건복지부장관에게, 1.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운영을 종합적으로 지원·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2. 공동생활가정 관련 공통 운영매뉴얼을 마련하여 보급 3. 공동생활가정의 다양한 모델 개발 필요. 4. 인권교육을 강화 5.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장애인의 공동생활가정 입소를 위한 신청 및 이용안내,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대체인력 지원, 교육사업, 운영지원 등을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에 적합한 종합적인 지원기관을 설치하여 공동생활가정 지원방안 마련.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39	장애인 안전권 강화를 위한 정책권고(2016)	<p>국민안전처 장관에게,</p> <p>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시 장애인 안전대책을 포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집행계획 작성지침에 반영하기 바람</p> <p>나.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바람</p> <p>다.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장애당사자를 비롯한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p> <p>라.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경보·피난 설비를 널리 보급하고, 다양한 경보·피난 설비를 연구·개발하기 바람</p>
40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p>법무부장관이 2016. 8. 29. 입법예고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 표명</p> <p>1. 치료감호 만기 종료자에 대하여,</p> <p>가)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제32조 제1항 제1호의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p> <p>나) 보호관찰 기간 내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제33조 제2항과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제52조 제13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p> <p>2. 치료감호 가중료자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제34조의2의 최초 유치기간은 20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p>
41	제주도 장애인 인권보장 일부개정 조례안 관련 의견표명(2016)	<p>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장애인 인권침해 관련 조사 및 구제권한을 규정할 경우에 대한 위원회 유권 해석</p>
4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6)	<p>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p> <p>3-1. <추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p> <p>5-1.<추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p> <p>5-2. <추가>「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p> <p>제29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등)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및 같은 조 제2항의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p> <p>3-1. <추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실시하는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전보 등의 시험</p> <p>5-1.<추가>「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학생선발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시험</p> <p>5-2. <추가>「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른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력인정 시험</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43	장애인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우정사업본부장 및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가. 장애인이 각 우체국, 고용센터(고용복지+센터 포함)를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고, 물적·인적 서비스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p> <p>2. (주)000, (주)00백화점, 00쇼핑(주), (주)00리테일, (주)0000, (주)000, 00000유통대표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 가. 장애인이 대형 판매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관련 법령 및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2016 장애인차별예방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시설을 정비하기 바람 나. 위 체크리스트 등을 참고하여 상시적인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바람</p>
44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교육부장관에게, 가. 유치원 특수교사의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나. 통합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유치원 특수학급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개별 유치원에 대해 특수학급의 정원을 준수하고 장애 유아를 정원 내로 입학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강화하기 바람.</p> <p>2.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장애 유아의 의무교육을 위한 최소지원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추어 장애 영유아 교육기관의 교육환경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 유아특수교사를 충원하고, 보육종합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 보조인력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비롯한 장애 영유아 보육기관의 설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마.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하는 등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지원체계를 구축하기 바람.</p> <p>3. 국무총리에게, 장애 영유아 교육권 증진,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 권고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정책 조정 등을 수행하기 바람.</p>
45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이용 보장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지역별 장애인 거주현황과 이용 욕구 등을 고려하여 그 수요에 맞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기 바람.</p> <p>2.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이용자의 행동문제 발생 시 행동중재의 원칙, 중재의 방법과 과정 등을 포함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바람.</p> <p>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춰 추가 인력을 배치하거나 시설유형을 다양화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p>4.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이용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46	HIV 감염인과 AIDS 환자에 대한 의료차별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가. 의사 국가시험에서 감염관리 지침과 HIV/AIDS 감염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치료과정에서의 문제해결능력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의료차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령을 보완하기 바람.</p> <p>2. 질병관리본부장에게, 가. 의료인 인식개선을 위해 ‘HIV/AIDS 감염인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가이드’를 개발하고, 나. 국·공립병원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 캠페인을 활성화하고, 다. ‘HIV/AIDS 감염인 호스피스 및 요양(돌봄) 서비스 가이드’ 및 ‘HIV/AIDS 감염인의 요양(돌봄)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여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요양(돌봄)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고, 라. HIV/AIDS 감염인에 대한 간병비 지원을 현실화하기 바람.</p> <p>3.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도립병원의 의료인을 대상으로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바람.</p>
47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권고(2017)	<p>1. 보건복지부장관은, 가. 2019. 1. 1.부터 신축·증축·개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른편의시설설치대상 시설에포함될수있도록, <별지1>을참고하여「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의[별표1]과[별표2]를개정하기바람. 나.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따른편의시설 설치대상시설이아니거나또는편의시설을설치하기가구조적으로곤란한 경우에도장애인의접근, 이용이가능한위치에서장애인에게인적서비스제공등대안적조치가강구될수있도록, <별지2>를참고하여「장애인차별금지 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제18조를개정하기바람. 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라.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p> <p>2. 기획재정부장관은,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장애인편의시설투자비용외에일반공중이용시설에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위해투자한비용도세액공제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하며, 건물구조변경및세부기준적합등세액공제요건이완화될수있도록「조세특례제한법」및「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별표9]를개정하기바람.</p> <p>3. 행정안전부장관은, 근로자복지증진을위한장애인편의시설투자비용외에일반공중이용시설에서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위해투자한비용도세액공제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지방세특례제한법」을개정하기바람.</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p>4. 국토교통부장관은, 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그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별지 3>을 참고하여 「도로법」 제68조를 개정하기바람. 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이더라도 접근로, 출입구, 출입문 등 최소한의 시설은 건축 설계 시부터 장애인의 접근권이 고려될 수 있도록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자격시험 및 건축사실무교육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항을 포함하기바람. 5. 시·도지사는, 가.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기 바람. 나.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강화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바람.</p>
48	정신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제한 지자체 조례 개정 권고(2017)	<p>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포함)의 복지시설(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청소년수련시설, 문화의집 등) 이용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운용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 현황을 파악한 결과, 총 74개 기초단체가 128개 시정이 필요한 조례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장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조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 2.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해 복지시설 등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시정되도록 노력할 것을 각각 권고함.</p>
4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개정안이 장애인의 관광활동 관련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대상자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관광 접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광사업자를 의무대상자로 추가하고 관광시설을 의무대상시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개정안에는 직접차별 금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으나, 관광 관련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등도 차별 행위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회의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표명(2017. 2. 14.)</p>
5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의 시행 전 당사자 및 가족, 정신의료기관, 시설관계자 등이 언론 및 성명 발표 등을 통해 의견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의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자·타해 위험기준의 보완’, ‘행정입원 시 요건강화’ 등 10개 항목에 대해 조항을 개정하도록 의견표명함.</p>

연번	사업명	추진 목적 및 주요 내용
51	평생교육법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교육부장관이 2017. 4. 11. 입법예고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에 설치할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17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책임과 역할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시·군·구 평생학습관 등이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3.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기관에 배치된 평생교육사에 대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이해와 관련한 직무연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2	장애인특수학교 설립에 대한 의견표명(2017)	<p>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교육권 증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부장관과 각 시도교육감은 장애인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특수학교 신설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서울특별시장과 강서구청장은 지역사회에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등 장애인을 배제·거부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 서울특별시 강서구 특수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행위는 「헌법」제11조 평등정신에 위배된다.
53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표명(2017)	<p>「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만을 지문등정보의 사전등록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보장하는 지적장애인 등의 평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므로 삭제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함</p>

붙임3. 장애차별 진정사건 주요 권고현황(2008.04.11 ~ 2017.12.31.)

□ 고용 영역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직권면직 (08진차0000945)	- 진정인을 복직시키고 직권면직일부터 복직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진정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	2009.8.28.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로 인한 채용차별 (08진차0001213)	- 진정인에게 2,4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권고	2009.11.6.	수용
3	권고 (위원회법)	채용면접시험 편의 미제공 (08진차0001093)	- 00청장에게, 향후 면접시험에서 장애응시자에게 편의가 제공된다는 점과 편의신청 절차를 사전고지하고 장애응시자가 자신의 장애특성에 맞게 편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0.2.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해고 (09진차0000490)	- 000000공사 사장에게 진정인을 복직시킬 것을 권고	2010.4.9.	불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군청의 부당인사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정01733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해당 과장 및 담당자에 대해서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채용 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간접차별 (10진정0480200)	- 피진정인에게, 신입사원 채용 시 지원자격 중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는 그 장애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점수 기준을 적용할 것과, 인사 관련 부서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9.27.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고용 차별 (13진정0889400)	- 피진정인에게, 향후 직원 채용과정에서 채용공고 조건과 달리 중증장애가 있다는 사유로 서류심사에서 일괄 탈락시켜 채용을 거부하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 및 장애인차별금지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 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 분야에 관한 직무세부기술서를 첨부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가능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원 성과평가 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632700)	-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의 성과평가 시 장애인 교원에게 불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연번	조치 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 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뇌병변장애인 공무원시험에서의 편의미제공 (15진정0627300)	- 피진정인에게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장애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도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피해를 비롯한 손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장애인에게 메모대필을 허용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에서 시험과목의 특성과 장애 정도에 따른 편의제공 내용을 개선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14진정0560200)	- 0000000중앙회장에게, 피진정인의 장애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과 소속 임·직원들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동일한 합격기준 요구 (14진정0826600)	- 00중앙도서관장에게, 향후 소속 공무원 모집 시 채용 예정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어 듣기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청각장애인에게 영어 듣기 능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채용에서의 차별 (16-진정-0542500)	- 손가락 장애를 이유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운반차량 운전원 채용 및 모집에 -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 부서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 교육을 실시 할 것과, 향후 직원 채용 공고시 공고문에 채용 예정분야에 관한 직무 세부 기술서를 첨부하여 장애가 있는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 대한 수행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6.11.14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신과질환 사회복지무원 소집 순위차별 (16진정1022500)	- 사회복지무원 소집순서 결정 등에 있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7.4.3	일부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교원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16진정0764100)	- 진정인이 교원으로서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7.4.3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금전 및 노동착취 등 (16진정10382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1을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위반 혐의로, 피진정인2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7호 위반 혐의로 고발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의 통장을 제3자가 관리하고 있는 실태(거주시설 장애인 및 직계존비속이 관리하는 대상은 제외함)를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을 경우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군수에게, 관내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를 요청한다.	2017.3.6	검토중

□ 교육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23)	- 불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사 할 것을 권고 - 특별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2008.12.22.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 거부 (08진차0000648)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정부고시에 규정에서의 특수학교 차별 (08진차0000469)	- 공공교육기관이 특수학교를 고시규정의 지역주민 공공 복지시설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	2008.12.26.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학급에서의 장애학생 수업배제 등의 차별 (10진정0710700)	- 피진정인의 소속 학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 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 교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관리·감독 기관인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향후 관내 학 교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직원, 학생,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차별예방교 육 및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75100)	- 휠체어 사용 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시설 의 재배치 또는 이동편의시설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6.13.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0600)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미확보로 인한 학습권 차별 (10진정0181100)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미비 (13진정08760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교내활동에서 배제되지 않도 록 인문관의 지상과 지하의 모든 층으로 접근할 수 있 는 승강기를 설치하고, 경사로를 정비할 것을 권고	2014.8.20.	수용
9	권고 (위원회법)	장애학생에 대한 불리한 진술강요 등 (14진정0309200)	- 00학교장에게, 피진정인들에 대하여 주의 등의 조치를 하고, 교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장애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 할 것 - 교육부장관 및 서울시교육감에게, 학교폭력 사안의 처 리과정에서 장애아동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 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보완·개 정 할 것	2014.11.1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	권고 (위원회법)	장애특례전형 실기시험 시 장애인 차별 등 (13진정0787500)	- 00예술고등학교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개선할 것 - 경기도교육감에게, 특수목적고 특수교육대상자 실기평가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4.12.16.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교육시설의 이용시 장애인차별 (14진정0870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 대상 인권교육, 장애인 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교육과 안내를 실시할 것을 권고	2015.1.19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생에 대한 전학강요 (15진정0280500)	- 학교법인 00학원 이사장에게, 피해자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퇴학시킨 피진정인 1과 2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할 것, 피진정인 1에게, 향후 유사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5.9.18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폭행피해 장애인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미흡 (15진정0860000)	- 사회복지법인 00원 이사장에게, 피진정인을 경고 조치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 할 것을 권고	2016.2.17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급에 대한 하절기 냉방장치 미가동에 의한 차별 (17진정0627100)	- 00광역시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2017.10.31	검토중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학생에 대한 의료편의 미제공 등 (16진정0644000)	- 장애학생의 학습활동에 필요하고 의사 진단서에 기초한 경우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교사에 의해 가래흡인과 같은 의료조치 등에 대한 편의를 지원할 것을 권고 - 학습활동에 필수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장애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7.6.12	검토중

□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차별 (08진차0000281)	- 진정인의 보험청약 심사 개시 권고 - 상법 제732조가 삭제될 때 가지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 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08.7.23.	일부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26)	-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정하여 고시할 것을 권고	2008.8.27.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454)			
4	권고 (위원회법)	시각장애인용 음성 축각정보 미제공으로 교통수단이용 차별 (08진차0000392)	- 버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실 질적인 편의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00광역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반영할 것을 권고	2008.10.1.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로 인한 현금인출기 사용 제한 (08진차0000416 등 2건)	- 기존 ATM 은 업그레이드하고 향후 ATM 구입시 시각 장애인을 위한 기능을 갖춘 ATM을 구입하는 방식으 로 영업점 마다 최소1 대이상의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ATM을 배치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6	권고 (장애인차별 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44)	- 장애인에 대한 보험업무 처리 시 금지된 차별행위와 관련한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6.12.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08진차0000886)	- 피해자의 보험청약 제심사, 직원 인권교육, 심신상실· 심신박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차 등 마련 권고 - 감독기관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09.8.7.	수용
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의 이동권 침해 (08진차0000529)	- 횡단보도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것을 권고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도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09.9.18.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자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출거부에 의한 차별 (10진정0004600)	- 피해자에게 대출희망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받기를 원 할 경우 대출심사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피해자에게 1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00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회사를 포함한 금융회 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 을 수립 및 시행할 것을 권고	2010.7.19.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보안카드 미발급으로 인한 차별 (09진차0001012 등 2건)	- 00은행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 개인 또는 법인 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발급할 것과 재발방지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시중은행에서 시각장애 인을 위한 개인 또는 법인용 텔레뱅킹 점자보안카드를 조속히 발급하도록 조치할 것과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09진차0000231 등 2건)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지하도 및 지하상가를 접근·이 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00지하도'에 승강기를 새로 설치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건물 임대시 장애차별 (10진경0351700)	- 0000대표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할 것을 권고 - 00청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하나뿐인 장애인 대형면허 시험장 운영으로 인한 장애인 차별 (10진경0245700)	- 전국의 총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우선적으로 주요거 점이 되는 시험장에 장애인 1종 대형 및 특수면허 기 능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	2010.8.9.	수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거부 (10진경0291000 등 2건)	- 대표이사에게 진정인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가 족카드 발급을 원할 경우 즉시 가족카드를 발급하여 줄 것, 신용카드 발급동의 확인 시 장애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할 것,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원장에게 제금융회사에 대한 지 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및 시 행할 것을 권고	2010.8.25.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제한 등 (09진차0001552 등 6건)	- 피진정인 000 대표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 여 피해자들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위원장 및 0000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 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및 지침 등을 조속히 마련하 고,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9.10.	일부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55)	- 피진정인에게,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지적장 애인의 보험인수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 및 심사절 차를 마련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0.10.20.	일부 수용
17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0)		2010.10.20.	일부 수용
18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제한 (09진차0001563)		2010.10.2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 거부에 의한 차별 (09진차0001023)	- 00000위원장에게, 자필 작성이 어려운 장애인도 신용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여성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제3호를 합리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	2010.10.20	수용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수영시설 이용 제한 (09진차0001175)	- 00000청장에게, 당해 구청이 소유·지원하는 청소년 수 련관등의 수영장 시설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2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부 (10진정0377600)	- 피진정인 00 대표이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 식으로 인수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 인권교육 권고	2011.3.8.	수용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 거부 및 인격권 침해 (10진정0532200)	- 00 대표이사에게, 『00중앙회 여신업무방법』의 지적장 애인에 대한 여신취급 시 유의사항 조항을 삭제하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 록 00중앙회를 포함한 금융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한다.	2011.4.26.	수용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발달장애를 이유로 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736800)	- 피진정인 00손해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향후 장 애인의 보험청약건에 대해 인수심사를 하는 경우 장애 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보험 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 제반 조건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할 것,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2011.4.26.	수용
2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 (10진정0470000)	- 00시립 00도서관장·00시장·00교육감에게, 휠체어 등 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0000시립00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 설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2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버스 내 청각장애인을 위한 전자 문자 안내판 제공 (10진정0373100 등 13건)	- 000장관에게 2009. 3. 1. 이전부터 운행해 온 시내버스,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의 내부에도 전자문 자안내판을 설치하여 청각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전자문자안내판 설치 세부기준』 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의 [별표1] 및 [별표2]를 개정하고, 마을버스 운송업체들이 개정된 내용에 따라 버스 내부에 전자문자안내판을 적극 설치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함과 동시에 지도·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2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접근권 침해 (10진정0140200)	- 00지사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경기도여성비전센 터를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승강기를 설 치할 것을 권고	2011.4.26.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철거 (10진정0765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대상건물 주출입구에 설치되었던 경사 료를 철거 전으로 원상복구 시킬 것,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 여 '00000 상가변영회 운영규정'을 개정하거나 '관리 단의 건물관리 및 사용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권고 - 00000구청장에게, 대상건물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 는 편의시설로 완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5.17.	일부 수용
2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8400 등 8건)	- 시각장애인에게 진료기록부 사본을 발급할 시에는 사 본에 인쇄물음성변환 바코드를 생성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의 내용을 점자화한 자료 또는 표준텍스트파일 등 을 사본과 함께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편의를 제공할 것, 진료기록부 사본의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직 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000장관에게, 전국의 종합병원이 위에 제시한 적절 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17.	수용
2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66100 등 25건)	- 피진정인에게, 00동 등 6개 우편취급국에 시각장애 인을 위한 확대경이 즉시 비치되도록 할 것과, 전국 우 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확대경 비치 여부에 대한 실태 를 파악하여 비치되지 않은 곳에는 조속히 확대경을 비치하도록 할 것,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6.30.	수용
3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 가입 거부 (10진정0231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 법령 및 규 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건을 재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관련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권고 - 00000장에게, 향후 보험회사가 진정인과 같은 청각장 애인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함에 있어 「상법」 제 644조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보험청약 자의 장 에 정도 및 원인, 건강 상태에 대한 개별적·구체적 검토 를 통해 부담보 등 별도의 조건을 부가하여 인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6.30.	수용
3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사용 불편 등 (10진정0370410 등 9건)	- 피진정인들에게, 장애인화장실을 남녀 구분하여 설치 할 것과, 실태 점검 후 남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역 사의 화장실에 대해서는 남녀 구분 설치를 위한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 장관과 0000시장에게, 지하철 역사의 장애 인화장실 남녀구분 설치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 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2	권고 (위원회법)	음식점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출입 제한 (09진차0001267)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피진정인이 운영 하는 식당 건물을 접근·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0청장에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업무 담 당 직원들에게 편의시설 설치·점검 누락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과, 피진정인이 관련 규정에 부 합하는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 을 권고	2011.7.22.	수용
3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 (10진정0376701 등 39건)	- 00구 관내 버스정류장에 즉시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버스운 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00시 관내 버스정류장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1.7.22.	수용
34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에 따른 이동권 제한 (11진정00749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시 청 민원실동 지하 구내식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 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3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미설치에 따른 장애인 차별 (10진정03716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이 지하철 역사 내 환승통로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에는 경사로를, 000역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과, 관할하는 모든 역사의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현 황을 점검하여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원 활한 이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부 개선계획을 수립 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의 관리·감독 교통행정기관인 00시장에게, 지 하철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예산지원을 확 대할 것을 권고	2011.8.22.	수용
3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미비로 인한 차별 (10진정0794800 등 2건)	- 00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하고, 단속 취약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것을 권고 - 피진정 백화점 및 대형마트 관리자에게, 장애인전용주 차구역에 불법주차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고객 들에 대한 안내 및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발견 시 관할 행 정기관에 적극 신고할 것을 권고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 단속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 적 근거를 마련할 것,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 고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3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범당 출입거부 (11진정0310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사 주지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사찰 내 시설물 출입을 희망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과, 사찰 내 전체 스님 및 직원에게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대한불교00종 총무원장에게, 종단 소속 사찰에 대해 관련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재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접근편의를 증진할 수 있도록 범당 등 사찰 시설물에 승강기, 경사로 등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할 것과, 사찰, 교회, 성당 등 종교시설 이용에 있어 장애인이 차별받는 일이 없도록 종교계와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3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을 위한 편의 미제공에 의한 차별 (11진정006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이 00시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서 행정절차 및 서비스 등을 접근·이용하는 데 있어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과,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행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28	수용
3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상업시설 접근제한 (11진정0353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0000상가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상가 내 각 층 승객용승강기 출입문 앞에 설치된 말뚝을 즉시 제거 조치할 것과, 향후 승객용승강기를 이용한 화물운반을 금지하기 위해 별도 대책을 수립·운영할 시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권고 	2011.12.19	수용
4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사용제한에 따른 차별 (11진정0586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0아파트 생활문화지원실(관리사무소)장에게, 장애인 전용주차장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차량만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토록 당 아파트 주차관리 내규 제12조를 개정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00000 아파트를 포함하여 관내 아파트 입주민에 대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및 이용에 대한 홍보와 위반 차량에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2.1.10.	수용
4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피해보상금 산정에 있어 장애인 차별 (10진정0621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광역시 0000공제회 이사장에게, 진정인에 대한 공제급여 심사과정에서의 하자과 90일이내의 불복신청을 하지 못한 사정을 수용하고 재심사를 할 것, 담당자 인권교육 권고 - 교육과학기술부 및 00광역시교육감에게,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2012.3.23.	수용
4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홈페이지 웹 접근성 관련 장애인 차별 (10진정0608110 등 2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시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 	2012.3.2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4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 거부 (11진정0194800)	- 00우체국에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제심사 할 것과, 보 험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피해 자와 진정인에게 각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할 것을 권고 - 지식경제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 지 않도록 보험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5.1.	수용
4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방송 웹사이트 장애이편의 제공 미흡 (10진정0563400 등 93건)	- 해당방송사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고,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 성지침 2.0」을 참고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개 선할 것을 권고	2012.5.1.	일부 수용
4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정당한 편의제공 미흡 (11진정0074901)	- 00시장 및 00도시공사 사장에게, 00기념관 실내수영장 에 승강기 또는 경사로와 입수보조시설을 조속히 설치 하는 등 「장애인차별금지법시행령」 제16조 [별표5] 의 규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승강기 등 미설치로 인한 도서관 이용 제한 (11진정0371500)	- 00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서관의 자료실, 열람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10진정0375400)	- 00시가 소유·지원하는 수련관의 수영장시설에 장애인 이 참여할 수 있는 수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장애 인차별금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규 정을 준수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승강기 전기료 차등 부과 장애인 차별 (11진정0555300)	- 003단지 00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타 세대 에 비해 부당부과된 금액 총 47,990원을 진정인에게 환급 조치할 것과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승강기전기료 를 동일하게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피진정아파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하도록 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저층(2층 및 3층)에 거 주하는 휠체어이용 장애인 세대에게 승강기 전기료 부 과 시 타 세대와 균등하게 부과하는 내용이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	2012.5.25.	수용
49	권고 (위원회법)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이동권 제한 (11진정0317900)	- 000구청장에게 장애인이 00보도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사용 장애인에 대한 항공기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527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항공 대표이사에게, 공항 여건상 항공기를 탑승교에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휠체어 승강설비 및 기내용 휠체어 등을 구비·운영할 것을 권고 -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항공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별표2]를 개정하여 항공기 탑승편의시설로 휠체어 승강설비를 의무화할 것과, 저비용항공사에 장애인에게 휠체어 승강설비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5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 차별 (12진정022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00보증보험 대표이사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직원에 대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금융위원회위원장에게, 향후 시각장애인 등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권고 - 금융감독원장에게, 장애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보험회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2.7.18.	수용
5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과제빵 실기시험시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 (11진정06999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0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점정업무처리지침 제18조를 청각장애인의 요청 시에 장애상태를 확인 후, 수화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5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티투어버스 장애인 탑승편의 미제공 (11진정0188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광역시장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00시티투어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티투어버스에 휠체어 리프트 등 장애인 탑승편의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8.22.	수용
54	권고 (위원회법)	아파트 주출입구 경사로 미설치로 인한 이동권침해 (12진정0012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00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아파트 주출입구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경사로를 설치할 것을 권고 	2012.11.29.	불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5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월정액주차 이용 거부 (12진정0782400)	- 피해자로부터 2개월 동안 징수한 총 주차비 1,100,600원 중 2개월 간 월정액 주차비 300,000원을 제외한 총 800,600원을 피해자에게 즉시 환급할 것,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월정액 주차를 신청하는 경우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월정액 주차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차관리 직원 전원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련 교육 수강하도록 할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2에 관련 법령에 적합하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인 시설2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향후 유사한 피해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주차장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함.	2013.1.29.	일부 수용
5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미제공 (12진정0653600)	- 00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및00구청장에게, 시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14조제1항제1호의규정을준수하여조속히정당한편의를제공할 것과정당한편의제공전까지는대체방안을마련하여시행할것을권고	2013.3.13.	수용
5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364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대학교 박물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점자 안내책자 내지 음성변환 바코드가 있는 안내책자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5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수화통역 미제공 등 차별 (12-진정-0643900 등 3건)	- 청각 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수화통역 및 보조인력, 보청기를 제공할 것과 탈의실과 샤워실 냉·온수기에 점자를 표시하는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5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569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유도 및 안내설비 설치와 수영장내·탈의실내 사물함·헬스장내 운동기구·화장실 세면대 냉·온수기 등에 점자블록 설치 또는 점자스티커 부착, 시각장애인용 안내책자 제공, 시각장애인 등이 요구 시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인력 배치 등 즉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6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700 등 2건)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문화·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300)	-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문화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점자 내지 음성으로 변환되는 안내자료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4.3.	수용
6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7800 등 3건)	- 00구청장과 00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청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지도식 안내판, 점자블록 설치, 보조인력의 배치, 수화통역 제공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6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000 등 6건)	- 00구청장과 00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시각 또는 발달, 지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체육·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강의교재 제공, 촉지도식 안내판 설치, 장애인화장실에 광감지식 등의 세정장치 설치, 그리고 샤워실에 수평 또는 수직 손잡이, 접이식 의자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6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문화시설 이용에 있어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2진정0618800)	- 00구청장과 00문화재단 이사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000시네&000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 등의 요구 시 문화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즉시 제공할 것을 권고	2013.5.2.	수용
65	권고 (위원회법)	법무사 자격시험의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3진정0073700)	-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주관하는 법무사 자격시험에 있어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6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 및 정신과약 복용을 이유로 보험가입 거절 (13진정0388500)	-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피해자의 보험청약건을 정식으로 인수심사 할 것, 보험심사업무를 담당하는 관련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위원회가 권고한 '장애인보험차별개선을위한가이드라인' 취지에 맞는 보험인수와 관련한 세부지침 및 심사절차 등을 마련할 것을 권고 - 00위원회위원장에게, 「보험업법」 제97조를 위반한 피진정인에게 관련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3.8.21.	수용
6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이동권 제한 (13진정0172300 등 2건)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석바위사거리 및 동인천역 앞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설치 및 주변 보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3.11.12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6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에 의한 차별 (13진정0192700)	- 00도서관장에게, 주출입구 접근로의 안전성이 확보되 도록 보행환경을 개선할 것,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2층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할 것, 장애인 화장 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권고	2013.12.13	수용
6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이용 제한 (13진정0951100)	- 00마트점장에게, 주요 영업공간인 2~4층 매장을 휠체 어이용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를 상시 개방 할 것과 휠체어 이용자는 수평보행기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안내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 화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엘리베이터 운행실 태를 현장점검하여 그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 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7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 (14진정0013000)	- 피진정인에게, 이 사건 진정인과 같은 선천성 손가락 결 손 장애인에게 적용될 인수기준을 마련할 것,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당해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 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소속 직원 및 각 영업지점의 보험모집원 모두에 대해 장애차별 금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4.11.17	수용
7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자판기에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4진정0341500)	- 피진정인에게, 시각장애인이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품명과 가격을 점자로 제공할 것을 권고	2015.3.30	수용
7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횡단보도 미설치로 인한 장애인 차별 (14진정0547800)	- 피진정인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도로를 횡 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00역 교차로에서 00교 사이 의 중앙대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할 것, 00광역시에게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 전하고 편리하게 위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변 보 행환경 정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것을 권고	2015.3.30	수용
7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전용주차장 이용 불허 (15진정01463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이용 방해와 관 련하여 00장애인인권센터에서의 인권교육을 받을 것 을 권고하고, 00구청장에게, 관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설치·운 영 실태를 현장 점검하고,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올바 른 이용을 위한 안내판 설치 등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를 강화할 것을 권고	2015.7.23	일부 수용
7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이란 이유로 학원 수강 거부 (15진정0178400)	- 피진정인에게, 교육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받을 것을, 00광역시 00교육지원청장에게,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 장애인 차 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7.2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7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서울광장 배수구로 인한 장애인 이동권 침해 (13진정0917000 등 3건)	- 서울특별시장애인, 서울광장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동등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수로 덮개의 틈 새를 좁히는 등 안전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7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하철역사 화장실 이용시 장애인 차별 (14진정09199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화장실을 안 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를 설치하거 나,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5.8.20	수용
7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화장실 남여공용 설치에 의한 차별 (15진정02908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 화장실을 남자용과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을, 00시장에게, 000주민센터 장애 인 화장실 개선공사 관련 예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을 권고	2015.9.18	수용
7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16진정0338800)	-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 령을 준수하여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체크카드와 동봉 하여 발급하는 안내문을 발급함에 있어서 각장애인이 안내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알 수 있도 록 시각장애인 특성을 감안하여 사본에 인쇄물 음성 변환바코드 생성처리하여 제공하거나, 사본을 교부하 면서 동시에 사 본 내용을 점자 자료화 자료 또는 녹음 한 파일 등도 함께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과 산하기관의 점자 체크카드 발급업무를 담당하는 직 원을 대상으로 이와같은 내용에 대해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2016.12.28	수용
7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공항 내 이동권 제한 (15진정0919600)	- 항공보안검색 과정에서 전동휠체어 등 전동이동보조 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 대해 향후 유사한 이동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검색 관련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보안검색요원 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6.12.28	수용
8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폐지에 의한 장애인 차별 (15진정0349900)	- 00주공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장애인전용주차 역을 재설치할 것을 권고함.	2016.10.5	검토중
8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546400)	- 피진정인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방지하고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 속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기 바람	2016.6.8.	수용
8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관광객 수송차량 휠체어 승강설비 미장착 (16진정0275500)	-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000자연휴양림의 관 광객 수송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 설비 장착 등 의 편의제공 방안 마련 - 00군수는 향후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 마련시 장애인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실질적으로 동등 한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 수립	2016.12.7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웹 접근성 이용시 시각장애인 차별 (16진정0746800)	- 피진정인에게 웹사이트 '00000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의 보안문자에 대하여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할 것을 권고	2016.11.14	수용
8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항공기 이용시 전동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775200)	- 피진정인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이를 훈련된 소속 직원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을 위해 전동휠체어의 배터리 분리 및 재장착 시, 항공운송사업자가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국내 항공운송사업자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6.12.7	수용
8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을 이유로 한 차량렌탈 거부 (16진정0692300)	- 피진정인은 장애인용 운전보조 장치인 좌측페달을 구비할 것과 진정인등 장애인 운전자가 요청해 올 경우 차량을 대여해 줄 것을 권고	2016.12.28	수용
8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모바일 환경에서의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제한 (14진정0887600)	- 피진정인에게, 모바일 환경에서 시각장애인이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권고	2016.4.22	수용
8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14진정0887500)			
8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주차구역 무단 철거 (16진정07956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주차구역에 장애인주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 주차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2016.11.14	수용
8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식당이용 제한 (15진정0975900)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 7.22.	수용
9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주택 임대사 장애인 차별 (15진정0890200)	- 피진정인에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6.2.17	수용
9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에 대한 간식비 갈취 (15진정0890200)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장애인금 및 생계급여 중 증빙하지 못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00군수에게, 가) 피진정인이 반환해야할 금액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도록 조치하고 나) 수급관리자의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고 다)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6.11.14	수용
9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제공 미흡 (16진정0267000)	- 피진정인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도 순환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 00광역시장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비롯한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00시립미술관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피진정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하기 바람	2016.10.5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9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 이전 강요 (16진정0796200)	-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시설 이전을 강요하는 공문 발송 및 승강기내 공고문 부착행위를 중지할 것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 - 00시에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	2016.12.28	수용
9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이용 (16진정02227100)	- 피진정인1은 피진정인2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관리 및 폐기를 철저히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피진정인2는 개인정보 보호원칙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방문 목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말고, 모든직원에게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 보호관련 인권교육을 실시	2016.5.13	수용
9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사무실 임대 거부 (17진정0861100)	-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해 장애인차별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7.12.1	검토중
9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보험가입 거절 (16진정0962400)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의 보험청약을 재심사 - 향후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 보험심사업무를 취급하는 직원에 대하여 보험인수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각 권고	2017.12.1	검토중
9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위반 등 장애인차별 (17진정0146600)	- 아파트 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00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7.8.11	검토중
9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4DX 관람 시 중증장애인에게 보호자 동행 요구 (16진정0134300)	- 중증장애인의 4DX 상영관 이용 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보호자의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 - 4DX 관람석의 진동 정도나 진동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중증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을 권고	2017.10.31	수용
9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아파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폐쇄 등 장애인 차별 (17진정0709700)	- 00아파트 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주거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차별행위를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주출입구 등을 개선할 것을 권고 - 00구청장에게, 00아파트를 비롯한 관내 공동주택에서 유사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7.10.31	검토중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 치 내 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0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고속·시외버스 등 이용 시 휠체어 사용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15진정0667600)	-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시외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고속· 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등 필요한 대책을 마 련할 것을 권고	2017.7.3	일부 수용
10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16진정0406300)	- 휠체어 사용 장애인 등이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임시경사로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17.6.12	불수용

□ 사법·행정 절차 및 서비스 이용 차별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에 대한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728)	- 점자로 인쇄된 보상협의안내문과 보상내역서를 진정인에게 즉시 송부할 것을 권고 - 향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08.8.8.	수용
2	권고 (위원회법)	진압시 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분리 (08진차0000874 등 2건)	- 중증장애인들의 휠체어를 분리하는 진압행위를 최대한 자제하는 방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09.8.31.	불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지적장애인 구속수사 과정에서의 차별 (09진차0000664)	-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에 따라 보호자 등의 조력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2010.1.1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연행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등 (10진정0071400)	- 과도한 경찰장비 사용 및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미제공 등과 관련하여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 관련 인권교육 및 장애인차별 예방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휠체어 장애인의 통행권 침해 등 (10진정0187800 등 4건)	- 00경찰청장에게, 피진정인 000경비과장에 대하여 주의조치 권고 - 00경찰청 기동단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1.5.4.	일부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활동도우미 부당해고 관련 감사결과 미이행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677100)	- 0000지사에게, 특별감사결과를 이행할 것과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감독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관련 운영규정(조례·규칙 포함) 등 제·개정 권고 - 0000지사에게,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시킬 것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2012.4.9.	수용
7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사법절차에서의 청각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미흡 (10진정0484500)	- 00총장에게, 출석요구·조사·결과통보 등 각 수사단계에서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의 유형 및 정도 등을 고려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2.7.4.	수용

□ 장애인 참정권 영역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7)	-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 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19)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 (08진차0000920)	- 향후 장애인 선거권자의 선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비밀선거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관할 투표소의 선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 할 것을 권고 -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할 선거구의 선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철저 히 할 것을 권고	2008.12.3.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편의시설 미제공 (08진차0000921)	- 장애인이 접근가능한 투표소 선정할 것과 부득이한 사정 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 것을 권고 - 투표소 선정기준 마련 후 지침시달 및 관리 감독 철저 권고	2008.12.3.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 평등권 침해 (14진정0160100 등 8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가. 장애인 선거인이 혼자서 투 표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을 마련 할 것 나. 기표대 내에 투표 보조인이 함께 들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기표대의 규격을 개선하고, 이와 관련하여 투표 보조의 구체적 방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4.4.22.	수용

□ 괴롭힘 영역 등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환경 열악 등에 의한 차별 (10진정0102600)	- 피진정인에게, 횡령한 장애수당 및 중증수당을 즉시 피해 자들에게 반환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에 대해 검찰 고발 - 00000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 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 0000시장과 00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시장 및 00구청장에게, 피진정인의 인권침해 또는 차 별행위에 대하여 피진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	2010.6.3.	수용
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611700)	- 피진정인 학대혐의로 검찰 고발 - 0000복지회 이사장에게, 엄중 경고 등 조치를 취할 것, 향 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인권교육 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교 교사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대행위 등 (10진정0572400)	- 000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 내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0.11.15.	수용
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현장시정지원단 교육 시 장애인 차별 (09진차0000938)	- 000시장에게, 향후 교육 시행 시 장애인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할 것 과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	2010.12.17.	수용
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괴롭힘 (10진정0568000)	- 00시장에게, 피진정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00시장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엄중 경고조치 할 것 등을 권고	2011.1.6.	수용
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생활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노동 강요 등 (10진정0341700)	- 생활인을 폭행하고 장애수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시설장 과 생활교사 검찰고발 - 00시장과 해당 구청장에게, 해당 시설에 대해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장관에게,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6.	수용
7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폭행 및 괴롭힘 등 (10진정0728000)	- 피진정인 폭행혐의로 검찰고발 및 수사의뢰 - 00시장에게, 피진정시설 000에 대해 시설폐쇄 조치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 하여 시행할 것,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 저히 할 것을 권고 - 0000지사에게, 피진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법 인 '00재단'에 대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할 것, 도내 지방자 치단체 및 장애인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을 권고	2011.2.14.	일부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8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생활시설에서의 횡령 등 (11진정0099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이 피해자들의 수급비 및 장애수당 등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수사의뢰 - 00시장 및 00시 00청장에게, 회계업무 담당자 교체를 포함하여 피진정인의 차별행위에 상응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피진정 시설을 포함하여 관내 장애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피진정인에게,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들의 장애수당 등에 대해서 각각 000씩을 피해자들에게 즉시 반환조치 할 것을 권고	2011.6.7.	수용
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를 이유로 한 금전적 착취 (11진정0170100)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의 임금 및 재산을 횡령한 피진정인 고발 - 피진정인에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대로 사용한 60,244,000원 상단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속히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 피해자의 통장, 도장, 신용카드, 주민등록증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아동시설 원장의 폭행 등 인권침해 (11진정0440300)	- 검찰총장에게, 중증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학대한 피진정인을 고발 - 00구청장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이 폭행과 학대를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과, 00000터를 포함한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사회복지법인 000의 00000터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그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할 것, 사회복지법인 000 및 소속 시설들의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내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1.11.10.	수용
1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예배 참석 및 현금 강요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11진정0306100)	- 사회복지법인 00이사장에게 거주 생활인들의 의사에 반한 종교 활동 참석 강요, 현금, 후원금 등의 납부 강요, 종교 활동 참석과 관련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행위, 식사를 못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광역시 00구청장에게 피진정기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	2012.2.13.	수용
1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설교사들의 장애아동에 대한 가혹행위 등에 의한 인권침해 (11진정0586400)	- 시설장에게 직원인권교육수강, 법인이사장에게 재발방지대책수립, 00구청장 및 00시장에게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2012.5.25.	수용
1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노동강요 및 금전착취 (12진정0202800)	- 검찰총장에게 피해자에 대한 폭행, 금전착취, 노동강요, 성폭행혐의에 대하여 수사의뢰	2012.6.13.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14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국어능력인정시험 시 장애인 편의조치 소홀 (12진정0519200)	- 피진정인에게, 국어능력인증시험시 뇌병변 장애인 등에게 안전행정부의 장애 유형별 편의 지원 내용 또는 KBS 한국어능력시험, TOEIC 장애인 응시규정 등을 참고하여 시간 연장 등 필요한 편의조치를 제공할 것을 권고	2013.6.18.	수용
15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교사에 의한 장애학생 폭행 등 (13진정0177400)	- 00시교육감에게, 관내 모든 학교장 및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장애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피진정인 1을 징계할 것, 피진정인 2를 주의 조치할 것,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	2013.9.24.	수용
16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 시설내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13진정0743000)	- 검찰총장에게, 피진정인들이 시설 거주 장애인들을 폭행한 점에 대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형법」 제260조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피진정인 1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과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사회복지법인 0000 대표이사에게, 법인 산하 시설 원장을 포함한 전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관련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3.11.12.	수용
17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감금과 강박 (13진정0733200)	- 피진정인에게, 간병의 편의를 위하여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종사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00시장에게, 이 사건 요양병원을 비롯하여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에서 불필요한 신체 억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4.7.7.	수용
18	권고 (위원회법)	장애인 보호조치 소홀 등에 의한 인권침해 (14진정0271500 등 2건)	- 검찰총장에게, 00원에서 발생한 질식사고, 00요양원에서 발생한 골절사고와 관련하여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 과실치상혐의로 고발 - 00시장에게, 가. 00원과 00원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7, 제60조의4규정에 반하여 거주인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태한 행위와 거주인간의 성추행에 대한 부주의한 행위, 00요양원의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의 간호사배치 등의 시설인력기준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나. 모·부성권 보호와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다. 거주인들의 권리 침해나 제약, 부당한 처우가 없도록 주기적으로 거주인 개인별 심층면담을 실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4.10.21.	수용
19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특수학급 실무보조원의 장애아동 비하 발언 등 (13진정0841400)	- 피진정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하여 00광역시 00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과 해당학교 교직원에게 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실시 할 것과, 00광역시 교육감에게 피진정인을 징계 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	2015.6.30	수용

연번	조치구분	사건명 (사건번호)	조치내용	의결일자	이행 현황
20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15진정0610400)	- 피진정인에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도록 0000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이용 장애인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할 것을, 체험홈의 자립생활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배제하고 피해자를 비하·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특별인권교육을 이수할 것을, 보건복지부장관과 00시장에게, 피진정인과 진정의 직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활동보조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행정조치 할 것을, 00시장에게, 0000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2015.11.19	수용
21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식품제조업체 상사의 장애인에 대한 모욕 등 (17진정0662500)	-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7.9.12	검토중
22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대학교수의 장애인 비하 발언 (17진정0270400)	-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	2017.8.11	검토중
23	권고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 차별 (17진정0169100)	- 00고등학교장에게 피진정인1을 징계조치 하고, 향후 희망일자리 사업의 시행 등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 - 00시교육감에게, 희망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학교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교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 한국00000공단 00지사장에게,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을 권고	2017.6.12	수용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

발제 2

묻혀있던 그들의 이야기
- 충청북도 내 장애인의 'me too' 실제 사례 분석

신해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묻혀있던 그들의 이야기 - 충청북도 內 장애인의 'me too' 실제 사례 분석 -

신해 (충청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들어가는 글

2018년 1월 29일은 성평등민주주의라는 새집을 짓기 위한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그것은 바로 한 여성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으로 우리나라의 '미투'운동의 도화선이 된 날이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개월이 조금 넘게 지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매우 아프고 절절하게 '미투'운동을 받아들이며 성평등에 대한 개념정립을 다시 하고 있다.

지난 과거의 여성들은 가부장적 전통의 낡은 의식에 큰 피해자이다. 집안을 지키기 위해 여성은 늘 희생해야 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졌다. 가부장제 문화가 남성에게 권력을 허용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만들어졌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미투 운동을 통하여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회적 동의가 이루어졌고 성폭력 사건이 어떻게 다뤄져야 하는지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문제는 쉬이 풀어올랐다 빠르게 식어버리는 대중성이다. 본질의 해같은 현상을 외면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미투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모습이다.

'미투'운동이 자칫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불러일으키는 뉴스가 된다면 그 결과는 아마도 가해자가 자신을 지목한 여성들을 무고나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게 될 것이며 오래된 적폐인 성별 권력구조의 개편과 성과별의 근본 문제 해결은 더욱더 멀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2005년부터 인권활동가들에 의하여 밝혀지기 시작한 광주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가 2011년 상영된 뒤 장애인 성폭력사건의 심각성이 국민 여론으로 형성됐다. 그 영향으로 정부는 장애인 성폭력사건에 대한 정부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는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2011년 제정, 2013년 6월 시행으로 법적 제재를 강화했다. 개정안은 장애인과 13세 미만의 아동을 성폭행했을 경우 가

해자가 받게 될 최저 형량을 각각 7년과 10년으로 늘리고,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북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내역을 보면 강간 및 성추행 등 60건, 2014년 69건, 2015년 60건(출처-오마이뉴스 2016.11.28.)으로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발제자는 위 결과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밝혀진 2005년을 기점으로 충청도내에서 발생한 여성장애인 성폭력 기사들과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원하고 있는 피해자의 방송내용을 분석,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재발을 방지하고 보다 효과적인 피해자 회복지원에 대한 대책을 찾고자 한다.

본문

발제자는 지역사회 내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장애계뿐만 아니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건을 현주(가명)씨 건과 하은(가명)양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

발제자가 직접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여에 걸쳐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직업지원했던 현주(가명)씨는 일명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7년간의 성폭력'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를 던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사건의 피해자이다.

현주씨는 유치원에 다닐 때 어머니가 집을 떠났고, 아버지는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사건에 휘말려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홀로 남게 된 현주씨는 시골 마을의 이장님이 돌봐 주게 되었으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마을 남성 7명에게 지속적이고 집단적으로 7년간 성폭력의 피해자로 살아온 것이 알려지게 되었다.

법원은 해당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마무리했고 이에 반발해 28개 시민단체가 '지적장애여성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다. 이후 장애여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2001년, 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가 개소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장애여성의 성폭력을 하나의 사회구조적문제로 규정하고, 인권의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장애여성의 성폭력 문제가 비로소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기 시작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2016년 당시 장애계를 경악하게 했던 판결이 있었다. 지적장애 청소녀 하은(가명)양 사건인데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장애계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게 되었으며 지적장애인과 관계된 사건의 경우 초등수사과정의 중요성과 경찰의 조사구조·질문자 태도·질문내용·신뢰관계 동석배치·의사소통 조력인 미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하은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 사건으로 처리되었어야 할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 사건으로 기소되어 가해자들은 성 매수자로 가벼운 벌금형만을 받은 사건이다. 이후 하은이의 부모가 성매수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면서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공중파 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이 사건이 집중 조명되면서 의제 강간의 연령에 대한문제가 다시 제기되었고, 더불어 지적장애 청소녀의 성폭력이 어떻게 성매매로 구성되는지를 보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장애에 대한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장애인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 시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실력있는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거나 진술 조력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사법서비스를 제공했다 라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리고 언론이 지적장애의 특성과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의 특성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통해 우리 사회의 장애감수성과 반성폭력 인식이 향상되었다 라면 이 사건은 지적장애 청소녀의 취약함을 이용한 성폭력이었다는 것을 사회전반에 알려 지적장애인 성폭행에 대하여 사회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이후 여성장애인 성폭력 기사가 쏟아져 나왔지만 결국 하나의 흥밋거리처럼 소비되고 어느새 유행지난 옷처럼 관심 밖으로 밀려나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았다. 현주씨와 하은양 사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장애여성의 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기사들이 처음에는 온갖 자극적인 제목으로 “아이처럼 아무 것도 모르는 불쌍한” 장애여성을 성폭행한 “파렴치하고 짐승 같은”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를 터트리면서 사건의 세세한 피해내용을 보도하는 것에 집중한다.

하지만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경우 가해자와의 관계 속에서 피해 장애여성의 장애가 어떻게 이용되었는지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애여성이 처한 가정 및 사회 환경, 대인관계 등 삶의 맥락적인 이해를 통해 피해를 입게 된 정황을 살펴봐야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그러한 것에는 관심이 없다. 더불어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다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다 또다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발생하면 마치 처음 있는 일인 것처럼 분노하고 자극적인 내용으로 기사화 되지만 금세 다른 더 자극적인 사건에 의해 잊히는 식이다. 그러나 장

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쉽게 소비되는 가십거리처럼 취급되지 않고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사회의 변화를 촉구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원인 및 대책찾기를 3방향의 분석을 통하여 장애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과 예방대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원인 및 대책 찾기 one!

일명 도가니 법이 2011년 제정 되는데 시발점이 되었던 2005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 충청북도 장애인 성폭행 관련 뉴스기사 23건을 분석하고 기사 제목에서 원인과 대책을 찾고자 하였다.

표1) 뉴스기사 제목 및 출처

no	내용	출처 및 기사작성 연도
1	목사가 여성장애인 상습성폭행 충격 옥천에 미인가 복지시설 3명 3년여동안 성폭행	충북인뉴스 2005.06.13
2	장애인 집단 성폭행한 6명 구속	뉴시스 2005.09.29
3	공무원이 지적장애인 '상품권'으로 유인 후 성폭행 '충격'	청주 cbs 2006.08.03
4	지적장애인 장애인 친구 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영장	뉴시스 2006. 8. 23.
5	장애여를 상습성폭행 50대 영장	뉴시스 2006. 8. 29.
6	장애인 모녀 '상습' 성폭행, 50대 男 구속	뉴스웨이 2009.06.23
7	지체장애인 성폭행 40대 징역 3년	충청매일신문 2009.11.03
8	이웃 장애인 주부 상습성폭행 3명 검거	충북연합뉴스 2009.12.21
9	'붕어빵 주겠다' 지적장애인 상습 성폭행 40대 영장	뉴시스 2010.07.01
10	잇단 장애아동 대상 성폭력..근본대책은?	충북 연합뉴스 2010.06.25
11	수년동안 지적장애인 성폭행 2명 구속	중부광역신문 2011.04.04
12	충북에서도 장애인 성폭행	bbs청주불교방송 2011.10.03
13	지적장애여성 수년간 성폭행..2명 구속	연합뉴스 2012.09.21
14	'사람의 탈을 쓰고 ...' 패륜 범죄 잇따라 지적장애아 친딸에 목쓸짓 삼형제 구속...조카 상습 성폭행한 50대 삼촌도 철창行	중부매일 2012.11.15
15	진천경찰서,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CCTV 논란	2013.05.22. 충북연합뉴스
16	'점심 먹자' 부른 뒤 장애 여성 성폭행한 60대 조선족 검거	시사신문 2013.06.19
17	女장애인 성폭행한 장애인단체 간부 충북 경찰, 70대男 조사	서울신문 2013.11.14
18	"서로가 서로를 만지고 성폭행" 장애인시설에서 무슨 일이...	일요신문 2016.03.31

no	내용	출처 및 기사작성 년도
19	'어쩌다 이 지경까지' 교육공무원, 지적장애 10대 친딸 성추행	연합뉴스 2016.06.22
20	충북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중 절반이 '미성년자'	오마이뉴스 2016.11.28
21	청주시 장애인 선수 성폭행 검찰 기소예정...피해자 고통 호소	충청뉴스라인 2017.09.20
22	지적장애 여신도 상습성추행한 승려 '집행유예'	뉴스1 2018.01.16
23	이웃집 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한 80대男 범정 구속	충북일보 2018.01.28

1) 기사제목에서 원인찾기

기사제목부터 예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단순히 조회 수 높이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떠한 기사제목도 장애인 성폭행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철학이 담겨져 있지 않다.

첫째,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는 제목들이 쓰여 지고 있다.

18번 기사 “서로가 서로를 만지고 성폭행”, 16번기사 ‘점심먹자’, 9번 기사 '붕어빵 주겠다', 3번기사 ‘상품권’으로 유인 등과 같은 기사의 제목은 피해자가 장애로 인해 얼마나 취약했는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장애여성은 실제 연령과 상관없이 어린 아이와 같이 무능력하고 무력한 존재로 인식하게 한다. 그래서 경도 지적장애나 경계선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여성의 성폭력 사건의 경도 지적장애에 대한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는 부분들로 인해 수사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피해 자체를 의심 받기도 한다. 더불어 이러한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였는지 증명하기를 요구받게 되는 것이다. 이는 실제 지적장애인들 사이에서도 인지능력과 학습, 일상생활을 위한 기술의 습득 정도에 따라 다양한 층위의 사회생활 능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지적장애에 대한 정형화된 몇몇 특성이 과장되게 일반화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또한 15번 기사 “장애여성 가구에 CCTV 설치”에서 보여지 듯 장애여성에 대한 CCTV 설치를 통한 감시와 통제가 성폭력 예방 대책으로 거론될 수 있는 것은, 장애여성에 대한 통제를 보호라는 명목으로 정당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피해자의 상황이나 피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자극적인 표현이나 신분을 밝힘으로써 관심을 끄는 극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14번 기사의 '사람의 탈을 쓰고 ...' 패륜 범죄 잇따라 지적장애아 친딸에 몸쓸짓 삼형제 구속...

조카 상습 성폭행한 50대 삼촌도 철창行, 16번 기사 ‘조선족’ 1번기사 ‘목사’22번기사 ‘상습추행한 승려’ 19번기사 ‘어쩌다 이지경까지 교육공무원’ 17번 기사 ‘장애인단체 간부’ 등 사건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극적인 요소와 신문을 강조함으로써 본질이 오염되어 진실에 다가서는 것을 어렵게 한다.

셋째, 가해자 언어를 제목으로 인용하여 사용함으로써 가해자의 논리가 확산되거나 대중으로 하여금 범행 수법을 학습하게 하는 역효과가 예상된다.

기사의 제목에 가해자의 언어를 그대로 인용하는 예는 자주 발견하게 된다.

“붕어빵 사줄게“...지적장애女 성추행한 ~ , "상품권주겠다" ”점심먹자“등 특히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유인했던 가해자들의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소한 보상이나 친절에도 쉽게 유인되는 지적장애 피해자들의 취약성을 극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목들로 인해 지적장애여성들의 장애특성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로,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비인격화 시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가해자들에 대해서 14번 기사 ‘사람의 탈을 쓰고’ 또는 4번 기사 ‘인면수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이들의 행위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성폭력 가해자들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우리의 이웃이고 평범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다. 즉, 성폭력이 일상의 권력관계 안에서 누구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짐승 같은’ 사람에 의해 서만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성폭력의 일상성을 부정하고 성폭력의 문제를 자신과 분리하여 타자화하기 쉽도록 한다.

다섯째,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의 행위를 축소하는 표현이 많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을 14번기사 ‘사람의 탈을 쓰고’ 같은 비인격화된 존재로 그리기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는 반대로 가해자들은 “몹쓸 짓”이라고 가볍게 표현함으로써 이들이 한 범죄행동의 심각성이 축소되어 인식되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그들이 한 행동이 축소되어 표현됨으로써 그들의 범죄 행위가 희석되는 느낌이 있다. 따라서 범죄 행위에 대한 정확한 용어 사용을 통해 성폭력은 엄연한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기사제목에서의 대책

첫째, 가해자의 언어를 사용하여 장애인을 지나치게 무능하고 무력한 존재로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 밥사주고 상품권주면 유인할 수 있는 무력한 존재로 표현되면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 비인격화하지 않는다.

가해자가 장애인의 장애를 이용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짐승이나 악마로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가해자가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셋째, 장애인에게 가해진 성폭력 피해를 축소하지 않는다.

가해자들이 한 행동을 “인명수십” 이라던가 “뭉쓸 짓” 정도로 축소하는 것은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것이다.

넷째, 장애인 피해자에 대해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않는다.

장애가 있는 피해인이라는 이유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대상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장애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할 때 정확하고 인권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2. 원인 및 대책 찾기 TWO!

비장애인들의 미투운동은 붓물을 이루고 있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성폭행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미투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은?

성폭력 범죄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없이 실효성 없는 대책이나 엄벌주의적인 처벌강화만을 대응방안으로 내놓는 보도도 문제이지만 아래의 기사내용들을 통하여 어떻게 사건이 알려지게 되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표2) 피해자 장애유형 및 신고자

no	내용	피해자 장애유형	신고자
1	목사가 여성장애인 상습성폭행 충격 육천에 미인가 복지시설 3명 3년여동안 성폭행	지체장애 3명	미투 3건
2	장애인 집단 성폭행한 6명 구속	지적장애	확인안됨
3	공무원이 지적장애인 '상품권'으로 유인 후 성폭행 '충격'	지적장애	확인안됨
4	지적장애인 장애인 친구 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영장	지적장애	가족
5	장애여를 상습성폭행 50대 영장	신체장애	미투
6	장애인 모녀 '상습' 성폭행, 50대 男 구속	지적장애	친척
7	지체장애인 성폭행 40대 징역 3년	오류 - 지적장애	확인안됨
8	이웃 장애인 주부 상습성폭행 3명 검거	지적장애	가족
9	'붕어빵 주겠다' 지적장애인 상습 성폭행 40대 영장	지적장애	가족
10	잇단 장애아동 대상 성폭력..근본대책은?	지적장애	주민
11	수년동안 지적장애인 성폭행 2명 구속	지적장애	주민
12	충북에서도 장애인 성폭행	지적장애	확인안됨
13	지적장애여성 수년간 성폭행	지적장애	주민
14	'사람의 탈을 쓰고 ...' 패륜 범죄 잇따라 지적장애아 친딸에 목쓸짓 삼형제 구속...조카 상습 성폭행한 50대 삼촌도 철창行	지적장애	시설종사자
15	진천경찰서,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CCTV 논란	일반기사	
16	'점심 먹자' 부른 뒤 장애 여성 성폭행한 60대 조선족 검거	지적장애	미투
17	女장애인 성폭행한 장애인단체 간부 충북 경찰, 70대男 조사	언어·청각 장애	가족
18	“서로가 서로를 만지고 성폭행” 장애인시설에서 무슨 일이...	지적장애	공무원
19	'어쩌다 이 지경까지' 교육공무원, 지적장애 10대 친딸 성추행	지적장애	상담전문가
20	충북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중 절반이 '미성년자'	일반기사	
21	청주시 장애인 선수 성폭행 검찰 기소예정...피해자 고통 호소	지체장애	미투
22	지적장애 여신도 상습성추행한 승려 '집행유예'	지적장애	가족
23	이웃집 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한 80대男 법정 구속	지적장애	가족

1) 원인찾기

위 기사와 내용을 종합한 표를 보면 신고와는 무관한 일반 기사 2건과 확인불가 4건을 제외하면 총 17건 중 6건(35.2%)에 불과하다. 그리고 지적장애를 제외한 피해자(지체, 신체 등)는 6건인데 그 중 5명이 미투하여 신고율이 83%에 달하지만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일 경우 본인이 신고하는 것은 총 15건 중 확인불가 4건을 제외, 11건 중 1건(9.1%)에 불과하여 매우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충북도내 2005년 기사화된 사건 21건 중 지적장애여성피해자가 무려 15건(71.4%)에 달한다.

그렇다면 지적장애인 성폭력이 왜 많은 것인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가?

바로 힘과 권력의 관계 때문이다. 여러 가지 힘이 작동하는 관계에서 젠더 폭력은 발생한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를 쉽게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할 때 성폭력이 발생한다. 힘은 관계에서 제압을 할 수 있는 유형의 힘도 있지만 권력이라는 무형의 힘도 있다. 그렇다면 몸의 통제권을 쉽게 빼앗길 수 있는 위치에 놓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지적 장애 여성들이다. ‘여성’과 ‘장애’라는 이중적 차별이 있는데 ‘지적장애’는 ‘장애’안에 또 다른 차별의 놓여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여성 장애인의 성범죄 사각지대를 계속 만들게 된다.

2) 신고자중 발생율이 가장 높고 성범죄에 취약한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대책

장애인 성폭력 범죄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지적장애여성들을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역 사회와 관계 맺는 훈련을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높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는 조금 다른, 각각의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어릴 때부터 인식해야 하는데 그런 교육이 학교나 가정에서 전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지적장애인의 경우 통합교육이 잘 되지 않으니 비장애인과 함께 같은 공간에서 공부할 수도 없다. 취업율이 낮으니 성인이 된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해 몸으로 느끼고 편견을 깰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그러다보니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무능하고 약한 존재, 귀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개별 맞춤형 교육컨텐츠(성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가 구축되어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 제공하는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아동의 경우 연령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지만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나 시설 관계자를 위한 프로그램뿐이다. 장애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3. 원인 및 대책 찾기 THREE!

— 중복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관된 지적장애인 미투사례 분석 —

대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밝혀진 지적장애인 미투사례가 현재 중복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이관되어 추가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위 사건은 SBS 공금한 이야기 Y에서 ‘두 얼굴의 이장님’이라는 타이틀로 3월 30일 방영되었다.

발제자는 위 사건의 개요와 현재 상황, 방송보도 내용을 분석하고 그 안에서 왜 장애인 성폭행의 피해자 회복지원이 어려웠는지 원인을 찾고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다.

1) 원인찾기

(1) 사건개요

성폭행 및 강제노동, 경제적 착취 사건

— (학대 상황) 지적장애 3급 여 30대 김모씨가 초등학교 5학년부터 2017년 11월 까지 보호자 역할을 자처한 가해자로 의심된 오모씨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하였으며, 피해자 김미경(가명)씨를 1993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보육시설에 입소를 시켰으며 김모씨가 성인이 되어 2000년 퇴소하자 가해자 본인이 운영하던 식당 또는 숙식이 가능한 지역 식당에서 일을 시키고 급여를 편취하여, 가해자 본인 명의로 전세를 계약 체결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수급비 통장 및 피해자의 급여를 관리하는 등 김모씨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급여를 횡령한 사실이 있다. 또한 피해자 김모씨를 본인 동의 없이 2002년 결혼을 보내고 임신 후 혼인관계를 지속하지 못하고 돌아오자 피해자를 협박해 낙태 시켰으며, 2004년경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동거하며 임신 후 아이를 출산하자 동거 중인 남성과 이별하게 한 후 아이를 강제로 입양을 보냄.

성폭행 가해자로 의심된 사람은 20년 넘게 이장과 사회단체장을 맡으며 지역 유지로 알려진 인물이다. 초등학교 5학년때부터 피해자를 간헐적으로 성폭행하기 시작했으며 김 씨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부터는 성폭행 빈도는 더욱 잦아졌다.

가해자의 부인도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며 김씨를 흥기로 위협까지 했다.

(2) 현재상황으로 원인찾기

2004년 단역배우 알바생을 단역반장 등이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경찰 수사 중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해 고소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이때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리되었다면 끔찍한 사태가 발생되지 않았겠지만 분리되지 않은 탓에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였고 얼마 후 고통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

이렇게 비장애인의 경우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정말 중요한데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에는 분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매우 심각한 위협이 예상된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장애인일 경우 쉼터 등의 안전한 공간으로의 분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2012년 대전의 활동가가 피해자를 돕는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양심을 품고 협박을 받았으며 이에 수사체에 걸쳐 경찰에 신변보호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참히 흉기로 살해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장애인 성폭행 같은 경우엔 분리조치가 특히 중요하다. 현재 충청도내 장애인 분리조치를 위한 쉼터가 아직 설치 되지 않았다. 그리고 턱없이 부족하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쉼터등의 안전한 공간에 분리조치가 되지 않으면 다른 2차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사건의 진실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번 김미경(가명)씨는 진술하기 위하여 과거 성폭력사건들을 기억할 때마다 몸서리치거나 갑자기 쓰러지기 까지 하였다. 그렇게 어렵게 밝힌 본인의 ‘미투’가 신고 된 지 3달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수사 중이며 가해자는 수사한 번 받아본 적이 없다.

오히려 가해자는 주민들에게 상황을 왜곡시키고 있으며 일부 성폭행을 시인했음에도 구속되지 않고 버젓이 동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충청지방경찰청은 일단 이 사건 경우 대전지방경찰청에서 받아 온 건이라 자료를 파악하느라 늦어졌으며 피해자가 지적장애인이고 사건 자체가 20년 동안 일어난 일이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피의자인 전 이장이 성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식적으로 서너달 가까운 시간까지 필요했느냐는 의문이다.

현재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한 상황이다.

(3) 위 사건의 방송보도를 통한 원인 찾기



장애인 성폭력 사건 보도에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시각 이미지는 사용하지 않는다. 선정적인 이미지로 장애 여성의 피해를 더욱 과장되게 표현 하는 것은 도리어 장애인 성폭력의 일상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형화된 내용으로 '피해자다움'을 고착화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들은 옷을 벗으라고 하면 벗어야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묘사하는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피해자는 이러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게 된다. 이 경우 피해 당시 피해자가 했던 노력이나 저항은 쉽게 무시된다.



성폭력 피해자를 선정적인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마치 피해자가 성폭력을 유발하였다는 왜곡된 통념을 강화하게 한다. 기사의 내용과는 상관없이 성폭력 상황을 보여주는 것도 문제지만 그 때 등장하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의 모습은 마치 그 여성이 짧은 치마를 입어서 피해를 입게 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술한잔 먹었다는 것을 통해 실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려는 것 - 성폭력의 본질에 대한 왜곡된 통념을 심어주려는 계산된 발언



피해자가 팔짱을 끼면서 꼬셨다는 내용이며 결국 가해자가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언어들인 그대로 방송에 쓰임으로써 가해자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매우 위험하다.
- 가해자의 언어를 그대로 인용함.

2) 대책

위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첫째, 가해자가 구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장애인 성폭력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가해자로 의심되는 경우 구속수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야 한다. 현재 피해자가 3개월이상 지속적인 협박과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현실이 답답한 상황이다 .

둘째, 장애인 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분리조치를 실시해야 하며 편안한 상황에서 상담 및 심리지원, 의료지원, 법률지원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쉼터에서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충북도내 장애인 학대피해자 쉼터가 없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그리고 장애인은 ‘미투 운동’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미투가 지속적으로 방송되더라도 가해자가 가해를 할 수 있게 한 사회에 경종을 울리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외침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비장애인 여성 중 명망있는 여배우, 여공무원, 그리고 여검사가 미투를 해도 오히려 불순한 의도로 매도하는 상황에서 장애여성이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말했을 때 과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미투운동’을 다루는 언론과 학자 등은 장애인 성폭력의 가해자가 특수한 성향을 지닌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평범한 일상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

넷째, 가해자를 일반적이지 않은 부류로 표현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장애여성의 성폭력 발생율이 결코 낮아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장애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나가는 글

본문에서 200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보도되었던 충북도내 장애인 성폭력기사의 제목분석과 신고자 분석,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미투사례 분석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찾고자 하였다.

발제자는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발견한 나름대로의 장애인 성폭력 예방·재발 방지를 위한 대안을 다섯가지로 요약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언론의 올바른 보도가 필요하다.

자극적이고 가해자의 언어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사건에 대한 보도를 해야 하며 이미 한국기자협회에서 발표한 ‘인권언론보도준칙’과 ‘성폭력 사건 보도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받은 기자들만이 장애인관련 기사를 다루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장애와 젠더, 그리고 인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둘째, 사회 전반에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들을 준비를 해야 한다.

미투 운동이 이슈의 중심에 서있지만, 장애여성의 미투 운동을 요구하기 이전에 장애여성의 말을 사회가 어떻게 들을 것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론적인 대답이지만 그 이상의 해답이 없는 것도 사실이다.

혹여나 우리가 일상에서 ‘저렇게 짧은 치마를 입었으니 당해도 짜다’, ‘장애인이니 괜찮겠지’, ‘내 자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보호만이 능사다’, ‘저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무슨 장애인이야’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셋째, 여성장애인 성·가정폭력 지원 상담소와 가해자로부터 분리할 수 있는 쉼터 등의 보호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가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인력 충원과 예산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진행하는 사건중 분리할 공간이 없어 다른 지역에 보호되어 있는 피해자가 많아 제대로 된 조사 및 피해자 회복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시급히 원활한 피해자 회복지원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충청북도내에 쉼터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넷째, 전 국민 대상 장애인 성폭력 예방·근절 교육이 요구된다.

장애인 성폭력의 가해자는 ‘몹쓸짓’, ‘인면수심’, ‘짐승같은’ 이라고 축소되어서는 안된다. 누구나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근본해결책은 나올 수가 없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특수한 부류가 범하는 행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 지역사회 이장 및 마을 대표, 사회복지관련 공무원, 수사 및 사법부 관계자,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모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 개선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 신고를 모든 직군에서 의무화하여 범

죄 피해에 취약한 장애인을 보호하는 역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성폭력특례법 제6조 항거불능 조문을 삭제 또는 가해자 처벌이 용이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여성 장애인 성폭력 가해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무고죄를 이용한 가해자의 협박, 손해배상 등에 대한 민·형사상 무료법률 지원을 강화해야 하며 수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과정 전반의 피해자 접촉은 원칙적으로 여성경찰관이 전담하고 피해자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악성 댓글에 대한 엄벌과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보복의 가중 처벌,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체계적 신변보호를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으며 민주주의는 평등원칙을 기반으로 한다.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인장애인과라고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노인 분들 중심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장애계의 원성이 자자하다.

장애인복지과가 별도로 분리되지 않은 것을 보지만 해도 얼마나 충청북도가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뒤떨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도내 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장애인복지과가 별도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장애인 성폭력 담당부서를 두어 보다 전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장애여성 ‘미투 운동’은 되묻는다. 오늘날 장애여성이 사회의 모든 곳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는지? 그리고 장애여성이 성적대상으로 희롱되거나 성폭력의 대상이 되었는데 사회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의 성평등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인지? 오히려 장애인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판단될 것이다.

일상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존중받지 못한다면 성평등 민주주의는 투표용지에만 머물러 있을 뿐 아직 우리 삶으로 들어 온 것이 아니다. 지금 우리사회는 장애인들의 성평등 민주주의가 아프게 시작되는 시점인지 모른다. 시작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아프게 시작되어야 한다.

※ 부록 - 기사내용 첨부(연도별로)

사례 1) 목사가 여성장애인 상습성폭행 충격옥천에 비인가 복지시설 3명 3년여동안 성폭행

옥천의 한교회 목사가 미인가 장애인 시설을 운영하면서 지체장애 여성 3명을 상습 성폭행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옥천경찰서는 13일 미인가 시설에 수용된 여성원생들을 상습 성폭행한 교회 목사 조모씨(51·지체장애 3급)에 대해 성폭력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께 자신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안에서 지체장애 여성 신모씨(42)를 성폭행 하는 등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여성장애인 3명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지체장애 3급인 조씨는 지난 2000년 자신의 교회안에 미인가 복지시설을 차려 놓고 지체장애인 13명(남자 9명, 여성 4명)을 모집, 교인들의 후원금으로 시설을 운영해 왔다.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가 원생들을 주의시키는 쪽지가 시설내 휴지통에서 발견되면서 범죄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 여성인 신씨 등 2명은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 뒤 현재 충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의 보호를 받고 있다. - 미투 지체장애인

사례 2) 장애인 성폭행한 6명 구속

충북 진천경찰서는 29일 정신지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정모씨(55)등 6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김모씨(56)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가족이 모두 정신지체 장애인 점을 이용해 지난 2002년부터 정신지체 장애인인 김모씨(27.여)를 인근 야산 등지에서 용돈을 주는 조건으로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사례 3) 공무원이 지적장애인 ‘상품권’ 유인 후성폭행 ‘충격’

10대 소녀에게 음란전화를 하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공무원이 지적장애 소녀들을 성폭행하는 등 20여건의 추가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충북 괴산경찰서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한 서울 모구청 공무원 김 모(48)씨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인결과 성폭행과 성추행 등 모두 25건의 범행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1년 말에서 2002년 초 설문조사를 빙자해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연결된 지적장애 2급인 당시 A(14)양을 상품권을 주겠다고 불러내 성폭행하는 등 지적장애 소녀 2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또 같은수법으로 10대 소녀 3명을 성폭행한 것을비롯해 모두 20여명에게 음란전화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2일 김 씨를 청주지검에 송치했다.

사례 4) 지적장애 친구 딸 상습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영장

충북 옥천경찰서는 23일 친구의 지적장애인 장애인 딸을 수개월 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김모씨(47)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5년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 A씨의 딸(20)이 의사 표현능력이 떨어지는 지적장애인이란 걸 알고 혼자 집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 성폭행 해 온 혐의다.

김씨는 지난 21일 오후 3시계도 A양을 성폭행 하려다 마침 귀가한 동생에 의해 발각돼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A양을 성폭행 한 뒤 가족들에게 말하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는가 하면 친구의 딸인데도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 집안 동태를 살필 정도로 계획적인 준비까지 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사례 5) 장애인 상습성폭행 50대 영장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9일 장애인 여성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정모씨(53)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6월께 이모씨(20)의 집을 찾아가 반항하는 이씨의 손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하는 등 신체장애를 가진 이씨를 7년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다.

- 본인이 미투, 신체장애

사례 6) 장애인 모녀 `상습' 성폭행, 50대 男 구속

가족 모두 장애 겪고 있어 피해사실 인식하지 못해...

장애인 모녀를 6개월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인면수심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6월경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보은군 A(47·여·지체장애 3급)씨의 집에서 A씨와 A씨의 딸(18·지적장애 3급)을 20여차례 걸쳐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A씨의 남편(50·지적장애 3급)과 노동일을 하며 알게 된 뒤 자주 A씨의 집을 왕래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의 남편도 함께 있는 집 안에서 A씨 남편에게 다른방에 들어가 있을 것을 명령한 뒤 태연히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웨이>와 전화통화에서 "가족 모두가 장애가 있어 피해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방치돼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아직까지 장씨가 범행에 대해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지난 1월쯤, 장씨를 수상히 여긴 A씨의 친척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라고 전했다.

사례 7) 지체장애인 성폭행 40대 징역 3년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3일 장애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K씨(49)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한 것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중임에도 자중하고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11시께 충북 청주의 한 가게에서 술과 감을 산 뒤 집으로 귀가하던 중 정신지체 장애인 A씨(29·여)가 감에 관심을 보이자 같이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사례 8) 이웃 장애인 주부 상습성폭행 3명 검거

충북지방경찰청은 21일 이웃에 사는 장애여성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A(48.농업)씨 등 3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중순 충북 청원군 한 창고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B(35.여.지적장애3급)씨를 성폭행하는 등 3~10월 3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주민 C(50)씨와 D(62)씨도 각각 2차례, 1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적장애 2급인 남편과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연락을 쉽게 하기 위해 B씨에게 공짜 휴대전화까지 얻어줬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B씨가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본 B씨의 가족이 B씨를 상대로 구입 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범행이 탄로났으며 서로 범행 사실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 9) '붕어빵 주겠다' 지적장애인 상습 성폭행 40대 영장

충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계는 1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10대 지적 장애인에게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A씨(45)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월3일 오후 3시께 인터넷 게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B양(13)에게 "붕어빵을 사주겠다"고 접근해 B양을 성폭행하는 등 두 달여동안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앞서 B양의 아버지로부터 이 같은 신고를 받고 A씨를 검거했다.

사례 10) 잇단 장애아동 대상 성폭력..근본대책은?

충청지역 할머니와 함께 사는 장애아동이 피해자였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송모(44)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25일 신청했다. 송씨는 장애가 있는 11살짜리 초등학교 여학생을 수개월간 성폭행한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를 받고 있다.

송씨가 등교하는 피해아동에게 수시로 용돈을 주고 먹을 것을 사주고 다정하게 다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이웃주민이 신고하여 밝혀지게 되었다.

사례 11) 수년동안 지적장애인 성폭행 2명 구속

수 년동안 한동네에 살던 지적장애인을 여관 등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2009년 4월21일께 모 여관으로 지적장애 2급인 C(31·여)씨를 끌고 가 폭행하고 양손을 결박한 뒤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수십여차례에 걸쳐 C씨를 성폭행한 혐의다.

B씨는 지난해 5월께 C씨를 동네에 있는 한 폐가로 유인해 성폭행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을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들은 C씨가 지적장애를 앓고 있으면서 90세가 넘은 할머니와 혼자 산다는 점을 이용해 여관이나 폐가, 비닐하우스, 심지어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 등으로 유인해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사례 12) 충북에서도 장애인 성폭행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A특수학교에서 남학생 B씨가 여학생 C양을 성폭행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가해 학생인 B씨는 학교를 자퇴했으며 현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여학생 C양은 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A학교는 사건이 발생한 후 자체적으로 이를 해결하려다 사건이 확대되자 뒤늦게 교육청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올 1학기에야 이 같은 내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현재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례 13) 지적장애여성 수년간 성폭행

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염모(67)씨와 이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염씨 등은 2006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옥천군 자신의 집과 폐가, 축사 등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30대 지적장애 여성을 때리고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같은 내용의 이웃주민의 신고로 A씨를 윈스톱 지원센터에 인계해 조사한 뒤 B씨를 검거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사례 14) '사람의 탈을 쓰고 ...' 패륜 범죄 잇따라지적장애아 친딸에 몹쓸짓 삼형제 구속...조카 상습 성폭행한 50대 삼촌도 철창행

지적장애를 가진 자신의 친딸과 조카를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인면수심의 삼형제가 경찰에 붙잡혔다. 또 시각장애 부모를 둔 지적장애 조카를 성폭행한 삼촌도 구속되는 등 충청권에서 잇따른 패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충북 괴산경찰서는 15일 지적장애가 있는 10대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친아버지 A(54)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괴산군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B(15·여·지적장애 1급)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다.

또 큰아버지 C(55)씨와 작은아버지 D(50)씨 역시 비슷한 기간 방학을 이용해 자신의 집으로 놀러온 조카 B양에게 용돈을 주는 등 환심을 사면서 성폭행하거나 수차례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방학이 끝나고 도내 한 장애아동시설로 돌아온 B양은 시설종사자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례 15) 진천경찰서,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 CCTV 논란

진천경찰서가 장애여성 성폭력 예방을 위해 가정집에 CCTV(폐회로텔레비전)를 설치해 논란이 예상된다.

진천경찰서는 '4대 사회악(성·학교·가정폭력, 불량식품) 척결'의 하나로 재가 장애여성 성범죄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진천경찰서는 진천군에 거주하는 1, 2급 중증장애여성 83가구를 직접 방문해 보호자 입회하에 CCTV 설치 여부를 직접 물었으며, 그중 거주환경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해 다섯 가구에 CCTV를 설치했다. 이번에 설치된 CCTV는 군내의 한 CCTV 업체의 지원을 받아 무료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경찰서 생활안전과 박정용 경장은 2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CCTV가 집 바깥을 향하면 불법이나 내부를 향해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며 "다섯 가구 모두 아파트가 아닌 주택거주자로 거실, 방 등 집안 내부가 아니라 출입구, 마당 안쪽을 촬영하게끔 설치했다"라고 설명했다.

박 경장은 "녹화저장장치가 당사자 집에 있으므로 감시가 아니다"라며 "중대범죄 발생 시 수사용으로 자료 요구하면 확인할 수 있겠으나 다른 경우에 경찰이 확인할 방법은 없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진천경찰서의 가정집 CCTV 설치에 대해 장애여성공감 배복주 대표는 범죄 예방 방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배 대표는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이 우선돼야 하는데 현재는 범죄에 취약한 개인의 노력으로 방어해야 하는 방식"이라며 "이번 대책도 장애여성을 잠정적 피해자로 보는 사회적 시각을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배 대표는 "우리 사회 성문화 변화, 가해 우려 집단에 대한 교육 등이 병행되어야지, 가해자 겁주기 식의 피해자 보호 정책은 근시안적"이라며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례 16) '점심 먹자' 부른 뒤 장애 여성 성폭행한 60대 조선족 검거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19일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으로 조선족 박모(62)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박씨는 18일 청주시 자신의 집에서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인 2급인 A(25·여)에게 '점심을 먹자'고 피어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지적장애인 A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변을 수색해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지적장애인 미투

사례 17) 女장애인 성폭행한 장애인단체 간부, 충북 경찰, 70대男 조사

충북지방경찰청은 14일 장애인 단체 간부가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73)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청각과 언어 장애인인 B(40·여)씨를 불러내 한 차례 성폭행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은 B씨 가족들이 제출했다.

사례 18) “서로가 서로를 만지고 성폭행” 장애인시설에서 무슨 일이…

인권위, 마리스타의집 거주인 분산수용 권고에 장애인단체 “해결책 아니다”

마리스타의집은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로 2004년에 설립됐다. 시설에는 약 40명의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모두 남성이다. 시설 거주인들은 무연고자가 많았으며 대부분 보육원이나 아동센터 등을 거쳐 시설에 입소했다.

서울시와 마포구청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5차례에 걸쳐 인권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이미 첫 조사를 실시한 2012년, 마리스타의집에서 성추행이 있었음을 인지했다.

마포구청 측은 당시 조사 결과 “수십 명의 지적장애 남자로 구성된 거주시설의 특성상 거주자 간의 성추행 부분이 완벽히 해소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들에게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을 마리스타의집에 요구했다.

그이후 서울시는 마리스타의집을 대상으로 심층조사에 들어갔다. 이때 확인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은 다양했다. 거주 장애인 박 아무개 씨는 같은 방에서 생활하는 송 아무개 씨의 성기를 수년간 수차례 만졌다. 피해자인 송 씨는 시설 종사자에게 알렸으나 시설 차원의 대처는 없었다. 또한 장애인들끼리 서로의 성기를 만지고 성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이외에도 자는 사람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거나 심지어 성폭행을 하기도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추행을 하다 보니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등 특정 가해자를 지목하기도 어려웠다. 행정기관 측은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해당 보고를 받은 인권위는 결국 올해 3월 초 마리스타의집에 시설을 폐쇄하거나 거주인 전원을 다른 시설로 분산 수용할 것을 권고했다.

사례 19) '어쩌다 이 지경까지' 교육공무원, 지적장애 10대 친딸 성추행

충북지방경찰청은 지적 장애가 있는 자신의 10대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위반)로 충북 모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B(14)양을 강제로 상습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지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해 상담 전문가가 정기적인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로부터 이런 내용을 통보받은 충북도교육청은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사례 20) 충북장애여성 성폭력 피해자 중 절반이 '미성년자'

도내 여성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광희 충북도의원(더민주·청주5)이 충북도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성폭력 상담 건수가 8155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장애인들이 받은 상담건수는 1186건에 달한다.

충북도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성폭력피해자는 총 97명으로 전체 성폭력피해자 841명 중 10%를 넘게 차지했다. 상담건수도 전체 8155건 중 1186건으로 집계됐다. 97명의 장애인 피해자들의 사례를 보면 '강간 및 유사강간' 피해자가 40명, '성추행'이 53명이다. 여성장애인 피해자가 95명이고 남성장애인 피해자는 2명이었다. 더욱 충격인 것은 95명의 여성장애인 피해자중 43명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것. 7~13세 미만 피해아동도 13명으로 집계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

사례 21) 청주시 장애인 선수 성폭행 검찰 기소예정...피해자 고통 호소

청주시에 거주하는 한 장애인이 수년동안 알고 지내던 타 시도 장애인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해 심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가해자 B씨와 피해자 A씨는 10여년간 서로 아는 사이로 지내오던 중 A씨가 경계심이 풀어진 틈을 타 벌어진 일이라며 심적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참담함을 호소했다.

우리사회의 성폭행이 대부분 면식범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성폭행 사건도 같은 부류의 사건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번 성폭행 사건이후 피해자 A씨는 3개월여 동안 심적인 고통을 겪으며 선수생활을 이어갔지만 성적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19일 기자와 만나 자리에서 A씨에 따르면 지난해 동계훈련 차 청주에 온 강원도 소속 선수 B씨가 A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 미투사례, **지체장애인**

사례 22) 지적장애 여신도 상습추행한 승려 ‘집행유예’

법당을 운영하며 지적장애 여신도를 상습 추행한 60대 승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65)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자신이 운영하는 충북 청주의 한 법당에서 신도 B씨(여·지적장애 3급)를 추행하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B씨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례 23)이웃집 지적장애 여성 상습 성폭행 80대남 법정구속…징역4년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80대 노인이 법정 구속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81)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모든 정황과 증거를 종합하면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가족이 교회를 가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를 눈치 챈 가족의 신고로 드러났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

발제 3

장애, 인권 그리고 ‘me too’

천인수

대전광역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장애, 인권 그리고 'me too'

천인수 (대전광역시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미투?
me to?
me two?
me too

2018 대한민국은 현재 살아 있지도 않은 형체도 없는 미투(me too, with you)가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 어떤 권위자나 사상가(진보주의자건 보수주의자건 간에)도 그 어떤 집단(군대, 언론, 정치, 권력기관)도 아울러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어떤 것도 미투 한 방이면 바로 **비자발적 고립**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 버린다.

역대 그 어느 누구도 만들지 못했던 진정어린(?) 사회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의도하였건 무지하여 그랬건 간에 성(남녀를 구분하지 않는)에 대한 폭력이 사회 곳곳에 난무한 무법천지를 정리하며 관계가 공정한 사회로 일단은 재편되어가고 있다.

장애인-자신의 삶에서 실제 주인공적이 거의 없던 우리는 이러한 사회변혁운동에 대단히 혼란스러워하며 주의 깊게 시도된 변화를 지켜보고 있다.

과연 우리에게도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미투와 같은 사회가 저돌적으로 지지하는인권개혁운동은 변화의 시도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역사의 순간에 잠시 우리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해보도록 하자.

1) 장애

2018년 현재 우리나라에는 250만명¹⁾의 등록장애인이 있다.

한국사회에서 장애 또는 장애인이란 무엇인가?

장애인 복지법 제2조 :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N포털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 능력이 원활하지 못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 [비슷한 말] 장애자.

우리를 표현하는 용어조차도 아직 혼란스럽다. 여하튼 우리의 법률과 검색포털에서 장애인의 사전적 정의는 장애를 제약으로 표현하고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꾸어 이야기 하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편의시설확충, 이동권 등)과 사상적 환경(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 가장 큰 해결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관계에서 오는 수많은 차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는 누군가는 그것이 너무 일상적이고 당연해서 가해자도 피해자도 차별인지 알아차리지 못 할 만큼 당연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복지환경이 보호와 재활이 아닌 자기선택과 결정의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급속히 변화되어 가는 시점에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차별에 저항하며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해야 할까?

2) 장애+다양한 차별²⁾

사회적 차별 :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생활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일

1) 2,500,251명 보건복지부 2016년 통계자료

2)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5) 보건복지포럼 인용

우리나라의 장애인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차별 실태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전 생애에 걸쳐 전반적인 사회활동영역(학교생활, 직장생활, 결혼생활, 지역사회생활)에서 장애로 인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정확히 이야기 하면 차별받지 않는 항목을 찾기가 어렵다는 표현이 맞다.

〈표1〉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학교생활)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전체
	외부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정신적장애	
교사로부터	12.7	15.3	31.0	18.7
또래 학생으로부터	39.7	33.7	62.7	47.1
학부모로부터	9.4	10.3	22.5	13.7

가장 많은 사회적 차별의 경우인 학교생활을 살펴보면 교사로부터, 또래 학생으로부터, 학부모로부터의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또래 학생으로부터가 47.1%로 가장 많고, 다음이 교사로부터 18.7%, 학부모로부터 13.7%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³⁾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 경험이 62.7%로 매우 많았다.

〈표2〉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결혼, 취업, 직장생활)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전체
	외부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정신적장애	
결혼	14.5	15.3	50.0	16.4
취업	33.6	41.0	56.5	35.8
소득	22.1	23.9	46.8	23.9
동료관계	18.0	14.2	46.9	20.0
승진	11.7	8.4	33.4	13.3

3)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이어서 장애인의 결혼과 취업에서의 차별 경험을 보면, 결혼에서 16.4%, 취업에서 35.8%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결혼과 취업 모두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50% 이상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장애인의 직장생활에서의 차별 경험을 소득, 동료관계, 그리고 승진으로 구분하여 보면 장애인은 소득에서 23.9%, 동료관계에서 20.0%, 그리고 승진에서 13.3%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역시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소득과 동료관계에서의 차별 경험이 약 46.8%, 46.9% 수준으로 가장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3〉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운전면허취득, 보험제도계약, 지역사회생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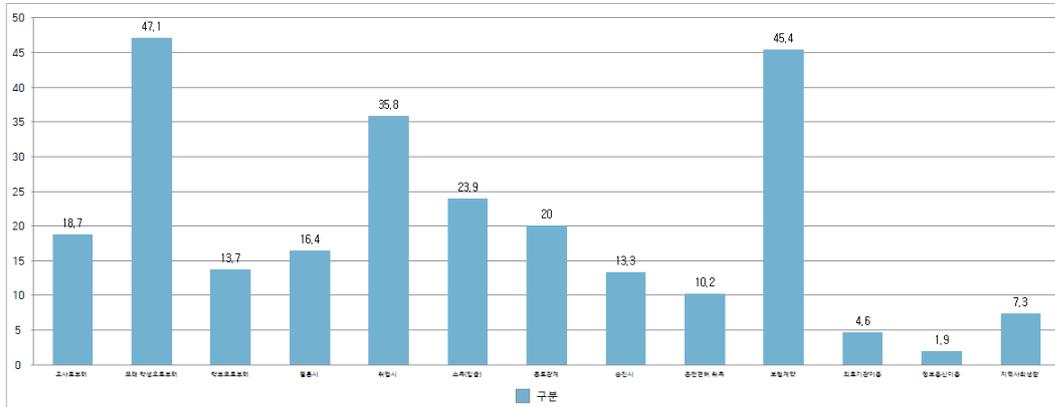
(단위: %)

구분	장애유형			전체
	외부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	정신적장애	
운전면허취득	9.6	6.0	27.3	10.2
보험제도 계약	42.0	61.5	65.8	45.4
의료기관 이용	4.0	3.6	9.2	4.6
정보통신 이용	2.0	1.0	1.8	1.9
지역사회생활	6.1	4.0	17.1	7.3

이외에도 장애인은 운전면허 취득에서 10.2%, 보험 계약에서 45.4%, 의료기관 이용에서 4.6%, 정보통신이용에서 1.9%, 지역사회에서 7.3%가 차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중 보험제도 계약에서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정신적 장애인이 운전면허 취득(27.3%), 보험제도 계약(65.8%), 의료기관 이용(9.2%), 지역사회생활(17.1%)에서 차별의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정보통신 이용에서만 외부신체기능장애(2.0%)의 차별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을 전체적인 영역별로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학교생활에서 또래 학생으로부터의 차별이 47.1%로 가장 많고 다음이 보험제도 계약(45.4%), 초등학교 입학·전학(38.8%), 취업(35.8%)의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통신 이용에서의 차별이 1.9%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 경험(영역별)



<표4> 장애로 인한 문제 발생시 주 상담자

(단위: %)

구분	응답율
가족	69.4
없음	14.9
친척, 친구, 이웃	8.8
사회복지관련 기관직원	3.0

그리고 차별이나 인권침해 등 장애로 인한 문제상황 발생시 주 상담자는 ‘가족’이 69.4%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없음 14.9%’, ‘친척, 친구, 이웃’이 8.8%, 사회복지관련 기관 직원이 3.0%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3) 장애+거주시설 그리고 <자립생활>

○ 생활시설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 복귀를 준비하면서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

○ 거주시설

거주공간을 활용해 일반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정 기간 거주, 요양,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2016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위치한 거주시설은 1,505개소이며 거주시설 이용자중 75%~80%는 발달장애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장애인 거주시설은 2005년 265개소에서 2016년 1,505개소로 약 5.7배나 증가했다. 이는 지난 10년동안 탈시설-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착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부재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김동기 2018년 자립생활컨퍼런스)

- 집단성 - 규정, 기준, 규칙 등 공동생활을 위한 현실
- 격리성 - 물리적 격리, 사회적 격리
- 권력불평등성 - 돌봄 제공자와 돌봄 의존자
- 비선택성 - 입소의 자발성, 다양한 거주시설의 선택

일반적으로 거주시설은 집단성, 격리성, 권력의 불균형성, 비선택성(유동철 외, 2013)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경우 의존적이며 무기력하고 지역사회 장애인이 통계적으로 우울, 자존감, 사회참여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김동기 외, 2008)

시설 거주인 거주현황 및 자립생활 욕구 실태조사(조한진 외 2012)에 의하면, 조사에 응답한 거주시설장애인의 약 58%가 탈 시설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 시설을 희망하지 않는 장애인은 약 34%, '잘 모르겠다'는 약 8%로 나타났다.

이러한 탈 시설은 국제적인 추세이며 실제 유럽의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모든 시설을 폐지했다.(스웨덴은 1997년 시설폐지법 제정)

이러한 탈시설에 대한 국제적 협약의 근거를 찾아보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3조, 제19조(자립생활과 지역사회통합)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격리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선택권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협약 당사국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법은 탈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나 조항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 자립생활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자신’이다. 전문가집단의 일방적 처방이나 지시가 아닌 장애인 스스로의 힘으로 비장애인과 동일한 생활양식을 가지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과연 우리는 언제까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전원생활을 영위하며 그들의 뜻대로 살아가야만 할까?

같은 하늘아래에서 관습적 차별은 여전히 곁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다. 눈감은 국가의 방치와 기득권의 무관심으로 대한민국 장애인자립생활의 꿈은 꿈으로만 남아있다.

4) 결론은?

이제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은 재활에서 자립생활로 사회구성원 20명 중의 한 명은 장애인이고 6.5가구 중에 한 가구는 장애인 가구다.

전체 장애인의 90%가 후천적 장애인임을 생각해 볼 때 이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임을 직시하고 심각하게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럼 과연 무엇을 통해 어떻게 바뀌갈 것인가?

① 학생이나 공공기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회성 인권교육이나 의무적 인식개선 교육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의 인권보장방안을 전반적인 정보전달 매체에서 모색해 보자.

–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에게 장애인은 두려움이다.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장애인의 달인 4월 또는 연말연시가 되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 장애인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 보도하여 관심을 호소하거나 아예 사회가 반드시 도와줘야 하는 시혜적 대상으로 단정 짓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또한 잘 나가던 사람에게 장애인은 특별한(?) 존재다. 잘 나가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느 날 갑자기 휠체어와 마스크를 쓰고 나타난다. 대기업 회장님도 멋진 연예인도 심지어는 대통령도 그런 단다. 그리고 기자들 사이에서 플래쉬 세례를 받는다. 장애관련 상황이 굉장히 불편하게 악용되고 있는 사례다.

[그림 2] 휠체어타고 번지점프를!



잘 나가던 사람에게 휠체어는 바로 사회적 약자로 변신할 수 있는 대단한 아이템인 것이고 그것을 바라보는 아이들과 비장애인은 장애에 대해 대단히 왜곡되게 바라볼 수 밖에 없다.

만약에 뽀통령(만화영화 뽀로로)에 휠체어를 탄 주인공이 등장해 집안에서 공원에서 또는 동네 곳곳에서 아무렇지 않게 노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만약에 무한도전이나 1박2일 등 인기프로그램에 보조기를 착용하고 다른 캐릭터들과 함께 미션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무심코 보여준다면 휠체어를 타고 번지점프를 도전 한다면 대다수의 비장애인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대단한 도전이 아니고 장애가 특별함이 아니며 나와 다르지 않고 우리 주변 곳곳에 함께 살아가는 이웃임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한다면 오늘날의 이런 무지함은 없지 않을까? 아마 잘 나가는 사람이 죄를 지면 분명 지금과는 다른 코스프레(costume play)를 해낼 것이다.

정보전달 매체에서 사회 곳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는 장애이웃의 모습을 아무렇지 않게 표현한다면? 그들의 특별함은 더 이상 특별함이 아닐 수도 있다.

② 대통령도 탈 시설을 이야기 한다. 지원자, 제공자 중심의 장애인 정책이 아닌 이용자, 소비자 중심의 중장기적 탈 시설 정책을 명문화 하자!

4) 약 20년 전 수동휠체어 장애여성에게 전동휠체어를 드리고 물었다.
전동휠체어를 가지게 되니 무엇이 좋은지?

그녀의 답은 서러움과 분노를 더 했다.
그녀의 답은 이러하다.

싫어하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서 좋다!

당사자에게 결정권이 어떠한 의미이고 그것에 대한 지원체계의 중요성을 올바르게 인식하도록 하자. 2000년도 초반에 시작된 자립생활운동은 아직도 운동으로 남아있다. 국가는 장애인자립생활정책을 이제 이야기 하고 있다. 장애인 자립생활이 진보나 보수의 사상이나 이념의 문제이던가? 아니면 당사자의 절실한 생존의 문제인가?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에도 영향을 미친 1990년 미국 장애인법의 적극적 주동자인 ⁵⁾쥬디스 휴만(Judith Heumann)이 이야기하는 자립생활(자립생활은 혼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 스스로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자립생활의 정책적인 실천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수용시설에서 생활시설로, 생활시설에서 거주시설로, 거주시설에서 다음은?”

<○○시설>

시설입소 장애인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입소하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다. 250만의 등록장애인 중 1%남짓한 장애인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차별은 한쪽을 불리하게 만드는 원인을 해결해야 하지 그 한쪽을 사회와 단절시켜 안전하고 행복하게 보살핀다고 해결되진 않는다.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도 삶에 대해 고민하거나 또는 자유롭게 외출하거나 먹고 싶을 때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잠을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으며 밤 늦게 치맥 한 잔으로 하루의 고단함을 비워 낼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 시설도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부대끼고 함께 숨 쉬는 지역사회 공동체로 적극 변화해야 한

4) 2018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세미나 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상호 소장 발제문 중
5) 뉴욕시 최초의 휠체어장애인교사, 미 국무부 장애인특별보좌관

다. 거주시설의 궁극적 역할을 인권보장과 인간다운 삶의 영위하는 기본권 지원의 차원에서 고민할 때이다.

④ 차별 속의 차별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인실태조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정신적 장애인은 차별상황이 가장 취약한 대상이다. 심지어는 같은 장애인 사이에서도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익옹호기관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기관이 생겨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지원체계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정신적 장애인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이야기 하자.

하루아침에 완벽한 독립생활이 아닌 한 달에 한 가지라도 스스로 할 수 있는 변화가 과정인 상대적 자립생활⁶⁾의 반복적 지원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당사자에게는 차별과 권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며 비장애인에게도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장애이해교육 또는 기존의 인권교육내용에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침해 사항과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을 현장사례 중심으로 펼치는 적극적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겠다.

특히 장애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당사자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가 그들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장애등급제폐지,

탈시설,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위상강화 등 새정부 들어 인권에 대한 화두가 장애인복지현장에도 심상치 않은 광풍으로 불어오고 있다.

거기에 ‘미투_me too 운동’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 곳곳에서 피하지 않는 정의로움이 실현되고 있다.

미투가 시작한 정의로운 사회에 이제 장애인 차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 인권이 기반이 되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기대해 본다.

6) 각자 장애 특성에 맞도록 아주 사소한 것부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함



그들도 우리처럼,
우리도 그들처럼
미투(me too)
같은 권리로 같은 행복을 누리다.



<참고문헌>

1. 김성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2015) 보건복지포럼
2.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3. 김동기 2018년 자립생활컨퍼런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

토론

장애인성폭력 현황과 실태

이인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장애인성폭력 현황과 실태

이인원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소장)

I. 들어가는 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신체적·물리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가족으로부터 배제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그들의 인권은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장애인성폭력 피해자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전체상담의 약 80%가 성폭력상담이고, 가정폭력과 일반상담이 각 7%, 성매매 사건은 2%로 파악됐다. 장애인성폭력 피해 실태와 현황은 여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상담의뢰인과 가해자의 유형을 보더라도 피해자와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변의 관심과 지속적인 보호위한 다양한 제도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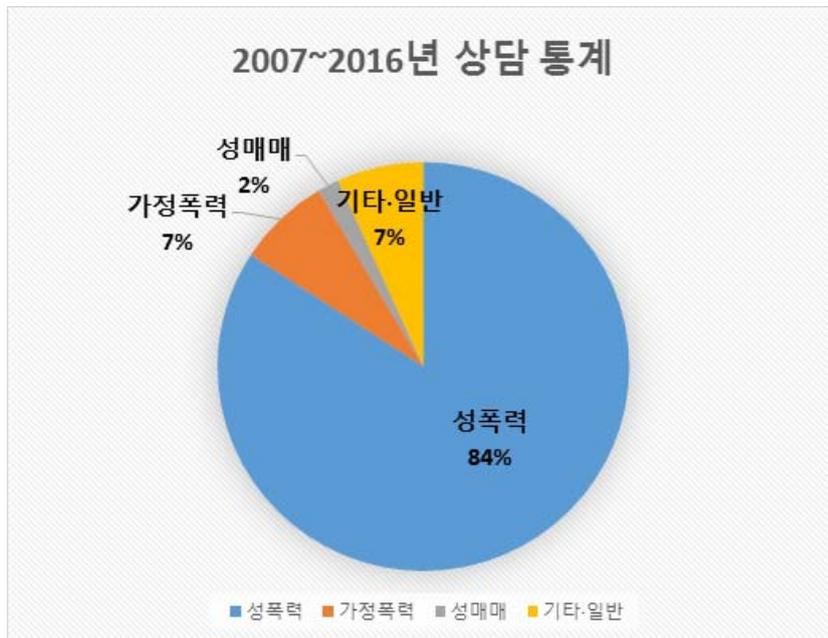
II.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 현황

〈표1〉 전체 상담(성폭·가폭·일반) 현황

(단위 : 건)

성폭력상담소	구분	계	상담현황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기타·일반
2007년	전체	-	-	-	-	-
	장애인	-	-	-	-	-
2008년	전체	374	112 (29.9)	155 (41.4)	-	107 (28.6)
	장애인	347	92 (26.5)	148 (42.7)	-	107 (30.8)
2009년	전체	665	389 (58.5)	79 (11.9)	-	197 (29.6)
	장애인	665	389 (58.5)	79 (11.9)	-	197 (2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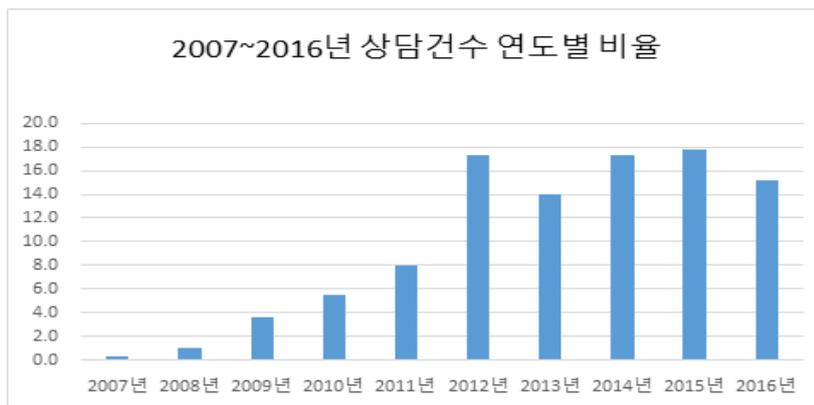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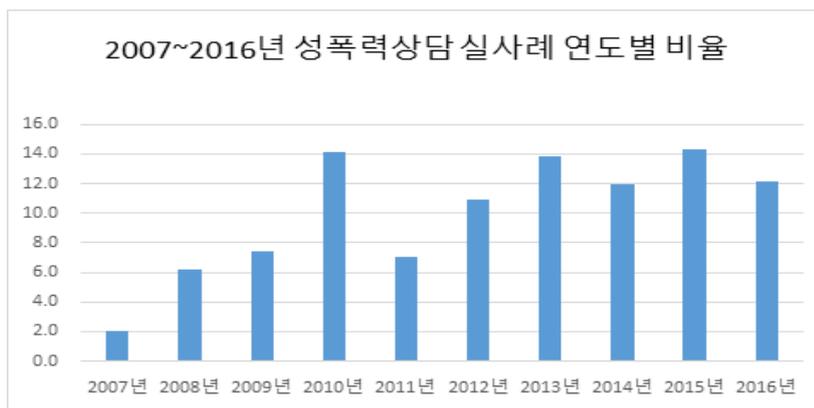
성폭력상담소	구분	계	상담현황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기타·일반
2010년	전체	832	582 (70.0)	98 (11.8)	-	152 (18.3)
	장애인	750	582 (77.6)	66 (8.8)	-	102 (13.6)
2011년	전체	941	849 (90.2)	61 (6.5)	-	31 (3.3)
	장애인	909	819 (90.1)	60 (6.6)	-	30 (3.3)
2012년	전체	2,517	1,842 (73.2)	374 (14.9)	198 (7.9)	103 (4.1)
	장애인	2,496	1,837 (73.6)	373 (14.9)	198 (7.9)	88 (3.5)
2013년	전체	1,647	1,495 (90.8)	85 (5.2)	-	67 (4.1)
	장애인	1,643	1,494 (90.9)	85 (5.2)	-	64 (3.9)
2014년	전체	1,990	1,840 (92.5)	51 (2.6)	4 (0.2)	95 (4.8)
	장애인	1,988	1,841 (92.6)	51 (2.6)	4 (0.2)	94 (4.7)
2015년	전체	2,009	1,888 (94.0)	26 (1.3)	8 (0.4)	87 (4.3)
	장애인	2,008	1,887 (94.0)	26 (1.3)	8 (0.4)	87 (4.3)
2016년	전체	1,729	1,618 (93.6)	22 (.3)	4 (0.2)	85 (4.9)
	장애인	1,729	1,618 (93.6)	22 (1.3)	4 (0.2)	85 (4.9)
총 계	전체	12,704	10,615 (83.6)	951 (7.5)	214 (1.7)	924 (7.3)
	장애인	12,535	10,559 (84.2)	910 (7.3)	214 (1.7)	854 (6.8)



〈표2〉 성폭력 상담 활동

(단위 : 명/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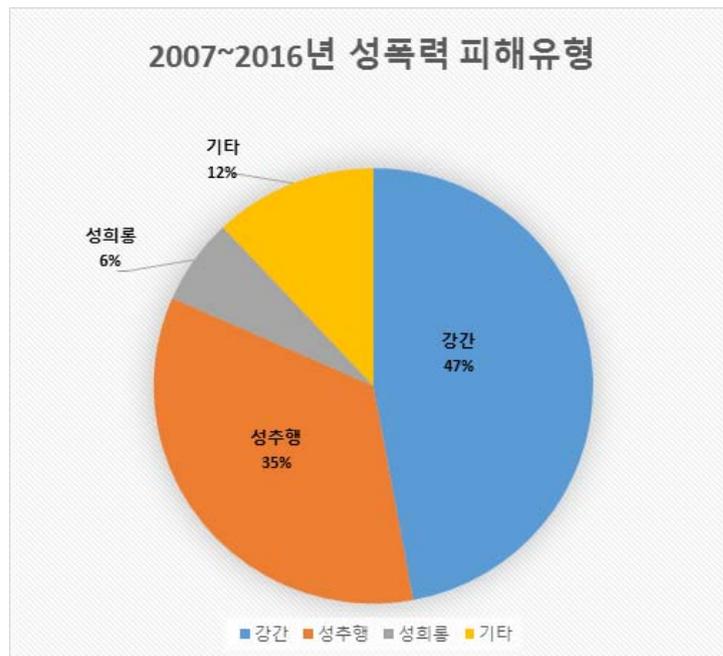
성폭력상담소	실 사례 수(명)	상담 건수(건)
2007년	13 (2.0)	28 (0.3)
2008년	40 (6.2)	112 (1.1)
2009년	48 (7.4)	389 (3.7)
2010년	92 (14.2)	582 (5.5)
2011년	46 (7.1)	849 (8.0)
2012년	71 (10.9)	1,842 (17.3)
2013년	90 (13.8)	1,496 (14.1)
2014년	78 (12.0)	1,841 (17.3)
2015년	93 (14.3)	1,888 (17.7)
2016년	79 (12.2)	1,618 (15.2)
총 계	650	10,645



〈표3〉 성폭력 피해유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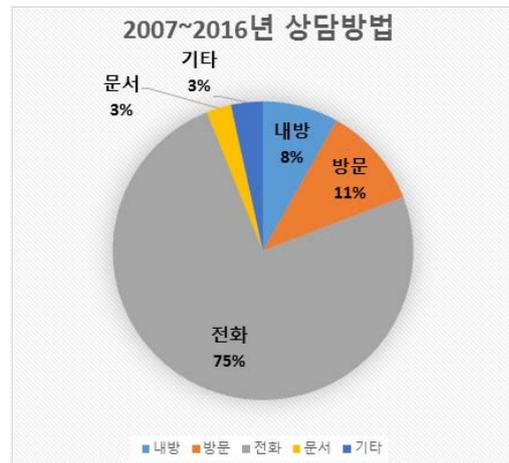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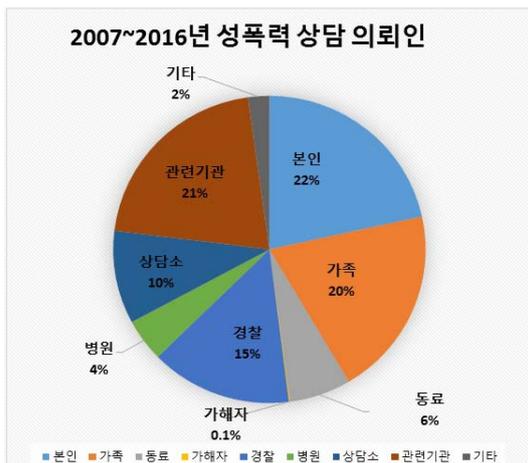
성폭력상담소	계	강간	성추행	성희롱	기타
2007년	13	1 (7.7)	8 (61.5)	1 (7.7)	3 (23.1)
2008년	40	15 (37.5)	2 (5.0)	5 (12.5)	18 (45.0)
2009년	48	12 (25.0)	23 (47.9)	4 (8.3)	9 (18.8)
2010년	92	10 (10.9)	21 (22.8)	28 (30.4)	33 (35.9)
2011년	46	24 (52.2)	18 (39.1)	2 (4.3)	2 (4.3)
2012년	77	44 (57.1)	30 (39.0)	1 (1.3)	2 (2.6)
2013년	90	53 (58.9)	36 (40.0)	1 (1.1)	-
2014년	78	53 (67.9)	21 (26.9)	-	4 (5.1)
2015년	93	54 (58.1)	32 (34.4)	-	7 (7.5)
2016년	79	43 (54.4)	35 (44.3)	-	1 (1.3)
총 계	656	309 (47.1)	226 (34.5)	42 (6.4)	79 (12.0)



〈표4〉 성폭력 상담의뢰인/상담방법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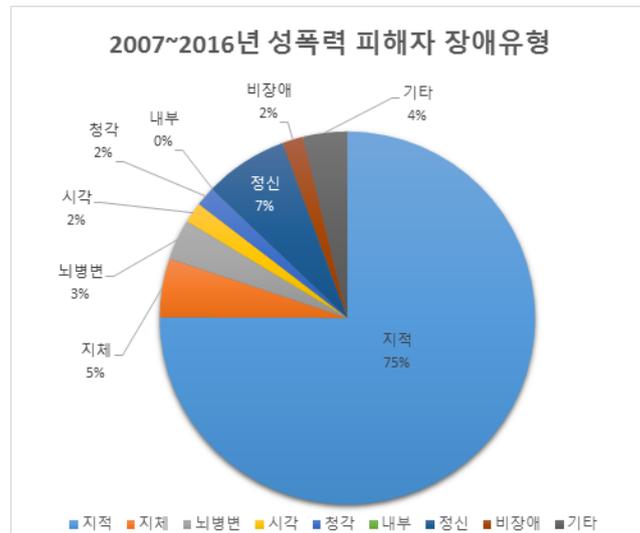
성폭력 상담소	계	상담의뢰인									계	상담방법				
		본인	가족·친인척	동료·이웃·교사	가해자·부모	경찰·검찰·법원	병원	상담소·쉼터	관련기관	기타		내방	방문	전화	문서	기타
2007년	28	21 (75.0)	-	2 (7.1)	-	-	-	-	-	5 (17.9)	28	2 (7.1)	15 (53.6)	11 (39.3)	-	-
2008년	112	11 (9.8)	47 (42.0)	50 (44.6)	-	-	-	1 (0.9)	3 (2.7)	-	112	12 (10.7)	19 (17.0)	81 (72.3)	-	-
2009년	665	246 (37.0)	176 (26.5)	54 (8.1)	-	89 (13.4)	25 (3.8)	40 (6.0)	35 (5.3)	-	665	35 (5.3)	31 (4.7)	561 (84.4)	38 (5.7)	-
2010년	582	271 (46.6)	63 (10.8)	35 (6.0)	-	46 (7.9)	13 (2.2)	17 (2.9)	137 (23.5)	-	582	71 (12.2)	73 (12.5)	419 (72.0)	10 (1.7)	9 (1.5)
2011년	849	151 (7.8)	206 (24.3)	53 (6.2)	5 (0.6)	114 (13.4)	37 (4.4)	134 (15.8)	127 (15.0)	22 (2.6)	849	117 (13.8)	72 (8.5)	599 (70.6)	3 (0.4)	58 (6.8)
2012년	1,842	189 (10.3)	420 (22.8)	116 (6.3)	1 (0.1)	346 (18.8)	66 (3.6)	250 (13.6)	244 (13.2)	210 (11.4)	1,842	133 (7.2)	145 (7.9)	1,463 (79.4)	54 (2.9)	47 (2.6)
2013년	1,495	190 (12.7)	322 (21.5)	21 (1.4)	-	282 (18.9)	54 (3.6)	116 (7.8)	510 (34.1)	-	1,495	93 (6.2)	138 (9.2)	1,157 (77.4)	43 (2.9)	64 (4.3)
2014년	1,840	318 (17.3)	320 (17.4)	73 (4.0)	-	357 (19.4)	96 (5.2)	213 (11.6)	463 (25.2)	-	1,840	280 (15.2)	192 (10.4)	1,447 (78.6)	74 (4.0)	47 (2.6)
2015년	1,888	430 (22.8)	343 (18.2)	137 (7.3)	-	211 (11.2)	120 (6.4)	197 (10.4)	450 (23.8)	-	1,888	68 (3.6)	271 (14.4)	1,398 (74.0)	46 (2.4)	105 (5.6)
2016년	1,618	530 (32.8)	282 (17.4)	156 (9.6)	-	160 (9.9)	79 (4.9)	102 (6.3)	309 (19.1)	-	1,618	97 (6.0)	266 (16.4)	1,169 (72.2)	30 (1.9)	56 (3.5)
총 계	10,919	2,357 (21.6)	2,179 (20.0)	697 (6.4)	6 (0.1)	1,605 (14.7)	490 (4.5)	1,070 (9.8)	2,278 (20.9)	237 (2.2)	10,919	908 (8.3)	1,222 (11.2)	8,305 (76.1)	298 (2.7)	386 (3.5)



〈표5〉 성폭력 피해자 장애유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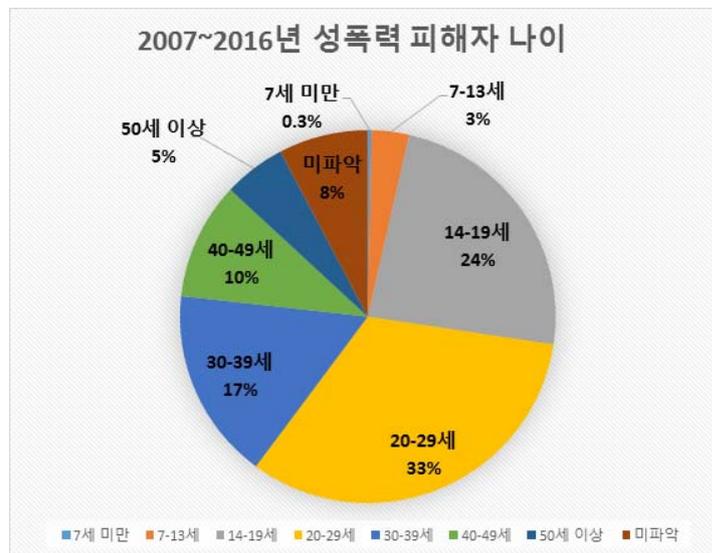
성폭력상담소	계	지적·발달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내부	정신	비장애	기타
2007년	13	3 (23.1)	3 (23.1)	4 (30.8)	-	-	-	-	-	3 (23.1)
2008년	40	21 (52.5)	1 (2.5)	9 (22.5)	2 (5.0)	-	-	-	-	7 (17.5)
2009년	48	38 (79.2)	6 (12.5)	1 (2.1)	1 (2.1)	1 (2.1)	-	1 (2.1)	-	-
2010년	92	85 (92.4)	4 (4.3)	1 (1.1)	-	-	-	2 (2.2)	-	-
2011년	46	34 (73.9)	2 (4.3)	1 (2.2)	-	-	-	-	7 (15.2)	2 (4.3)
2012년	71	54 (76.1)	3 (4.2)	1 (1.4)	2 (2.8)	3 (4.2)	-	3 (4.2)	2 (2.8)	3 (4.2)
2013년	90	64 (71.1)	4 (4.4)	1 (1.1)	3 (3.3)	2 (2.2)	-	12 (13.3)	1 (1.1)	3 (3.3)
2014년	78	54 (69.2)	4 (5.1)	1 (1.3)	3 (3.8)	3 (3.8)	-	11 (14.1)	1 (1.3)	1 (1.3)
2015년	93	70 (75.3)	2 (2.2)	2 (2.2)	1 (1.1)	2 (2.2)	-	12 (12.9)	1 (1.1)	3 (3.2)
2016년	79	64 (81.0)	4 (5.1)	2 (2.5)	-	-	-	6 (7.6)	-	3 (3.8)
총 계	650	487 (74.9)	33 (5.1)	23 (3.5)	12 (1.8)	11 (1.7)	-	47 (7.2)	25 (1.8)	12 (3.8)



〈표6〉 성폭력 피해자의 나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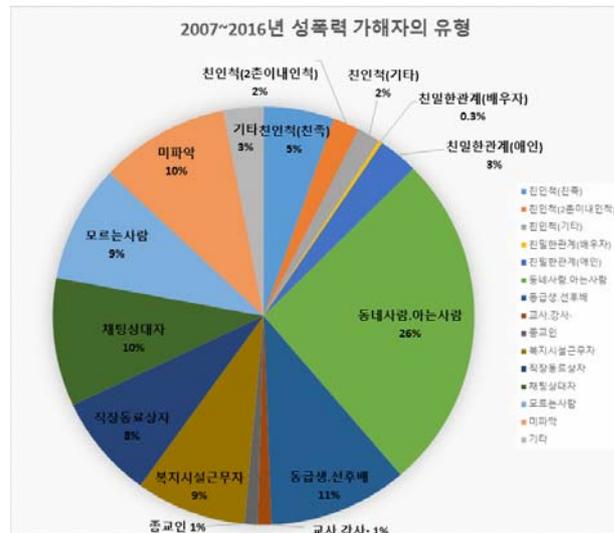
성폭력상담소	계	7세 미만	7-13세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미파악
2007년	13	-	-	2 (15.4)	3 (23.1)	6 (46.2)	2 (15.4)	-	-
2008년	40	-	4 (10.0)	18 (45.0)	-	10 (25.0)	3 (7.5)	2 (5.0)	3 (7.5)
2009년	48	-	-	11 (22.9)	10 (20.8)	9 (18.8)	15 (31.3)	1 (2.1)	2 (4.2)
2010년	92	1 (1.1)	1 (1.1)	7 (7.6)	41 (44.6)	11 (12.0)	9 (9.8)	1 (1.1)	21 (22.8)
2011년	46	1 (2.2)	-	14 (30.4)	19 (41.3)	6 (13.0)	3 (6.5)	2 (4.3)	1 (2.2)
2012년	71	-	3 (4.2)	20 (28.2)	18 (25.4)	18 (25.4)	6 (8.5)	4 (5.6)	2 (2.8)
2013년	90	-	7 (7.8)	20 (22.2)	33 (36.7)	11 (12.2)	6 (6.7)	7 (7.8)	6 (6.7)
2014년	78	-	2 (2.6)	15 (19.2)	27 (34.6)	14 (17.9)	10 (12.8)	6 (7.7)	4 (5.1)
2015년	93	-	2 (2.2)	32 (34.4)	26 (28.0)	13 (14.0)	9 (9.7)	6 (6.5)	5 (5.4)
2016년	79	-	2 (2.5)	16 (20.3)	36 (45.6)	10 (12.7)	3 (3.8)	6 (7.6)	6 (7.6)
총 계	650	2 (0.3)	21 (3.2)	155 (23.8)	213 (32.8)	108 (16.6)	66 (10.2)	35 (5.4)	50 (7.7)



〈표7〉 성폭력 가해자의 유형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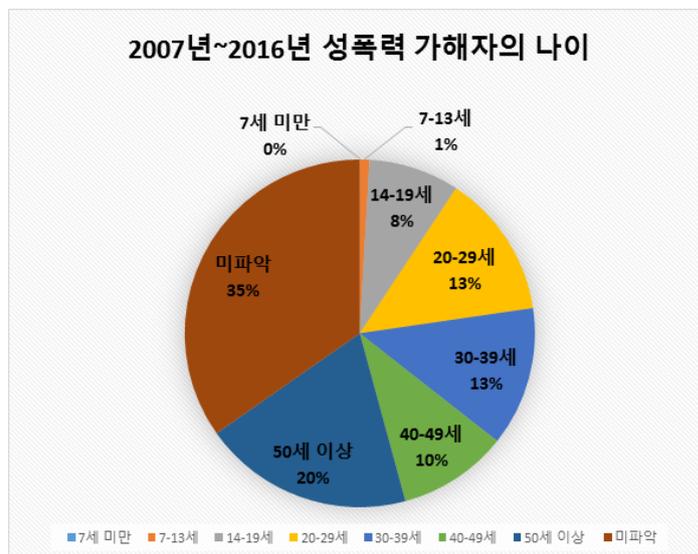
성폭력 상담소	계	친인척			친밀한 관계		동네 사람 · 아는 사람	동급생 · 선후배	교사 · 강사	종교인	복지시설 근무자	직장 동료 상사	채팅상 대자	모르는 사람	미 파 악	기타
		친족	2촌 이내 인척	기타	배우 자	애인										
2007년	13	1 (7.7)	-	-	-	-	3 (23.1)	1 (7.7)	-	-	2 (15.4)	1 (7.7)	-	3 (23.1)	1 (7.7)	1 (7.7)
2008년	40	5 (12.5)	2 (5.0)	2 (5.0)	-	2 (5.0)	10 (25.0)	5 (12.5)	1 (2.5)	-	-	2 (5.0)	1 (2.5)	5 (12.5)	5 (12.5)	-
2009년	48	1 (2.1)	4 (8.3)	1 (2.1)	-	3 (6.3)	18 (37.5)	4 (8.3)	-	-	2 (4.2)	-	4 (8.3)	6 (12.5)	5 (10.4)	-
2010년	92	-	-	-	-	4 (4.3)	29 (31.5)	7 (7.6)	3 (3.3)	-	35 (38.0)	-	2 (2.2)	1 (1.1)	2 (2.2)	9 (9.8)
2011년	46	-	4 (8.7)	-	-	1 (2.2)	6 (13.0)	5 (10.9)	-	1 (2.2)	3 (6.5)	6 (13.0)	8 (17.4)	3 (6.5)	8 (17.4)	6 (13.0)
2012년	77	7 (9.1)	1 (1.3)	-	-	2 (2.6)	15 (19.5)	4 (5.2)	1 (1.3)	1 (1.3)	2 (2.6)	15 (19.5)	11 (14.3)	5 (6.5)	12 (15.6)	1 (1.3)
2013년	90	5 (5.6)	-	2 (2.2)	1 (1.1)	2 (2.2)	18 (20.0)	16 (17.8)	-	3 (3.3)	2 (2.2)	7 (7.8)	10 (11.1)	11 (12.2)	11 (12.2)	2 (2.2)
2014년	80	7 (8.8)	2 (2.5)	-	1 (1.3)	3 (3.8)	27 (33.8)	9 (11.3)	1 (1.3)	1 (1.3)	1 (1.3)	6 (7.5)	8 (10.0)	8 (10.0)	4 (5.0)	2 (2.5)
2015년	106	7 (6.6)	-	-	-	3 (2.8)	30 (28.3)	16 (15.1)	1 (0.9)	1 (0.9)	8 (7.5)	10 (9.4)	11 (10.4)	6 (5.7)	13 (12.3)	-
2016년	87	4 (4.6)	1 (1.1)	7 (8.0)	-	1 (1.1)	23 (26.4)	6 (6.9)	-	-	3 (3.4)	8 (9.2)	13 (14.9)	14 (16.1)	7 (8.0)	-
총 계	679	37 (5.4)	14 (2.1)	12 (1.8)	2 (0.3)	21 (3.1)	179 (26.4)	73 (10.8)	7 (1.0)	7 (1.0)	58 (8.5)	55 (8.1)	68 (10.0)	62 (9.1)	68 (10.0)	21 (3.1)



〈표8〉 성폭력 가해자의 나이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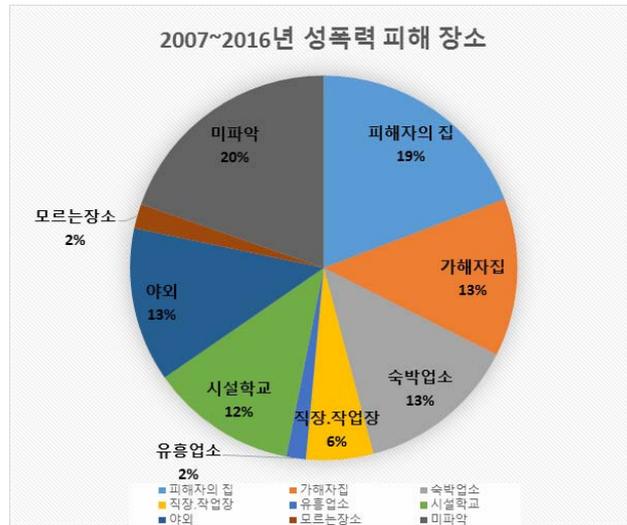
성폭력상답소	계	7세 미만	7-13미만	14-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세 이상	미파악
2007년	13	-	-	2 (15.4)	3 (23.1)	6 (46.2)	2 (15.4)	-	-
2008년	40	-	-	6 (15.0)	2 (5.0)	2 (5.0)	6 (15.0)	11 (27.5)	13 (32.5)
2009년	48	-	-	6 (12.5)	5 (10.4)	15 (31.3)	11 (22.9)	1 (2.1)	10 (20.8)
2010년	92	-	-	3 (3.3)	2 (2.2)	33 (35.9)	11 (12.0)	6 (6.5)	37 (40.2)
2011년	46	-	-	7 (15.2)	8 (17.4)	8 (17.4)	2 (4.3)	12 (26.1)	9 (19.6)
2012년	77	-	2 (2.6)	11 (14.3)	8 (10.4)	6 (7.8)	7 (9.1)	13 (16.9)	30 (39.0)
2013년	90	-	3 (3.3)	7 (7.8)	14 (15.6)	2 (2.2)	10 (11.1)	25 (27.8)	29 (32.2)
2014년	80	-	-	4 (5.0)	16 (20.0)	6 (7.5)	5 (6.3)	23 (28.8)	26 (32.5)
2015년	106	-	-	7 (6.6)	19 (17.9)	7 (6.6)	6 (5.7)	21 (19.8)	46 (43.4)
2016년	87	-	1 (1.1)	4 (4.6)	14 (16.1)	3 (3.4)	9 (10.3)	20 (23.0)	36 (41.4)
총 계	679	-	6 (0.9)	57 (8.4)	91 (13.4)	88 (13.0)	69 (10.2)	132 (19.4)	236 (34.8)



〈표9〉 성폭력 피해 장소(실 사례 수와 불일치)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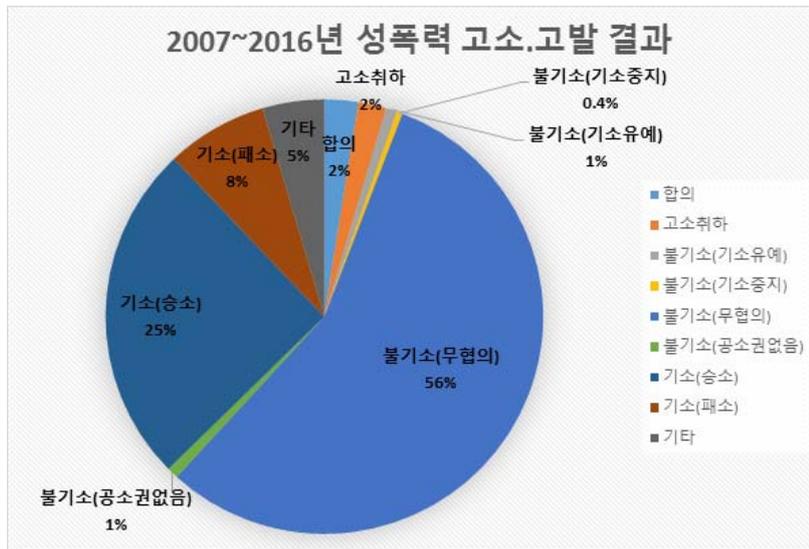
성폭력상담소	계	피해자의 집	가해자 집	숙박업소	직장·작업장	유흥업소	시설학교	야외	모르는 장소	미파악
2007년	13	4 (30.8)	-	-	1 (7.7)	-	1 (7.7)	-	3 (23.1)	3 (23.1)
2008년	40	8 (20.0)	5 (12.5)	4 (10.0)	4 (10.0)	-	-	4 (10.0)	2 (5.0)	13 (32.5)
2009년	48	12 (25.0)	9 (18.8)	4 (8.3)	-	-	4 (8.3)	4 (8.3)	9 (18.8)	6 (12.5)
2010년	92	24 (26.1)	1 (1.1)	1 (1.1)	-	-	33 (35.9)	-	-	33 (35.9)
2011년	46	6 (13.0)	10 (21.7)	7 (15.2)	5 (10.9)	-	6 (13.0)	4 (8.7)	-	8 (17.4)
2012년	77	9 (11.7)	9 (11.7)	12 (15.6)	11 (14.3)	4 (5.2)	7 (9.1)	12 (15.6)	-	13 (16.9)
2013년	90	9 (10.0)	12 (13.3)	19 (21.1)	11 (12.2)	2 (2.2)	11 (12.2)	14 (15.6)	-	12 (13.3)
2014년	80	16 (20.0)	18 (22.5)	14 (17.5)	4 (5.0)	1 (1.3)	5 (6.3)	14 (17.5)	-	8 (10.0)
2015년	106	19 (17.9)	11 (10.4)	16 (15.1)	2 (1.9)	3 (2.8)	9 (8.5)	21 (19.8)	-	25 (23.6)
2016년	87	23 (26.4)	15 (17.2)	14 (16.1)	-	1 (1.1)	7 (8.0)	15 (17.2)	-	12 (13.8)
합 계	679	130 (19.1)	90 (13.3)	91 (13.4)	38 (5.6)	11 (1.6)	83 (12.2)	88 (13.0)	14 (2.1)	133 (19.6)



〈표11〉 성폭력 고소, 고발 결과

(단위 : 명, 누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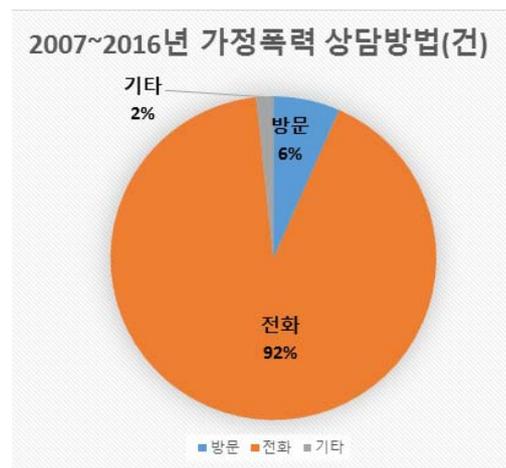
성폭력 상당소	계	합의	고소 취하	경찰 수사 중	검찰 수사 중	불기소						기소			기타 (연계)
						기소 유예	약식 기소	기소 중지	무 혐의	공소권 없음	죄 안됨	승 소	패 소	미 결	
2007년	-	-	-	-	-	-	-	-	-	-	-	-	-	-	-
2008년	-	-	-	-	-	-	-	-	-	-	-	-	-	-	-
2009년	11	-	-	-	-	-	-	-	-	-	-	-	-	-	11 (100)
2010년	3	-	-	-	-	-	-	-	-	-	-	1 (33.3)	2 (66.7)	-	-
2011년	14	1 (7.1)	-	-	-	-	-	-	12 (85.7)	-	-	1 (7.1)	-	-	-
2012년	27	2 (7.4)	1 (3.7)	-	-	-	-	-	22 (81.4)	-	-	2 (7.4)	-	-	-
2013년	41	2 (4.9)	-	-	-	2 (4.9)	-	-	13 (31.7)	-	-	21 (51.2)	3 (7.3)	-	-
2014년	42	-	4 (9.5)	-	-	-	-	1 (2.4)	21 (50.0)	-	-	11 (26.2)	5 (11.9)	-	-
2015년	66	-	-	-	-	-	-	-	42 (63.7)	1 (1.5)	-	15 (22.7)	8 (12.1)	-	-
2016년	37	1 (2.7)	-	-	-	-	-	-	25 (67.5)	1 (2.7)	-	10 (27.0)	-	-	-
총 계	241	6 (2.5)	5 (2.1)	-	-	2 (0.8)	-	1 (0.4)	135 (56.0)	2 (0.8)	-	61 (25.3)	18 (7.5)	-	11 (4.6)



〈표12〉 가정폭력상담

(단위 : 명/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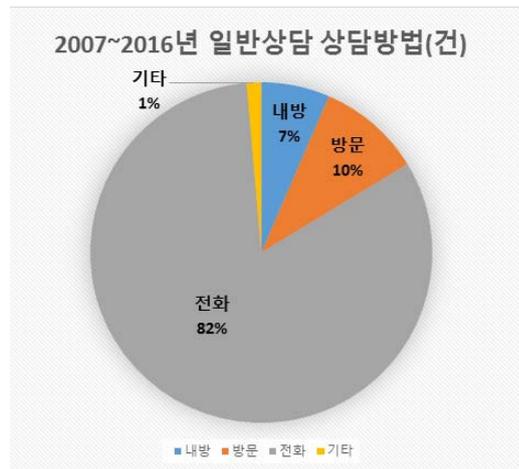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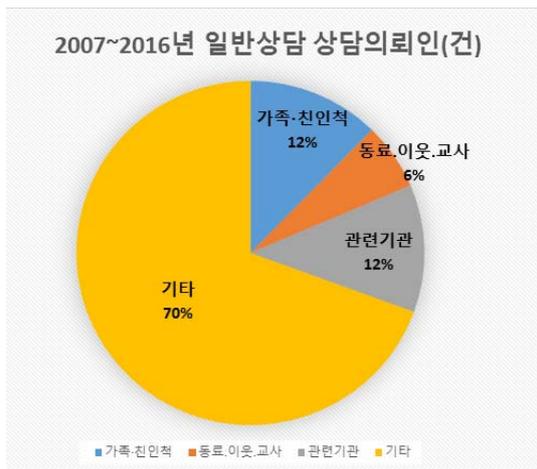
성폭력 상담소	장애 유·무(명)			장애 유·무(건)			상담의뢰인(건)					상담방법(건)					
	계	장애 인	비장 애인	계	장애 인	비장 애인	계	본 인	가족· 친인척	동료· 이웃· 교사	관련 기관	기 타	계	내 방	방 문	전 화	기타
2007년	33	33 (100)	-				33	27 (81.8)	2 (6.1)	-	4 (12.1)	-	33	5 (1.5)	-	28 (84.8)	-
2008년	155	148 (95.5)	7 (4.5)	-	-	-	155	138 (89.0)	2 (1.3)	5 (3.2)	10 (6.5)	-	155	5 (0.3)	4 (2.6)	146 (94.2)	-
2009년	79	79 (100)	-	-	-	-	79	14 (17.7)	18 (22.8)	46 (58.2)	1 (1.3)	-	79	9 (1.1)	12 (15.2)	58 (73.4)	-
2010년	36	29 (80.6)	7 (19.4)	98	66 (67.3)	32 (32.7)	98	55 (56.1)	9 (9.2)	1 (1.0)	2 (2.0)	31 (31.6)	98	11 (1.1)	14 (14.3)	70 (71.4)	-
2011년	6	5 (83.3)	1 (16.7)	61	60 (98.4)	1 (1.6)	61	40 (65.6)	2 (3.3)	1 (1.6)	17 (27.9)	1 (1.6)	61	12 (2.0)	4 (6.6)	39 (63.9)	-
2012년	24	19 (79.2)	5 (20.8)	374	363 (97.1)	11 (2.9)	374	107 (28.6)	48 (12.8)	13 (3.5)	34 (9.1)	172 (46.0)	374	20 (0.5)	19 (5.1)	313 (83.7)	14 (3.7)
2013년	15	15 (100)	-	85	85 (100)	-	85	36 (42.4)	23 (27.1)	-	15 (17.6)	11 (12.9)	85	-	-	85 (100)	-
2014년	7	7 (100)	-	51	51 (100)	-	51	22 (43.1)	1 (2.0)	6 (11.8)	2 (3.9)	20 (39.2)	51	3 (0.6)	3 (5.9)	44 (86.3)	1 (2.0)
2015년	7	7 (100)	-	26	26 (100)	-	26	17 (65.4)	-	-	9 (34.6)	-	26	6 (2.3)	3 (11.5)	17 (65.4)	-
2016년	4	4 (100)	-	22	22 (100)	-	22	11 (50.0)	1 (4.5)	1 (4.5)	3 (13.6)	5 (22.7)	22	6 (2.7)		16 (72.7)	-
총 계	366	346 (94.5)	20 (5.5)	717	673 (93.9)	44 (6.1)	984	467 (47.5)	106 (10.8)	73 (7.4)	97 (9.9)	240 (24.4)	984	77 (0.8)	59 (6.0)	816 (82.9)	15 (1.5)



〈표13〉 일반상담

(단위 : 명/건)

성폭력 상담소	장애 유·무(명)			장애 유·무(건)			상담의뢰인(건)					상담방법(건)					
	계	장애 인	비장 애인	계	장애 인	비장 애인	계	본 인	가족· 친인척	동료· 이웃 교사	관련 기관	기 타	계	내 방	방 문	전 화	기타
2007년	19	19 (100)	-	-	-	-	19	18 (94.7)	-	1 (5.3)	-	-	19	1 (5.3)	-	18 (94.7)	-
2008년	107	-	107 (100)	-	-	-	107	105 (98.1)	1 (0.9)	-	1 (0.9)	-	107	6 (5.6)	2 (1.9)	99 (92.5)	-
2009년	197	197 (100)	-	-	-	-	197	148 (75.1)	43 (21.8)	1 (0.5)	5 (2.5)	-	197	6 (3.0)	-	191 (97.0)	-
2010년	32	29 (90.6)	3 (9.4)	152	102 (67.1)	50 (50.0)	152	125 (82.2)	4 (2.6)	2 (1.3)	5 (3.3)	16 (10.5)	152	14 (9.2)	8 (5.3)	130 (85.5)	-
2011년	17	16 (94.1)	1 (5.9)	31	30 (96.8)	1 (1.0)	31	4 (12.9)	2 (6.5)	5 (16.1)	16 (51.6)	4 (12.9)	31	3 (9.7)	2 (6.5)	26 (83.9)	-
2012년	35	22 (62.9)	13 (37.1)	103	69 (67.0)	34 (34.0)	103	60 (58.3)	11 (10.7)	9 (8.7)	18 (17.5)	5 (4.9)	103	10 (9.7)	7 (6.8)	84 (81.6)	-
2013년	20	19 (95.0)	1 (5.0)	67	64 (95.5)	3 (3.0)	67	28 (41.8)	14 (20.9)	1 (1.5)	14 (20.9)	10 (14.9)	67	3 (4.5)	2 (3.0)	56 (83.6)	6 (9.0)
2014년	35	34 (97.1)	1 (2.9)	99	98 (99.0)	1 (1.0)	99	23 (23.2)	22 (22.2)	12 (12.1)	14 (14.1)	28 (28.3)	99	2 (2.0)	8 (8.1)	88 (88.9)	1 (1.0)
2015년	33	33 (100)	-	95	95 (100)	-	95	58 (61.1)	5 (5.3)	10 (10.5)	22 (23.2)	-	95	2 (2.1)	45 (47.4)	48 (50.5)	-
2016년	31	31 (100)	-	89	89 (100)	-	89	40 (44.9)	12 (13.5)	17 (19.1)	16 (18.0)	4 (4.0)	89	15 (16.9)	20 (22.5)	48 (53.9)	6 (6.7)
총 계	526	400 (76.0)	126 (24.0)	636	547 (86.0)	89 (89.0)	959	609 (63.5)	114 (11.9)	58 (6.1)	111 (11.5)	67 (7.0)	959	62 (6.5)	94 (9.8)	788 (82.2)	13 (1.4)



Ⅲ. 결론 및 제언

장애인 성폭력은 피해당사자가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피해자 주변의 가족·주민들이 의외히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며 장기적인 예방대책과 사회의 인식변화가 요구된다.

위 **<장애인 고소·고발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인성폭력 피해의 특성은 비장애인 성폭력과 다른 특성보이는 경우가 많다. 범죄구성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는 경우가 많고, 수사 및 소송과정에서 위계 및 위력의 인정은 매우 어렵다. 결국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는 비장애인 혹은 아동과 또 다른 특성을 가진 독특한 존재로 인정되고 이를 위한 수사 및 사법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 성폭력의 특성 중 하나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의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단기적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판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대전의 경우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 단 한 기관이고, 입소정원이 소수이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는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일시적 보호시설 및 단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의 의지와 다르게 타지방의 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타 지역에서도 입소정원이 초과한 상태가 많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시설이 필요하다.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가족 전체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독립적인 활동 및 자립생활이 가능해야 하는 비장애인 생활시설에 입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성폭력을 동반한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등 복합적 피해요소가 있는 이들 피해자를 위한 쉼터개설 및 제도마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가 쉼터에서 퇴소한 후에는 자립을 위한 훈련이나 거주지가 마련될 수 있는 다양한 여건과 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많지 않으며 퇴소 이후에는 피해가 발생했던 원가정이나 지역사회로 돌아가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서 중간집, 일상 생활 기술 및 대인관계훈련기관, 직업훈련 및 그룹홈 등의 지원대책이 요구된다.

현재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예방 및 성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당사자 교육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인 의식 및 인식 재고를 위한 범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예방교육 및 성인권교육으로 교육의 내용과 범위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인식전환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장애인성폭력이 근절되고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가 만들어 질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

부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와 장애인)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라 함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2009.5.22., 2010.5.11., 2011.3.29., 2011.6.7., 2013.3.23., 2016.2.3.>

1. "광고"라 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를 말한다.
2.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3. "장애인보조기구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를 말한다. 그 밖에 장애인의 활동을 돕기 위한 자동차 기타 기구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작업보조공학기기 및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기기,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내용과의 관계 및 이 법에서 정하는 관련 조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4.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5.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교육책임자"라 함은 교육기관의 장 또는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8. "정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으로 구분한다.
 - 가. "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 "자연인 및 법인"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나. "비전자정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제외한 정보로서 음성, 문자, 한국수어, 점자, 몸짓, 기호 등 언어 및 비언어적 방법을 통하여 처리된 모든 종류의 자료와 지식을 말하며, 그 생산·획득·가공·보유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 다.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이라 함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정보통신을 말하며, 그 주체가 자연인·법인 또는 공공기관 여부를 불문한다.
10. "문화·예술활동"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11. "문화·예술사업자"라 함은 문화·예술의 요소를 담고 있는 분야에서 기획·개발·제작·생산·전시·유통·판매를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12. "체육"이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의 체육 및 학교체육, 놀이, 게임, 스포츠, 레저, 레크리에이션 등 체육으로 간주되는 모든 신체활동을 말한다.
13. "가정 및 가족"이라 함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가정 및 가족을 말한다.
14. "복지시설 등"이라 함은 장애인이 장·단기간 생활하고 있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애인 1인 이상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15. "시설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건축물, 거실 및 주요 구조부를 말한다.

16.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이라 함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도로 및 보도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한다.

17. "건강권"이라 함은 보건교육,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와 질병 예방 및 치료, 영양개선 및 건강 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을 할 권리를 말하며, 의료 받을 권리를 포함한다.

18. "의료인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2조제1항 따른 의료인과 국가 및 관련 협회 등에서 정한 자격·면허 등을 취득한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심리치료사,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의 건강에 개입되는 사람을 말한다.

19. "의료기관 등"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장애인의 건강을 위하여 서비스를 행하는 보건기관, 치료기관, 약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20. "괴롭힘 등"이라 함은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괴롭힘, 희롱, 학대, 금전적 착취,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에게 가해지는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 행위를 말한다.

제4조(차별행위) ①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조장하는 광고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광고를 허용·조장하는 경우. 이 경우 광고는 통상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조장하는 광고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포함한다.
5.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 경우 장애인 관련자의 장애인에 대한 행위 또한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 여부의 판단대상이 된다.
6.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제4호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의 "정당한 편의"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하지 않음에 있어서 과도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이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가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이 경우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은 교육 등의 서비스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

④장애인의 실질적 평등권을 실현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취하는 적극적 조치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제5조(차별판단) ①차별의 원인이 2가지 이상이고, 그 주된 원인이 장애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차별로 본다.

②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차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차별금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기결정권 및 선택권) ①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②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10조(차별금지) ①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및 복리후생, 교육·배치·승진·전보, 정년·퇴직·해고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은 장애인 근로자의 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조합원의 권리 및 활동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한국수어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학적 검사의 금지) ①사용자는 채용 이전에 장애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채용 이후에 직무의 본질상 요구되거나 직무배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의학적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한다. 사용자의 비용부담 방식 및 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한 장애인의 건강상태나 장애 또는 과거 장애경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교육

제13조(차별금지) ①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및 입학에 거부할 수 없고, 전학을 강요할 수 없으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는 장애인이 당해 교육기관으로 전학하는 것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②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③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그 보호자가 제14조제1항 각 호의 편의 제공을 요청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교육책임자는 특정 수업이나 실습·실습, 현장견학, 수학여행 등 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내의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책임자는 취업 및 진로교육, 정보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진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은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특수교육 교원, 특수교육보조원,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를 모욕하거나 비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의 입학 지원 시 장애인 아닌 지원자와 달리 추가 서류, 별도의 양식에 의한 지원 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 추가시험 등(이하 "추가서류 등"이라 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추가서류 등의 요구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과정에 정한 학업시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교육책임자는 당해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16.2.3.>

1. 장애인의 통학 및 교육기관 내에서의 이동 및 접근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각종 이동용 보장구의 대여 및 수리
2.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교육보조인력의 배치
3. 장애로 인한 학습 참여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확대 독서기, 보청기기, 낮낮이 조절용 책상, 각종 보완·대체 의사소통 도구 등의 대여 및 보조건의 배치나 휠체어의 접근을 위한 여유

공간 확보

4. 시·청각 장애인의 교육에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 문자통역(속기), 점자자료, 점자·음성변환용 코드가 삽입된 자료, 자막, 큰 문자자료, 화면낭독·확대프로그램, 보청기기, 무지점자단말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를 포함한 각종 장애인보조기구 등 의사소통 수단

5.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습진단을 통한 적절한 교육 및 평가방법의 제공

6. 그 밖에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교육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수단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지원부서 또는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교육기관의 단계적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부서 및 담당자의 설치 및 배치,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15조(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가져다주는 물건, 서비스, 이익, 편의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재화·용역 등의 제공자는 장애인이 해당 재화·용역 등을 이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토지 및 건물의 매매·임대 등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토지 및 건물의 소유·관리자는 당해 토지 및 건물의 매매, 임대, 입주, 사용 등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분리·배제·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자는 금전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5.11.>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① 개인·법인·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개인 등"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자정보와 비전자정보를 이용하고 그에 접근함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제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 관련자로서 한국수어 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2.3.>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① 제3조제4호·제6호·제7호·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제11호·제18호·제19호에 규정된 행위자, 제12호·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관련된 행위자, 제10조제1항의 사용자 및 같은 조 제2항의 노동조합 관계자(행위자가 속한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행위자 등"이라 한다)는 당해 행위자 등이 생산·배포하는 전자정보 및 비전자정보에 대하여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한국수어,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8호가목 후단 및 나목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행위자 등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3.>

② 공공기관 등은 자신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서 장애인의 참여 및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한국수어 통역사·문자통역사·음성통역사·보청기기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6.2.3.>

④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설비를 이용한 중계 서비스(영상통화서비스, 문자서비스 또는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계서비스를 포함한다)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3.3.23., 2017.7.26.>

⑤ 다음 각 호의 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출판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영상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법」 제18조에 따른 국립중앙도서관은 새로이 생산·배포하는 도서자료를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음성 또는 확대문자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1., 2014.1.28.>

1. 출판물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사업자
2. 영화, 비디오물 등 영상물의 제작업자 및 배급업자

⑥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는 행위자 등의 단계적 범위 및 필요한 수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범위와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그 이행 등

에 필요한 사항, 제4항에 따른 사업자의 단계적 범위와 편의의 구체적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5.11., 2013.8.13.>

[제목개정 2010.5.11.]

제22조(개인정보보호) ①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되어야 하고, 당해 개인정보에 대한 무단접근이나 오·남용으로부터 안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3.29.>

③장애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장애인에 있어서 당해 장애인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련된 동의행위를 대리하는 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정보접근·의사소통에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을 위한 도구의 개발·보급 및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정보통신제품을 설계·제작·가공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따라 한국수어, 구화, 점자,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큰문자 등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한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의사소통양식 등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2016.2.3.>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①체육활동을 주취·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범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범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1., 2012.10.22.>

⑦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참정권)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 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에게 후보자 및 정당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의 수준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제5절 모·부성권, 성 등

제28조(모·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6.7.>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출산·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 기기·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교육·지원·감독하여야 한다.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 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절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제30조(가족·가정·복지시설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중한 역할을 강요하거나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결정과정에서 장애인을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취학 또는 진학 등 교육을 받을 권리와 재산권 행사, 사회활동 참여, 이동 및 거주 자유(이하 이 항에서 "권리 등"이라 한다)를 제한·박탈·구속하거나 권리 등의 행사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가족·가정의 구성원인 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는 자녀 양육권과 친권의 지정 및 면접교섭권에 있어 장애인에게 장애를 이유로 불리한 합의를 강요하거나 그 권리를 제한·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복지시설 등의 장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친권포기각서를 요구하거나 시설에서의 생활 중 가족 등의 면접권 및 외부와의 소통권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건강권에서의 차별금지) ①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료기관 등 및 의료인 등은 장애인의 의료행위와 의학연구 등에 있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의료행위에 있어서는 장애인의 성별 등에 적합한 의료 정보 등의 필요한 사항을 장애인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건강과 관련한 교육 과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장애인의

성별 등을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선천적·후천적 장애 발생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보건·의료 시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장애인의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②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장애여성 및 장애아동 등

제33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를 가진 여성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여성에 대하여 임신·출산·양육·가사 등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그 역할을 강제 또는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사용자는 남성근로자 또는 장애인이 아닌 여성근로자에 비하여 장애여성 근로자를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따른 원활한 수유 지원
2. 자녀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방식의 지원
3. 그 밖에 직장보육서비스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④교육기관, 사업장, 복지시설 등의 성폭력 예방교육 책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장애여성에 대한 성인식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며, 그 내용이 장애 여성을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교육기관 및 직업훈련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여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가 장애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1. 학습활동의 기회 제한 및 활동의 내용을 구분하는 경우
2. 취업교육 및 진로선택의 범위 등을 제한하는 경우
3. 교육과 관련한 계획 및 정보제공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⑥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와 제3항제3호에 필요한 사항의 구체적 내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이 장애를 이유로 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른 아동과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에 알맞은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장애아동을 보호하는 친권자 및 양육책임자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7조(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금지 등) ①누구든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정 정서나 인지적 장애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 홍보 등 필요한 법적·정책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장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등

제38조(진정)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제39조(직권조사) 위원회는 제38조의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40조(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를 전담하는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구성·업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준용규정) ①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진정의 절차·방법·처리, 진정 및 직권에 따른 조사의 방법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국가인권위원회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2조(권고의 통보) 위원회는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한 경우 그 내용을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시정명령) ①법무부장관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

자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가 다수인인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2. 반복적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 불이행
3.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고의적 불이행
4. 그 밖에 시정명령이 필요한 경우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으로서 이 법에서 금지되는 차별행위를 한 자(이하 "차별행위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차별행위의 중지
2. 피해의 원상회복
3. 차별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서면으로 하되,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차별행위자와 피해자에게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무부장관이 차별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기간,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시정명령의 확정) ①법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는 관계 당사자는 그 명령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시정명령은 확정된다.

제45조(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등) ①법무부장관은 확정된 시정명령에 대하여 차별행위자에게 그 이행상황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피해자는 차별행위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장 손해배상, 입증책임 등

제46조(손해배상) ①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차별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재

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의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제4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이 법률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48조(법원의 구제조치) ①법원은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행위의 중지 등 그 밖의 적절한 임시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적 행위의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그 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의 판결을 할 수 있다.

③법원은 차별행위의 중지 및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그 이행 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③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악의적인 차별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도 제1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5.11.>

④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벌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제44조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5.11.>

③ 삭제 <2010.5.11.>

④ 삭제 <2010.5.11.>

⑤ 삭제 <2010.5.11.>

부칙 <제14839호, 2017.7.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3>까지 생략

<36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65>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10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의 me too 운동, 그 현실과 개선방안 논의-

| 인 쇄 | 2018년 4월

| 발 행 | 2018년 4월

| 발행인 | **이 성 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 발행처 |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

| 주 소 | (35262) 대전 서구 문정로 48번길 30
KT탄방타워 13층

| 전 화 | (042) 472-9038 | F A X | (042) 472-9046

| Homepage | www.humanrights.go.kr

|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 전 화 | (02) 313-7593 | F A X | (02) 393-3016

ISBN 978-89-6114-617-3 93330

사전승인 없이 본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이 저작물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재산권을 전부 소유하지
아니한 저작물이므로 자유롭게 이용(변경, 복제, 배포, 상업적인
용도 사용 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